

제332회국회  
(임시회)

# 정무위원회회의록

제 2 호

국회사무처

일 시 2015년4월10일(금)

장 소 정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1.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
2.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0.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5.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6.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7.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8.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19.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 업무현황 보고(계속)
  - 가. 국무조정실
  - 나. 국무총리비서실
  - 다. 국민권익위원회
  - 라. 국가보훈처

## 심사된 안건

1.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 ..... 3
- 의사일정 상정의 건 ..... 29
2.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 의원 대표발의)(신학용 · 이찬열 · 이상직 · 김기준 · 장하나 · 박민수 · 이개호 · 정성호 · 이에리사 · 이춘석 의원 발의) ..... 29
3.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정호준 의원 대표발의)(정호준 · 장병완 · 강기정 · 김영환 · 김영록 · 추미애 · 이원욱 · 배재정 · 김윤덕 · 이개호 의원 발의) ..... 30

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김상훈 · 강석호 · 박명재 · 이우현 · 이종진 · 이완영 · 정희수 · 손인춘 · 전하진 · 주호영 의원 발의) .....	30
5.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김상훈 · 강석호 · 박명재 · 이우현 · 이종진 · 이완영 · 정희수 · 손인춘 · 전하진 · 주호영 · 홍지만 의원 발의) .....	30
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김상훈 · 강석호 · 박명재 · 이우현 · 이종진 · 이완영 · 정희수 · 손인춘 · 전하진 · 주호영 · 홍지만 의원 발의) .....	30
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 의원 대표발의)(강기정 · 신기남 · 주승용 · 이상직 · 진선미 · 정호준 · 김기식 · 김영주 · 민병두 · 김현 · 한명숙 의원 발의) .....	30
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준 의원 대표발의)(김기준 · 김현미 · 이개호 · 한명숙 · 이학영 · 이해찬 · 민병두 · 전순옥 · 이원욱 · 박민수 · 박영선 · 송호창 의원 발의) .....	30
9.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 의원 대표발의)(박민수 · 이개호 · 진성준 · 김우남 · 부좌현 · 박남춘 · 유대운 · 홍문표 · 이춘석 · 민홍철 의원 발의) .....	30
10.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환 의원 대표발의)(김태환 · 정희수 · 강석호 · 심학봉 · 김태원 · 정수성 · 이철우 · 김명연 · 김경협 · 박대동 · 김재경 · 이운룡 의원 발의) .....	30
1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 의원 대표발의)(박민수 · 이개호 · 진성준 · 김우남 · 부좌현 · 박남춘 · 유대운 · 홍문표 · 이춘석 · 민홍철 의원 발의) .....	30
12.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 의원 대표발의)(박민수 · 이개호 · 진성준 · 김우남 · 부좌현 · 박남춘 · 유대운 · 김기준 · 홍문표 · 이춘석 의원 발의) .....	30
13.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 의원 대표발의)(부좌현 · 이개호 · 이상직 · 박남춘 · 박민수 · 이원욱 · 김관영 · 이찬열 · 김광진 · 노영민 의원 발의) .....	30
1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 · 이명수 · 황인자 · 김희선 · 권성동 · 홍철호 · 홍지만 · 이철우 · 이재영 · 문대성 의원 발의) .....	30
15.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 의원 대표발의)(박민수 · 이개호 · 김우남 · 강창일 · 신경민 · 부좌현 · 박남춘 · 이춘석 · 이종배 · 양승조 의원 발의) .....	30
16.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 · 이상직 · 이개호 · 장병완 · 김우남 · 박민수 · 박남춘 · 정성호 · 조정식 · 김승남 · 임수경 의원 발의) .....	30
17.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명숙 의원 대표발의)(한명숙 · 배재정 · 백재현 · 최민희 · 신경민 · 이종걸 · 이미경 · 민병두 · 전순옥 · 김상희 · 이개호 · 진선미 · 민홍철 의원 발의) .....	30
18.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이종걸 · 신정훈 · 추미애 · 김영록 · 장병완 · 유인태 · 조정식 · 강창일 · 김관영 · 백재현 · 김성곤 · 신경민 · 문병호 의원 발의) .....	30
19.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운룡 의원 대표발의)(이운룡 · 정갑윤 · 유의동 · 김태환 · 홍지만 · 정문헌 · 정희수 · 이주영 · 이한성 · 김태원 · 박대동 의원 발의) .....	30
2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창식 의원 대표발의)(박창식 · 이우현 · 이진복 · 양창영 · 김을동 · 염동열 · 최봉홍 · 박성호 · 정병국 · 권성동 의원 발의) .....	30
21. 업무현황보고(계속) .....	31
가. 국무조정실	
나. 국무총리비서실	
다. 국민권익위원회	
라. 국가보훈처	

(10시08분 개의)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오전에 공청회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법안 상정과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1.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

○위원장 정우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오늘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및 관련 법률안 심사에 참고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공청회를 위해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신 진술인 여러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받은 진술인께서는 잠시 일어서서 인사하신 후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창원 한국씨티은행 법무본부 부행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 배현기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소장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 한충섭 신한은행 고객지원그룹 부사장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 윤석현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십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 정은윤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본부장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끝으로 이은영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진술인 인사)

그러면 공청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는 먼저 여섯 분의 진술인이 차례로 진술하신 다음 위원님들께서 진술인들과 일문일답 형식으로 토론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진술시간은 진술인별로 6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가급적 시간 내에 진술을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창원 한국씨티은행 법무본부 부행장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이창원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주셔서

먼저 감사드리고요.

시간관계상 서론은 생략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석훈·이종걸 의원안에 규정되어 있는 투자성·대출성·보장성 상품 모두 적합성 및 적정성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정한 위험을 내포한 투자성 상품이나 일정한 위험에 대한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보장성 상품의 경우와 달리 대출성 상품의 경우에는 고객이 자신의 자금수요에 따른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는 게 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적합성·적정성 원칙을 적용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만약 적합성·적정성의 원칙이 고객의 재산·신용상태나 상환능력에 적합한 대출상품의 제공을 의미한다면 이는 오히려 은행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구하여야 할 사항이며 고객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자신이 필요로 하는 자금의 차입을 제한하는 작용을 하게 되어 동 원칙들을 고객 보호 차원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와도 맞지 아니하다라는 생각입니다.

현재 은행권은 정부 정책, 사회적 약자 보호 등 은행의 공적 기능을 감안하여 소득·재산 및 신용상태 등이 취약한 서민·중소기업에 대해서도 대출을 취급하고 있으나 대출상품에 대해서 이와 같은 내용의 적합성 및 적정성 원칙이 적용된다면 서민·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이 크게 위축되어 취약계층 등에 대한 신용경색이 우려될 것으로도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강석훈·이종걸 의원안에 포함되어 있는 대출성 상품에 대한 청약철회권을 인정하는 내용에 대한 것입니다.

대출성 상품은 상품구조가 간단하여 그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고 또 고객의 현실적인 자금수요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사실상 청약철회권을 인정할 실익이나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대출계약 후 7일 이내에는 언제든지 청약철회가 가능하다면 은행으로서는 청약철회에 따른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청약철회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대출을 실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크고, 이러한 경우에는 선의의 금융소비자만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호준·강석훈·이종걸 의원안에 포

함되어 있는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금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를 금지할 경우 은행은 중도상환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까지 고려하여 이자율 등을 책정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 전반적인 이자율 상승으로 중도상환을 하지 않는 대부분의 금융소비자에게로 부담이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일률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를 금지하는 것보다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중도상환에 따른 추가 비용을 적절히 반영하는 수준으로 결정되는지, 이 부분을 모니터링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라는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강석훈·이종걸 의원안에 포함되어 있는 불완전 판매 등 판매행위규제 위반 시 계약 후 5년 이내에는 금융소비자가 계약 내용 등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또 변경 요구가 거부될 경우 계약해지도 가능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우선 적합성 및 적정성 원칙이나 설명의무 등 위반과 그에 따른 계약 내용의 변경은 논리적으로 연관성이 크지 않습니다. 또 그러한 경우 어떠한 내용으로 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아무런 기준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실제 적용 시 많은 혼란과 부작용이 예상됩니다.

또 그러한 의무위반에 대해서는 그 사유와 정도에 따라 민법 일반원칙으로 손해배상이나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이에 더하여 별도로 소비자보호법에서 계약해지권을 명문화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오히려 이를 명문화하게 되면 해당 사유가 민법상 해지가 가능할 정도의 중대한 위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악용한 빈번한 해지 요구로 분쟁이 촉발되어 거래의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호준 의원안의 투자성 상품 판매장소를 금융회사 영업소 내 지정된 구역으로 제한하자는 내용에 대한 것입니다.

판매장소를 금융회사 영업소 내 지정된 구역으로 제한하는 목적과 효과가 일단 불명확합니다. 이것이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한 투자성 상품 판매를 금지하는 것이라면 이는 작금의 디지털뱅크 추세에 부합하지 않고 또 이로 인해 은행의 수익성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의 편익도 크게 감소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민병두·정호준 의원안에 들어 있는 금융감독 당국이 모든 금융상품을 판매 전에 위험도에 따라 등급분류를 해야 한다는 안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정호준 의원안은 투자성 상품에 대해서만 등급분류를 하자는 내용입니다.

우선 보장성·예금성·대출성 상품에 대해 위험도에 따른 등급분류를 해야 할 현실적 필요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보장성·예금성·대출성 상품의 경우에는 투자위험을 수반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등급분류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 감독 당국에 의한 사전등급분류가 지연될 경우 신상품 취급의 적시성이 저해되어 은행의 수익이나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장성·예금성·대출성 상품의 경우에는 투자성이 없으므로 등급분류제 도입을 할 실익이 없다라는 의견이고, 투자성 상품의 경우에도 적합성 원칙과 적정성 원칙이 적용되므로 현재와 같이 투자권유준칙에 따라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등급을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입니다.

다음으로 이종걸 의원안에 포함되어 있는 은행을 포함한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이 대출성 상품 취급 시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자는 내용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은행권은 2008년 7월 가계여신에 대한 연대보증을 이미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기업여신의 경우에도 금융 당국의 행정지도에 의거 법인기업에 한해 책임경영을 담보할 수 있는 수준, 실제 경영자 1인에 대해서 연대보증제도를 운용하고 있어 별도로 이를 법제화할 필요성이 적다라는 생각입니다.

현재 은행권의 연대보증제도는 최소한으로 운용되고 있는 만큼 연대보증 요구를 범으로 금지할 경우 실제 경영자의 사해행위 등 도덕적 해이방지가 곤란하고 기업의 책임경영 담보에도 어려움이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다음으로 강석훈·이종걸·정호준·민병두 의원안에 포함되어 있는 금융회사가 자신의 고의과실 없음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일반 금융소비자의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는 고의·과실 입증책임 전환에 관한 규정입니다.

입증책임은 해당 사실이 입증될 경우 이익을 얻는 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또 그 피해

자에 의한 상대방의 과실 입증을 기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그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상대방에게 입증책임을 전환시킴으로써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도모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금융상품 거래는 고객이 직접 금융회사 직원과의 대면상담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상품 설명이나 적합성 및 적정성 검토도 서면화되어 있어 과실 여부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금융소비자가 이미 보유하고 있거나 또는 금융거래기록에 대한 열람제도를 통해서 확보가 충분히 가능하므로 입증책임 전환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관한 내용인데요.

지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실손의 3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인데 이는 민법상 손해배상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이므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등급분류 및 분할상환 위반 등으로 인한 손해의 경우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할 만한 중대한 사안인지가 일단 의문이고요. 또 피해규모가 크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피해구제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거나 하는 것은 징벌적 손해배상의 그 무거움에 비해 사유가 너무 추상적이고 구체적이지 아니하여 이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에 법적 안정성을 크게 저해한다는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집단소송제 그다음에 집단분쟁조정 특례에 관한 내용입니다.

집단소송은 기본적으로 소송상 쟁점이 동일하여 판결의 효력이 유사거래자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 허용될 수 있는데, 불완전판매 등 판매행위규제 위반의 경우에는 예컨대 적합성 및 적정성 원칙 위반이나 설명의무 위반은 각각의 거래별로 각각의 고객을 대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따라서 위반 여부나 책임의 정도 등이 각각의 거래별·고객별로 제각각일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집단소송의 대상으로 하기에는 부적절하다라는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집단분쟁조정 절차에서는 집단분쟁조정 결정을 수락하게 되면 분쟁조정 당사자가 아닌 피해자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보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을 강제하다 보면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집단분쟁조정 결정을 수락함으로써 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금융소비자에 대해서도 일률적인 보상의무를 부담하게 되어 오히려 조정결정을 수락하지 않을 개연성이 크고, 따라서 동 규정으로 인해 조정의 실효성이 오히려 저해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권고사항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의견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택 수고하셨습니다.

앞에 6분이 정해져서 시간이 갈 겁니다. 진술 인께서 말씀하실 사항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가급적 6분을 지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창원 진술인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배현기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소장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배현기 안녕하십니까?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배현기 소장입니다.

먼저 진술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서 이창원 부행장께서 상세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중복되지 않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부안부터 의원님들 입법안을 죽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최근 사회적인 금융소비자 보호의 중요성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전체적으로 사전규제도 대폭 강화하고 사후규제도 처벌 포함해서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법안이 시간의 추이에 따라 전개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사전규제·사후규제를 모두 강화하는 경우에 그것이 명분상으로는 소비자보호를 한다는 그런 것들을 표시는 명확하게 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법의 적용 과정에서 그리고 현장에서 효과가 나타날 것이냐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회의적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나 하면, 금융상품은 기본적으로 위험하다라고 하고 이것에 대해서 소비자 접근을 제한하고 심지어는 좀 경계하는, 지나치게 사전규제를 하게 되면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나치게 처벌을 강화하게 되면 금융회사의 상품 공급이라든지 일반 금융소비자의 접근을 오히려 단념시키게 되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일반 금융소비자에 대해서 지나치게 보호하고 지나치게 처벌하는 쪽으로 가면 금융회사는 위험 회피적인 성향을 보일 거고, 그렇게 되면 문제가 없을 수 있는 전문 금융소비자 위주로 금융상품을 공급하고 서비스하는 그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금융소비자를 인클루드(include) 하는 게 아니라 익스클루드(exclude) 하는, 오히려 일반 금융소비자를 소외시킬 수 있는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사전규제하고 사후규제의 밸런스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사전규제 쪽은 완화하는 쪽으로 가고 사후규제 쪽으로 입법 방향을 잡는 것이 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런 관점에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첫 번째, 금융상품자문업을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도입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부분이 쟁점 중의 하나인데요. 사실 현재 자문업 같은 경우는 별도 입법이 없고 아시는 바와 같이 자본시장법상의 투자자문업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은행이라든지 보험 등이 겸업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현재의 금융교육 여건이라든지 금융소비자의 어떤 인지 수준이라든지 등등을 감안할 때 저는 개별업법으로 가는 것보다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의 판매·대리중개·자문,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기능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별업법보다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자문업을 규정하고 그것에 대한 소비자 접근성,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요.

아시는 거와 같이 최근의 핀테크의 흐름 중에 하나는 자산관리의 대중화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전에는 기관투자자와 하이 넷 워스(High Net Worth), 소위 말해서 부자에 대해서만 국한된 어떤 상품 관리 서비스를 이제는 디지털 혁명에 따라서 그리고 온라인…… 이 디지털을 활용해서 훨씬 더 낮은 코스트로 일반 대중한테도 접근성을 확대하고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 선진국의 흐름이고 저희도 핀테크의 진전에 따라서 그런 방향으로 전개될 거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한 법적 보호 그리고 법

적 근거가 소비자보호법상에 마련이 되고, 따라서 개별 상품의 어떤 자문이나 추천에 국한하지 않고 포트폴리오, 자산관리 개념으로 해서 적절한 인풋(input)에 대해서 수수료도 부과되고 소비자도 그것에 대해서 벨류(value)를 느끼고 수수료를 기꺼이 부담할 수 있는 그런 관행이 이 법을 통해서 도입이 되고 정착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취지에 따라서 투자성 상품의 사전등급분류라든지 판매장소 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소비자 선택권을 오히려 제약할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비대면 실명 부분에 대한 다양성을 도입하고, 그것에 대한 금융회사 책임을 강화하는 쪽의 방향이기 때문에 저는 장소 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현재의 트렌드하고는 좀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대출상품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계약 변경 요건, 해지 요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해당 기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출상품의 중도상환 수수료, 청약철회권은 앞서도 자세한 얘기가 있었습니까라는 기본적으로는 소비자보호도 중요하지만 계약에 대한 준수 의무, 그리고 사실은 자기 책임과 계약 준수 이런 부분은 법치의 근간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준수가 된다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전제된다는 하에서 도입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충섭 신한은행 고객지원그룹 부사장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한충섭 아마 일부 인쇄물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는 신한은행이 아니라 신한생명에서 고객지원그룹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충섭 부사장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법안 제정을 위해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위원님들 앞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진술에 앞서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저희 보험업계의 공통적인 의견을 모았으며 현장의 시각에서 진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금융소비자 피해 보상·배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감독 당국에 금융상품 판매업자가 피해보상계획을 제출토록 명령권을 부여하는 내용은 그 대상과 범위가 워낙 광범위하고 포괄적인데다가 제정안에 이미 피해보상과 관련한 제도와 절차가 반영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손해배상액을 원금 수준으로 추정토록 하는 조항은 예금성·보장성·대출성 상품의 경우에는 손해금액의 추정이 비교적 명확하여 해당 조항을 적용할 실익이 크지 않다는 점과 만약 적용하게 된다면 투자성 상품으로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 문제는 소송의 남발과 일부 악의적 소비자의 집단화 그리고 악용 가능성 등으로 건전한 금융질서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만큼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로는 소액 분쟁 사건 특례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안에는 소액 분쟁 사건에 대해 금융소비자가 조정신청을 한 경우 분쟁조정 종료 전까지 금융회사의 소제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기관이 조정이 종료된 이후에 결과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분쟁해결 기간을 오히려 연장시키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보험의 경우에는 단일 보험금 지급의 선례가 다수 보험계약자의 보험금 지급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보험금 지급 시 보다 신중하고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 소송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회사의 소송 남용을 방지하고 선량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면 우선 500만 원 이내의 소액으로 한정하여 도입하고 그 시행 경과를 지켜본 후 확대 여부를 논의하는 것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세 번째로는 대출성 상품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청약철회권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금융회사가 동일하지는 않겠지만 대출상품 신청과 대출금까지 통상 신용대출의 경우는 당일 또는 길어야 2일 정도 소요되고,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는 약 5일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대출금의 경우 5일에서 7일 정도 시일이 소요되어 현재도 사실상 일종의 청약철회 기간이 존재하고 있으며, 또한 필요 시 소비자는 언제든지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후 대출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청약철회권을 부여할 때 일부 불건전한 소비자의 악용 가능성이 있고 대출과 청약철회를 반복하면서 단기급진 이자수익을 노리는 나쁜 금융관행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입을 하더라도 소액의 신용대출 등에만 일부 한정하여 시행한 후 그 경과를 지켜보고 다른 대출상품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이 합리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는 금융상품 직접판매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이 인용한 현행 보험업법 제102조가 규정화된 2003년 당시에는 채널이 다양화되기 전 상황에서 배상자력이 부족한 보험설계사 등 영세 채널이 다수였다는 점에서 소비자보호를 위한 타당한 입법이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도 제조와 판매가 분리되는 현상이 심화되면서 보험업의 경우 비전속 대형 법인대리점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판매 채널이 더욱 다양화·대형화되고 있습니다. 즉 배상자력이 충분한 대형 판매대리·중개업자의 경우에는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판매자에게도 직접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금융상품자문업자에 대한 규제 내용의 타당성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금융상품 판매업자로부터 독립하여 소비자 이익을 최우선하여 자문업을 영위하는 금융상품자문업에 대해서는 인허가 및 업무수행 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한 입법 취지는 매우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추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법안은 규제의 일관성 차원에서 전 금융기관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되는 만큼 종전 법체계에서 각자 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규제 방식의 장점이 훼손될 우려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우선 꼭 필요한 일반적·공통적 사항만을 최소화하여 법에 반영하고 향후 금융시장 변화에 따라 필요한 내용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본의 경우 금융상품판매법을 제정 운영 중인 데 설명의무, 적정성 확보 등 일부 판매행위준칙만 규정하여 전체 조문이 10여 개에 불과하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진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우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현 송실대 금융학부 교수입니다.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윤석현 안녕하십니까? 송실대학교 윤석현입니다.

오늘 이 귀중한 자리에 불려서 진술을 하도록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지금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이 뭔가 경쟁력이 좀 높아져야 되는데 오늘의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공청회는 그중에서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겸업화가 좀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관련해서 소비자보호가 강화되어야 된다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모두 찬성하고,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은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어서 금융산업을 발전시키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시점에서 우리가 뭔가 철학을 좀 다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44쪽의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해서 국내에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이것이 지금 추세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중시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앞에서 핀테크 같은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핀테크가 진전되면서 그것이 또 소비자들한테 큰 어려움을 주는 그러한 경우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처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45쪽에 가면 경쟁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그간 우리나라가 과다경쟁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 판매도 그렇고 그다음에 엔화 대출도 그렇고 키코도 그렇고 또 최근에 주담대 판매하는 것도 그렇고 그렇게 경쟁이 과열되다 보면 그 피해가 결과적으로 다 소비자들한테 가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오늘과 같이 이런 소비자보호를 미리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하면, 금융감독 체계도

같이 아울러서 조화스럽게 입법이 좀 더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46쪽으로 가겠습니다.

금융 겸업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은 앞에서 드렸고, 시간관계상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7쪽으로 가서 금융상품의 판매업·자문업 규제 체계가 과연 가치를 창출할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두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우리가 양복점에 기성복들을 모아 놓으면 판매가 늘어나는 그런 면이 있지만 부정적으로도 금융상품이라는 게 시간이나 노력을 많이 투입을 해서 고르고 또 사고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윈스톱 बैं킹이라는 게 과연 항상 효과적일까 하는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차제에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하고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것은 옳은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48쪽으로 가서, 자문업의 등록요건을 대통령령에 포괄위임하는 문제는 대통령령에 포괄위임할 경우 포지티브 규제가 된다는 그런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 밑에…… 이거 타이포(typo)입니다, 죄송합니다. ‘네거티브 규제가 됨으로써’가 아니고 ‘포지티브 규제가 됨으로써’ 이게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문업시장은 명확히 정의가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잠시 언급이 있었는데 직접판매업자와 중개대리업자 간의 어떤 책임 소재 관련해서 직접판매업자한테 100%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저는 적절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쨌거나 직접판매업자는 값이 고 중개대리업자는 울이기 때문에 값이 계속 푸시를 하면 울은 그것을 소비자한테 떠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표현을 보면 강석훈이나 이종걸 의원 안들은 상당한 주의를 하였고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한 경우…… 그 나머지 그 부분에 대해서 100%를 직접판매업자가 지는 쪽이 맞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금융상품의 구분 문제로 가서요, 혼합형과 파생상품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 과거에도 보면 키코라든지 ELS라든지 그런 상품들이 많이 등장을 했고 그런 것들이 문제를 일으켰고요. 그래서 복잡한 혼합상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상품으로 구분해서 소비자들한테 신호를 주는 그러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함



니다.

50쪽으로 가서, 사전적 소비자보호는 강화하는 쪽으로, 앞에서 상품을 좀 더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강화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51쪽으로 가서 사후적 소비자보호에서 피해보상계획, 이건 영국에서 하고 있는 방식인데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는 것이 저는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입증책임전환 이것도 긍정적으로 보는데 예를 들어서 보험이라든지 그런 데 사기도 좀 있고 그런 문제들이 제기가 될 수 있으므로 전환조건 같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융분쟁조정 제도의 경우 민병두 의원께서 말씀하신 2000만 원 이하가 적절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고, 집단소송제도도 찬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징금 제도, 53쪽에 나와 있는데 사실 이게 위반행위로 인한 수입의 100분의 30을 부과하도록 돼 있는데 100%를 다 받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우택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은윤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본부장,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정은윤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본부장 정은윤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신 금소법 개정안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차피 금융생태계가 금융소비자하고 금융회사 등으로 구성돼 있다면 균형적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몇 가지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투자성 상품의 위험등급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성 상품은 종류라든가 구조라든가 기초자산 등이 매우 다양하고 시장상황에 따라서 위험성이 변동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에 대한 전망이나 또는 금융상품에 대한 분석 등이 금융회사별로 다를 수도 있고 금융상품의 위험성을 평가하는 요소 및 그 비중 또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 위험등급은 금융회사별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성 상품 전체에 대해서 위험등급을 획일적으로 정할 수 없으며 외국에도 유사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금융당국이 위험등급을 사전심사하거나 획일적인 위험등급 분류기준을 제시한다고 하면 다양하고 창의적인 금융상품 출현이 어렵고 급변하는 금융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울 것은 자명할 것입니다. 따라서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상품별 위험등급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험등급의 설명의무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위험등급은 투자성 상품의 위험을 설명하는 다양한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자본시장법과 금소법 제정안에서도 이미 투자에 따른 위험을 설명의무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어 위험등급을 다시 설명의무사항으로 규정하는 것은 불필요한 중복규제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투자성 상품의 위험등급을 설명의무사항으로 특정하는 것은 그 실익이 없다고 생각되며 현행 자본시장법처럼 상품의 구조, 변동성, 기초자산 등 투자에 따른 전체적인 위험을 설명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투자성 상품의 판매자격 제한사항은 현행 자본시장법령하에서도 시행 중에 있는 사항임을 참고해 주시고요.

투자성 상품 판매장소 제한은 최근 핀테크 금융환경하에서는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을 저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금융소비자가 아닌 금융상품 판매업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입증책임 전환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입증책임 전환은 환경이라든가 의료소송 등 소비자가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운 전문적이고 특수한 영역에서 주로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회사의 자료보관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금융소비자의 자료열람권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정보의 비대칭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입증전환책입의 도입 필요성은 크지 않아 보이고 만일 금융회사에 입증책임을 부담시킬 경우 악의적인 소송이 남발되고 금융시장이 위축

될 소지가 있어 그 도입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손해액 추정의 경우도 현재 자본시장법상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데 금소법안과 같이 모든 의무 위반으로 확대 적용될 경우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어 도입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또한 그 적용 범위를 금소법상 위반행위 전체로 하고 있어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적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집단소송 및 집단분쟁조정외의 경우에도 다수의 당사자 간 주요 쟁점이 공통되는 것이 필요하나 금융상품 판매의 경우 위법행위 유형, 위법성 정도 등이 다양하여 하나의 소송 또는 분쟁조정으로 묶기가 곤란합니다. 오히려 이러한 제도들이 도입될 경우 소송의 남발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금융회사의 경영활동 위축이 우려되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소비자의 계약 변경·해지 요구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변경권의 경우 계약조건이 동일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일부 소비자의 계약조건만 변경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신중한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계약해지권의 경우에는 위법한 판매행위 여부와 무관하게 금융소비자가 언제든지 약관에 따라 해지가 가능한 현실을 감안하면 그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이은영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이은영 안녕하세요? 소비자시민모임의 이은영입니다.

이런 자리에 소비자의 입장을 대신해서 말씀을 올릴 수 있게 불러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입장 차이를 확인하는 자리가 됐어요, 저한테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 하면 금융소비자가 금융업권에 비해서 열세의 위치에 있고 정보도 훨씬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더 많은 피해를 받고 그 피해를 사전에 그리고 사후에 구제하기 위해서 금융소비자 보호가 정말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되겠다라는 취지로

금융소비자법안이 추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금융소비자는 보호의 대상입니다. 보호의 대상인데 아무래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를 갖추다 보니까 각각 업권별로 다르게 있고, 다르게 규제된 부분을 하나로 통합하고 제도적으로 소비자를 사전에 보호할 수 있는 여러 장치를 만들어 놓고 또 피해에 대해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구제를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담고 있어서 제 입장에서는 사실 정말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업권에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그쪽의 이해관계자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금융소비자가 본 피해 대비 우려하는 부분이 더 많더라는 것에 대해서, 입장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했었는데요.

특히 놀라운 것은 지금까지 금융소비자가 많은 피해를 본 반면에 악용하는 소비자, 악의적인 소비자를 또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피해소비자들의 상담을 많이 받는 곳이고 그쪽에서는 민원을 많이 받는 곳이다 보니까 입장에서 또 다른 차이가 있고 각각의 법안에 낸 의견에 있어서도 검토할 부분이 다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의견을 썼지만 저는 사실 법률에 대해서 많은 이해가 있는 법률전문가도 아니고 또 금융 쪽에 이해도가 높은 그런 금융전문가도 아닙니다. 단지 소비자운동을 했고 소비자 입장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논의하는 과정에 참여를 했었고 금융소비자 보호가 정말 필요하고 이런 것이 제도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에 정말 동감을 하고 있고, 된다면 조속하게 기본적으로라도 뭔가가 만들어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 오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입장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법안을 살펴봤는데 사실 법안에 있는 부분들은 정말 많은 의원님들이 고민을 해서 계속 보완을 하고 사전적인 것 그다음에 판매행위부터 그다음에 나중에 사후구제 또 소비자에 대한 교육 그런 부분까지 모든 부분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은 어떤 게 적합하다, 제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금융소비자 보호가 기본이 되어

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금융소비자가 약자이기 때문에 보호가 돼야 되지 그 사람들이 이미 충분히 알고 있는 다음에 권리를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단계가 아니라는 점을 지금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몇 가지만 다시 한 번, 자료에 있지만 넣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금융상품자문업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금융상품자문업이라는 것은, 소비자들이 금융상품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고 정확한 정보 그다음에 나한테 유리한 정보가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현실적으로 많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금융소비자교육을 그만큼 해 오지도 않았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금융회사에, 금융업권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이 있고 그들의 권유에 의해서 어떤 투자를 하게 되고 상품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소비자들이 전적으로 믿고 어떤 투자행위나 상품을 선택하는 행위를 하는 데 정말 신중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책임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규제, 금융상품자문업에 대한 규제는 저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은 뭐 외국에서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규제들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융상품자문업을 따로 두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명확히 하는 것은 금소법의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현재의 여건상 금융상품자문업이 과연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느냐의 문제가 있는데요. 그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보완이 마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소비자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또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는데, 내가 어떤 상품을 선택함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받을 때 충분히 그 자문료를 지불할 수 있는 의사가 있는 소비자가 과연 있을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투자를 할 때 이것은 자문료가 있고 자문료가 얼마라는 것은 분명히 소비자한테 알려야 될 중요한 고지사항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세심하게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만 투자상품자문업이 좀 더 활성화가 될 수 있고 소비자 쪽에서도 어떤 의견

조정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부분은 제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금융소비자 보호가 우선이라는 것, 그래서 어떻게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인 기반이 빨리 마련되고 금소법이 빨리 통과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우택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공청회를 통해서 여섯 분의 진술인들로부터 진술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참고로 진술인 상호간에는 질문과 토론이 허락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토론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새정치민주연합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진술인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간단하게 우선 윤석현 진술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를 금소법에 포함시키는 것을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현재 정부안대로 과징금 제도를 통해서 이것을 완화할 수 있다라는 주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 조항이 추상적이거나 구체적이지 못해서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만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윤석현 지금 답변드릴까요?

○한명숙 위원 예, 지금 답변 짧막하게 좀 해주십시오.

○진술인 윤석현 과징금의 경우는 정부가 징수하는 부분이고요.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집단소송제 같은 것은 개인들 간에, 그러니까 금융기관과 개인들 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과징금이라는 건 제가 조금 과장되게 얘기하면 아무래도 우리나라에 관치금융이 그동안에 죽 내려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강하게 하기가 조금 적절하지 못하다,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징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명숙 위원 감사합니다.

배현기 진술인께, 지금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경우에 집단소송에서 금융소비자 측이 패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유사거래자는 별도의 소를 다룰 수 없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금융소비자의 재판청구권을 제약할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진술인 배현기** 문제는 금융상품, 그러니까 제조는 명확하지 않습니까? 제조는 상품이 명확한데, 판매행위는 개별적인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집단소송으로 묶어서 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신중히 고려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한명숙 위원** 그래서 지금 이 법은 징벌적 배상책임제나 집단소송제 도입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가 쟁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0년도 들어서 발생한 금융소비자 피해사례는 금융소비자보호법제가 미비한 상황에서 발생한 필연적인 사건이 아니었나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일부 금융기관들이 금융상품을 불완전판매하거나 또 부당권유하거나 불공정 영업행위를 해도 이것을 마땅히 제대로 규제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소법이 마련될 때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집단소송제도나 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창원 진술인께 좀 여쭙겠는데요.

지금 집단소송제도의 경우에 남소의 위험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도입된 증권집단소송의 경우에도 도입 이후에 한 세 번 내지 네 번 정도의 소송만이 제기돼서 아직까지는 실질적으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사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 것만으로도 대상 회사들의 지배구조 건전성이나 또는 공시의 투명성 확보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도입해야 된다, 이런 설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이창원** 일단 우리나라는 증권 관련 분쟁에 한해서 집단소송제도가 도입이 됐는데, 도입된 지가 벌써 한 10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집단소송이 제기된 사례가 지금까지 한 7건 정도에 불과하고, 사실은 증권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됐지만 제대로 이용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증권 관련 분쟁뿐만 아니라 금융상품 관련 부분에까지 이걸 도입한다 해도 결국 이 부분이 그렇게 실효성이 클 거라고는 생각이 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사실 저희가 반대하는 이유는 집단소송이라는 게 청구원인이 관련집단에게 동일해야 이게 성립이 되는 건데 설명의무라든가 적합성·적정성 원칙의 경우에는 개별 거래 그다음에 개별 고객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상 집단소송의 대상으로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크다는 점입니다.

**○한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택**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박대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동 위원** 새누리당 울산 북구 박대동입니다.

어려운 시간 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창원 부행장님께, 금융상품 영업행위의 적정성 원칙 적용범위와 관련해서 대출성 상품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고객이 필요한 자금 차입이 제한될 소지가 있고 또 취약계층 자금 지원이 크게 위축되기 때문에 신용경색이 우려될 소지가 있다 그래서 좀 반대하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 금융 당국은 또 과잉·약탈적 대출을 방지하고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적정성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다만 과잉대출의 위험성이 큰 분야, 주택담보대출 같은 그런 데 한정해서 적용하면 어떠냐 하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진술인 이창원** 일단은 대출상품의 경우에 적합성, 적정성이 뭐냐가 사실은 그렇게 디파인(define)하기가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측을 해 보기에는 실제 자금 수요 그다음에 자금상환능력, 신용 이런 것들을 적절히 고려해서 적정한 수준의 대출을 하라라는 내용인데요. 사실 은행권의 경우에는 그게 대출 영업의 가장 핵심사항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내부적으로 리스크부서라든가 그다음에 신용평가부

서라든가 이런 쪽에서 굉장히 철저하게, 타이트하게 그 부분을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측면이라기보다는 은행 자체가 대출자금의 상환을 확실히 하기 위한 그런 기체로서 은행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충분히 필요한 건데 그것을 굳이 다시 적용할 필요가 있는나라는 생각이요.

거기에 대한 부작용으로는 결국은, 예컨대 대출을 해 줬는데 연체가 됐다, 디폴트가 됐다 이렇게 되면 차입자 입장에서는 항상 '은행에서 제대로 이것을 심사를 못 해서 내가 상환할 수 없는 정도의,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대출을 해 줬기 때문에 나는 상환을 못 하겠다', 사실 이런 식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대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배현기 소장님,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문제와 관련해서 이것 부과를 금지할 경우에 이 비용이 이자율에 포함돼서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소지가 있다 하는 것과 또 은행 쪽에서 수입을 보전받기 위해서 수수료 부과가 필요하다 하는 그런 입장이 나오고 있는데, 금융 당국은 또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5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부과할 필요가 있다 그런 입장도, 감독원 당국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대체로 5년 이내에 부과를 허용할 경우에 업계가 우려하는 부작용이 그렇게 크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인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진술인 배현기 저는 결국에는 이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든 그다음에 현재 제도로 두든 결국에는 그것이 수수료와 금리를 합쳐서 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가격이 그런 형태로 해서 예컨대 중도상환이…… 원칙적으로 금지가 돼서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부과할 수가 없게 되면 당연히 그 리스크를 금융회사가 안게 되는 거고 그 리스크를 안고 비용을 안게 되면 어떤 형태로든 그것은 보전받으려는 니드(need)가 당연히 있기 때문에 저는 실질적으로 이것을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그 실익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박대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정은윤 본부장님,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 문제하고 관련해서 전환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우리 민법상의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법적

안정성 저해 문제, 또 면책을 위해서 과도한 자료를 요구한다든지 과도한 서명 요구 등의 경직된 관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인데, 또 금융 당국에서는 금융회사의 위법행위 조사를 위해서 입증책임은 사실상 상당 부분 전환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 강석훈 의원안처럼 적합성 원칙 및 적정성 원칙, 그다음에 설명의무 위반 시 고의·과실 요건에 대한 제한적인 입증책임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진술인 정은윤 그 부분에 대한 이의가 없습니다.

○박대동 위원 잘 안 들려서……

○진술인 정은윤 그 사항에 대해서 별 이의가 없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박대동 위원 마지막 시간, 우리 이은영 진술인, 혹시 여기에 대한 의견 있으십니까?

○진술인 이은영 아니요, 없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박대동 위원 소위에서 잘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택 박대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정치민주연합의 김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식 위원 금투협회 계신 분 성함이……

○진술인 정은윤 예.

○김기식 위원 죄송합니다.

불완전판매 입증책임 전환 관련해서요, 지금 금투협회에서는 방관법 개정을 통해서 방문판매를 허용해 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진술인 정은윤 예.

○김기식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불완전판매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설명의무를 제대로 안 했거나 혹은 왜곡되거나 과장된 설명을 했을 때 불완전판매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현재 민법상으로 보면 소비자, 그 상품을 산 사람이 내가 설명을 제대로 못 들었다 혹은 잘못된 사실을 들었다라는 것을 입증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진술인 정은윤 아니요……

○김기식 위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이 얘기는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내가 이 설명을 했다라는 걸 입증하는 것하고 저 사람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았거나 허위·과장했다라고 하

는 걸 입증하려면 앞으로 소비자는 방문판매사가 오거나 이런 사람들이 설명하는 걸 다 핸드폰이나 이런 데 녹음을 했다가 그것을 제출해야 되는 거지요.

그런 점에서 보면 입증책임 전환에 대해서 부정적이면서 방문판매도 허용해 달라…… 지금 방문판매와 관련해서 가장 논란이 되는 게, 현재도 객장에서 파는 것조차도 불완전판매나 지난번 동양사태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 방문판매 하면서 과연 그런 불완전판매를 근절할 수 있느냐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업계에서는 입증책임 전환도 우리는 못 하겠다……

사실 회사는 그런 것을 녹음을 하든 녹화를 하든 해서 자기가 제대로 설명했다라는 것을, 자기가 증거를 확보해서 문제가 되면 우리가 제대로 팔았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은 금융회사가 해야지 소비자보고 그것을 다 녹음·녹화하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정은윤** 지금 이 앞에 동양사태 때도 아마 녹음 녹취를 다 감독 당국에서 분석해 가지고 각 책임 정도를 구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기식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사안이 터지니까 금융감독 당국이 나서서 금융감독 당국이 금융회사에 다 내보라 해 가지고 그것을 갖고 하니까 하는 거지 만약에 그런 대형사건이 아니어서, 예를 들어서 개별 소비자가 금융회사랑 분쟁이 있을 때 그것을 내보라 했을 때 제대로 내놓는지 안 내놓는지 등등은, 안 내놓으면 민사상 소송을 걸어서 그것을 다 받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소송비용 다 들여 가지고 자기가 그것을 받아야만 입증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감원의 개입 없이 개별적인 소비자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진술인 정은윤** 지금 현재는 금소법에도 자료요구권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금융회사에 그 판매현장에 관한 녹음자료가 있다고 하면 자료요구권을 행사하면 충분히 입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김기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지금 금융회사 입장이야 금융회사 이익이 최고지만 한편으로는 방문판매는 허용해 달라 그러면서 우리는 입증책임 전환을 못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건 소비자의 권리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호할 의사도 없고 어쨌든 영업행위를 확대하는 것에 따라서

금융회사가 어떤 조치를 하겠다는 의지도 없이 그냥 편익만 얻겠다 이렇게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한 번 검토를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다른 분들도 그랬는데 집단소송 관련해서 남소의 가능성을 얘기하는데, 제가 참여연대 때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 입법하는 과정에 있을 때 수도 없이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 하면 남소된다 그랬는데 이창원 부행장님, 우리나라 증권 관련 집단소송이 제정된 이후로 지금까지 10년 동안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진술인 이창원** 제가 알기로는 한 7건 정도……

**○김기식 위원** 예, 10년 동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증권 관련 집단소송 얘기가 나올 때마다 나오는 얘기가 남소의 가능성인데 실제로는 10년 동안 1년에 1건도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집단소송이 성립하고 그 요건을 갖추어서 소송이 이루어지는 데는 오히려 지금 법률이 너무나 엄격해서 하기 어렵다 이런 것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진술인 이창원** 법률이 어렵다라기보다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7건이 제기가 됐지만 또 이게 선고까지 이루어져서 실제 피해구제가 이루어진 케이스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얘기는 남소의 가능성은 기우였던 것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집단소송제도가 실효성이 있었던 것이었느냐, 이런 의문의 말씀도 지금 있다가……

**○김기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남소의 가능성 문제가, 실효성이 없었던 것은 그 당시에 이렇게 법 제정하면 집단소송 못 한다라는 지적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집단소송이 가능하게 제도를 개선해야 되는 문제이지 실효성이 없다…… 집단소송에 대한 요구가 우리에게 비해서 미국은 왜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겠습니까?

또 하나, 대출성 상품에 대해서는 적합성·적정성 원칙 적용에 반대한다인데, 많이 얘기되는 게 약탈적 대출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고려한 대출을 통해서 금융회사는 이익을 얻는 문제와 관련해서, 소위 약탈적 대출 이 말은 미국에서 나온 말이지요. 그래서 미국에서조차도 이 약탈적 대출을 규제하는 법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대출성 상품에 있어서 적합성이나 적정성 원칙을 반대한다라고 하는 문제는 이런 약탈적 대출

의 문제를 눈감는 것 아닌가요? 실제로 많은 부분에 있어서 대출이라고 하는 것이 소비자의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이루어져서 지금 가계부채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술인 이창원** 그런데 입장을 바꿔 놓고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면 그 소비자는 자금 수요가 분명히 있고, 높은 이자를 지급하더라도 자금을 차입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더 큰 어려움이 나 곤란함이 생길 거다,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높은 이자를 감수하고 대출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만약에 무조건 금지가 되고 제대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또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그 점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김기식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되든 간에 일단 너 필요한 돈, 소위 빚내서 살아라 이런 거지요. 그러면 미국에서 왜 이 약탈적 대출에 대해서 규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그 사람이 상환할 능력이 안 되면 적절한 수준에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맞는 거지 당장 눈앞에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자기의 상환능력과 상관없이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그냥 방치하는 것은 당장 빚내서라도 지금 이 국면을 넘어가 봐라, 그다음에 나중에 가서 가계 파산 나든 말든 그건 나중에 문제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대출성 상품에 있어서 적정성 원칙에 반대한다 이런 것은 현재의 대출관행이나 이런 걸로 볼 때는 타당성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술인 이창원** 은행권 입장에서는 사실 약탈적 대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필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이구요, 만약에 그 범위를 넓혀서 대부업체라든가 사금융업자라든가 이런 쪽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적합성·적정성 원칙 이런 것보다는 이자제한법이라든가 이런 다른 쪽의 방법을 좀 생각해 보시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정우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새누리당의 김용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태 위원**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이라는 우리 금융산업이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스타트 라인에 서 있습니다. 늘 경험하고 느끼는 건데요, 참 생각이 틀린 사람들이 아니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우리 세상을 구성해서 살아가고 있고 우리 국회에도 그게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우택 위원장, 김기식 간사와 사회교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생각이 틀리다고 하면 우리가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할 겁니다. 생각이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거기에서 접점을 찾아서 조금이라도 전진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문제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금융산업 발전에 있어서 규제효과가 발전의 첫걸음인지 아니면 금융소비자 보호가 금융산업의 첫걸음인지, 이 말은 금융소비자 보호하고 규제효과가 정반대의 벡터를 가진 내용인지 아니면 무언가 병립 가능하거나 화해 가능한, 경쟁이 가능한 내용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참 합의를 이루어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배현기 진술인에게 제가 여쭙 보겠습니다.

투자성 상품에 대해서 사전등급분류를 하고 판매장소를 제한하자 지금 이런 법안이 올라와 있는데요, 바로 이게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에 대한 가장 전형적인 소재인 것 같습니다.

우리 진술인께서는 과연 지금 현재도, 사실은 현재의 규제도 시장에서는 조금 과도해서 제대로 된 금융상품 발전에 이바지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견이 많은데 여기에다 대고 앞으로는 모든 투자상품을 그냥 자율기구에서 하는 이런 형태가 아니고 아예 법으로 하자, 그리고 그것도 자율규제가 아니라 의무규제로 가자라고 하는 게 맞느냐, 쉽게 얘기하면 이런 법안인 거지.

그런데 지금 배 진술인은 말이 안 되는 소리다, 현재 규제도 많은데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런 입장이신가요?

**○진술인 배현기** 맞습니다.

**○김용태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은영 소시모 사무총장님께서 지금 투자성 상품이라는 게 첫 시장에서는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급기야는 동양증권 사태라는 전대미문의 사태로 국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정부가 책임지고 규제를 가해서 잘못된 금융회사들의 잘못을 뿌리째 뽑고 나중에 철저히 응징해야 된다고 하는 입장인 거지요, 당연히?

○**진술인 이은영** 용어 자체가 좀 과격하신 면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투자상품이 기능별로 재분류되고 그것에 따라서 동일하게 규제가 돼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점을 소비자 관점에서 보느냐, 기업이 각각 다른 제품이니까 다른 제품으로 보느냐의 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용태 위원** 하여튼 저는 지금 금방 말씀하신 두 분 진술인의 생각이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이 다르신 거지요. 그리고 두 분 다 우리 금융산업 발전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갖고 계신 거지요. 이 점을 우리가 이번에 법안을, 특히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제정법이기 때문에 첫발을 잘 떼야 되는데 두 분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진술인들도 아마 비슷한 생각들을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여러분들이 진술해 주신 내용들을 잘 참고해서 생각이 다름을 하나로 모아내는 어떤 지혜를 낼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식**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여러 진술인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접근할 때 지난 과정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얘기하는 게, 과거에 많은 금융사태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키코사태 또 펀드사태 그다음에 동양사태도 있었고요, 얼마 전에는 신용정보 누출사태, 이런 어떤 큰 사고와 사태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국민 대다수의 소비자, 금융소비자지요. 우리 국민 중에 금융소비자 아닌 사람은 없을 겁니다. 국민 대다수가 엄청난 피해를 입은 게 사실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우선시하고 그러면서 금융시스템의 여러 가지 영업상의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이 논의를 하는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업계에, 은행업계도 있고 보험업계 그다음에 투자·금융업계도 다 말씀을 하셨는데 거의 대부분이 그런 것을 간과하고 입장을 얘기하신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먼저 윤석현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안을 보면 적용대상 금융상품의 범위를 금융위원회 설치법상 금융기관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업체 등 유사 금융기관이라고 하는 데는 여기 적용대상에서 제외가 돼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사각지대가 생길 것이고 그런 사각지대와 함께 이 적용대상에서 빠지는 금융기관들은 규제차익을 얻게 되는데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은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윤석현** 이번에 금융판매업과 자문업 관련된 법 이게 한편으로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다루고 있는데 이걸 제정하는 입장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초점을 맞추는 게 금융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크게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포인트하고 관련해서 그것도 같이 전체적으로 취급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아까 진술할 때 어떤 말씀을 드렸다면, 금융상품 중에 지금은 예금성·대출성·투자성 그다음에 보장성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그 밖에 하나를 더 열어서, 복합상품 같은 것을 열어서 사람들이 그것을 사면 위험하다라는 걸 알 수 있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기존의 틀을 조금 더 바꾸는 것이어서 부담이 되기는 하지만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 금융산업의 문제는 소비자들이 그동안 펀드도 그렇고 무슨 기타 대출의 경우도 그렇고 그냥 생각 없이 은행을 믿고 또는 금융기관을 믿고 가서 구매를 하고 하다가 큰 손해를 봤거든요. 그런 부분을 반드시 짚으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기준 위원** 결국 금소법의 취지가 업권별 규제에서 사실 기능별 규제로 바꾸는 거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이렇게 은행법이다 자본시장법이다 또 보험법이다 해 가지고 업권별로 규제하던 것을 이제 종합적으로 해서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큰 목적을 위해서 기능별로 규제를 하겠다고 그러면 당연히 포함되는 게 맞다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합니다.

○**진술인 윤석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기준 위원** 이창원 진술인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입증책임 전환 문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내셨지 않습니까?

서양의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하지 마라’, 그 얘기는 정보에 있어서 은행은 많은,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고 반면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거의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소송을 하면 판판이 깨진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소송할 필요가 없다, 비용만 깨진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 입증책임 전환의 문제는 업계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입증책임 전환 이 문제가 규정이 된다 그러면 은행이나 업권, 업계의 입장에서는,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상품을 개발할 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상품을 개발할 때 그만큼 완전하게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검토를 하고 상품을 개발하지 않겠냐, 이런 예방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그 정도의 자신감을 가지고 금융 신상품을 개발하고 운영을 해야지, 이 입증책임 전환 문제가 여러 가지 악용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것보다는 좀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진술인 이창원** 사실 저희가 걱정을 하는 부분은 적합성·적정성 원칙 측면은 아니고요 설명의 무에 관한 부분입니다.

적합성·적정성 원칙은 사실은 제조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되는 사항인데 그 부분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어느 쪽이 됐건 입증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테고요.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상품의 내용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상품 판매 시에 제대로 소비자한테 했느냐 이게 주로 관건이 될 텐데, 지금 저희가 상품을 판매할 때는 기본적으로 상품설명서를 제공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걸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별도로 상담확인서라는 양식으로 충분히 설명을 들었다라는 것들을 다 자서하도록 하는 그런 서류까지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문제가 안 될 것 같기는 한데 그 중 일부 소비자들의 경우에는 본인이 그 상품 상담확인서에 자서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못 들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 때문에 주로 문제가 되는데 그

걸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그 입증책임과 관련해서 사실 은행의 입장에서는 고객에 대해서 제품, 상품을 판매할 때 그 모든 상담 과정을 다 녹음을 해서 장기간 보관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그걸 하라고 하면 저희가 못 할 것은 아닌데 과연 그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미스셀링(mis-selling) 이슈, 설명을 제대로 못 받았다는 이슈를 제기하는 고객은 거의 100만 명 중에 한두 명 정도에 불과한데요,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든 상담 과정을 녹음을 해야 된다고 하면 은행에게는 엄청난 비용이 발생하고 또 그것이 결국은 서비스 가격, 이자율 이런 것의 인상과 직결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이 부분을 검토해 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또 반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서면에 의해서 상담확인서까지 작성을 하고 또 그걸 보관을 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고객이 요구하면 언제든지 그것의 열람이 가능한데, 그 정도로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입증의 문제는 많이 해결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라고 하면 민법상 대원칙인 이익을 청구하는 사람이 입증책임을 진다라는 그 원칙을, 이걸 꼭 바꿔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런 것도 근본적으로 의문이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식** 수고하셨습니다.

민법상의 대원칙이라고 했는데 입증책임 전환은 굉장히 많은 범위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 윤석현 교수님, 소비자보호를 위해서 사전적인 보호와 사후적 보호를 같이 해야 된다 그런 입장이신 거지요, 그렇지요?

**○진술인 윤석현** 예.

**○김영환 위원** 그런데 사전적 보호에는, 판매장소 구별·판매면허제 도입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고, 수수료 문제 이것도 시장에 맡기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신데, 투자성 상품의 위험등급분류 및 설명의무 문제에 대해서는 필요하다 그런 입장이지요?

**○진술인 윤석현** 예.

**○김영환 위원** 징벌을 강화하는 것은 당연한 일

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문제 같은 거지만 지금 금융사고가 빈발했고 그 피해가 컸기 때문에 이 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의 본질은 사전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느냐 이것이 지금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안하신 내용 가운데 사전적 소비자보호 문제가 좀 미약한 것 아닌가? 지금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고.

배현기 진술인께서는 사전적 보호의 규제 이 문제는 최소화해야 된다 그런 입장이지요?

○진술인 배현기 예.

○김영환 위원 어떤 정도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배현기 저는 적합성, 적정성,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그리고 설명의무 등등으로 해서 추상적인 수준으로 규율을 하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됐을 경우에 책임을 강하게 묻는 방식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환 위원 그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과 어떻게 다릅니까? 선언적인 또 규정적인 그런 내용만 한다고 할 때 이것이 예방적 효과가 없는 것 아니냐, 지금 이 제정안에……

○진술인 배현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고 우려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런데 제가 현장 경험이 많지는 않지만 저희가 보면 그 부분을 지나치게 하면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비자 선택권이 침해되고, 그다음에 금융회사는 세이프(safe)한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쪽을 아예 처음부터 제외하고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영환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가운데 핀테크가 어떤 형태로든 우리한테 밀어닥쳐 있는 문제가 되어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장소를 제한한다든지 이런 시대에 맞지 않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진술인 배현기 예.

○김영환 위원 이 문제는 굉장히 지금 우리가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인데, 핀테크가 지금 시대적 대세로 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소비자보호 문제는 더 중요한 문제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지요. 그 문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으십니까? 우리 윤석현……

○진술인 윤석현 제 생각은, 이게 배 소장님 말씀한 것 조금 저는 공유를 하는데요. 사고가 일어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한다든지 규제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향이 필요하다, 핀테크 같은 경우는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가서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현재적으로 그간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사고들 중에서 개인으로서는 잘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적으로도 우리가 규제를 조금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사후로 가면 그런 작은 것들까지 다 건드리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사전적으로도 그런 부분은 규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영환 위원 배현기 진술인요, 중도상환수수료 이것은 금리하고 같이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어떤 형태로든 이걸 없앤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반영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진술인 배현기 예.

○김영환 위원 그런데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하는데, 중도상환수수료 문제는 사실 소비자들한테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연체가 되거나 하면 여러 가지 페널티를 주고, 또 여러 가지 은행이 갑의 입장에서 서 있는 상황에서 중도상환수수료를 임의로 지금 은행이 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합의에 의해서 내는 게 아니잖아요? 갈아타거나 또는 상환을 해 가지고 금리를 낮춰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중도상환수수료가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은행의 금리로 이것이 보상될 것이기 때문에 수수료를 유지해야 된다거나 또는 이걸 없애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좀 설득력이 약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술인 배현기 제 생각에는 그걸 옵션으로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대출받아 봤고 그다음에 또 의견도 들어 봤고 했는데 ‘아니, 내가 돈이 생겨서, 보너스가 생겨서 상환할 수 있으면 상환해야지 내가 그것에 대해서 왜 페널티를 무냐’.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런 캐시 플로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에 이런 이벤트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걸 옵션을 내가 가져야지……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그런 옵션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해서 그런 옵션이 있는 경우에는 그걸

금리하고 중도상환수수료하고 플렉서블하게 적용하면 소비자도 괜찮고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확일적으로 하는 게 문제지, 자기의 상황에 따라서 자기가 옵션을 갖고 내가 수수료를, 내가 중도상환 옵션을 갖겠다, 안 갖겠다 그것에 따라서 플렉서블하게 가면 이슈가 없다고 봅니다.

**○김영환 위원** 어떤 형태로든 수수료 문제를 폐지하거나 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연하게 대처하는 그런 입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은영 진술인에게서 중도상환수수료 문제에 관해서 이걸 폐지하는 법안, 폐지해야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비자 입장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이은영** 사실 저도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해서 많은 서민들이 부담을 갖고 있다는 부분은 알고 있고요. 그런데 중도상환수수료를 무조건 폐지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해서는 그것은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출을 받을 때 중도상환수수료를 낼 수 있게 하는 경우와 낼 수 없게, 그러니까 그게 없게 하는 조건을 다르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내가 대출을 받았을 때 그 상품을 어떤 식으로 갚을지를 분명히 계획에 맞춰서 그리고 내가 언제 상환하겠다라는, 물론 소비자 입장에서는 딱 그게 일정하게 맞아떨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계획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그것에 맞춰서 이자라든가 중도상환수수료를 더 낮추거나 아니면 내가 어떻게든 조절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은 너무 확일적으로 은행에서 정해 주는 금리를 내고 은행에서 정해 주는 것에 따라서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야만 하고……

저도 사실 대출을 받았지만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는지 없는지 민감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돈이 있지만 안 갚는 경우도 있고, 다 모아진 다음에 한꺼번에 갚자 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소비자의 능력에 맞춰서 이 사람이 충분히 이 대출에 대해서 감당할 능력이 있고 충분히 이걸 잘 조절할 수 있는 경우는 조금 달리해서, 중도상환수수료를 안 내게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상환수수료를 조금이라도 내게, 그러니까 너무나 예측불허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를 조금 낼 수 있게 조절하는 식이 훨씬 더 합리적

인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김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식** 지금 중도상환수수료에 관해서 저희가 법안심사 할 때도 그걸 폐지할 거냐 말 거냐라는 단순논리가 아니고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것에 관해서, 최근에 중소기업은행에서 그것을 차등화하는 형태로 상품을 낸, 방침을 내놓은 것처럼 중도상환수수료를 일률적이지 않게 규정하는 이런 방안들이 검토될 테니까 의견들이 계시면, 오늘 다 충분히 말씀 못 하시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 체계를 재편하는, 폐지나 유지나 이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고, 의견이 있으시면 국회에도 많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학용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신학용 위원입니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아마 어느 누구도 반대를 안 할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실효성이 있고 균형감각 있게 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오늘 주안점인 것 같은데요.

제가 보니까 그동안 우리 사회문제가 됐던 키코 문제, 동양 사태, CP 발행 그다음에 저축은행의 후순위채 발행 이런 문제가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이걸 거기서 배상해 줄 수 없는 그런 경지에 이르니까 큰 문제가 됐습니다. 예를 들면 거기서 배상해 줄 수 있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배상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오니까 문제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가 개별적으로 일어났을 때…… 집단적으로 일어났을 때 배상할 수 없는 것은 나름대로 부도덕한 기업의 어떤 정책 때문에 그런 것이고, 개별적인 상품에 대해서 소비자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이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와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불완전판매가 거의 대부분인데 그 불완전판매에 대한 입증책임을 전환시켜 버린다면 판매하는 입장에서 거기에 대해 나름대로 꼼꼼하게 해서 불완전판매를 없앨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나름대로 판매하는 입장에서 ‘아, 우리 떳떳하게 했다’, 그리고 사는 입장에서 ‘…… 정말 돈 1000만 원이 뭐 보통 큰돈입니

까? 물건 하나 살 때도 꼼꼼히 살피면서 현금 1000만 원, 2000만 원, 5000만 원을 투자하는데 그냥 투자하는 것도 잘못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가 없애야 되는 것도 여러분들이, 금융인들이 해줘야 될 문제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이창원 부행장님께 불완전판매가 문제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금융인들이 여기에 대한 확고한 대처만 해 준다면 입증 책임 전환이 왜 문제가 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왜 문제가 되고 그러냐 이것이지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금융도 발전하고 소비자도 보호하고 둘 다 윈윈 할 수 있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이라는 것은 그럴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 책임만 자꾸 안 지려고 그러고 영업활동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그런 의미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가장 문제되는 불완전판매에 대해서 보험회사건 은행이건 자본시장이든 그런 분들이 확실히 해 가지고 ‘봐라. 이 정도로 불완전판매는 없었다’ 하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막아 주는 것이 좋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봐 달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윤석현 교수님한테, 지금 외국 트렌드는 일단은 사전규제는 좀 완화하고 사후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집중적인 배상을 하도록 그런 식으로 되어 간다는데, 맞습니까?

○**진술인 윤석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학용 위원** 저도 어쨌든 금융이라는 것은 그런 식으로 흘러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소비자에게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그런 노력을 한다면 소비자보호 문제는 나름대로 많은 효과를 달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에서는 사후적 책임을 많이 지고 사전적으로는 좀 규제를 완화해 가지고 나름대로 그 책임은, 완화해 주는 대신 그 책임은 그래도 우리 금융에서 모두 지는 것이 저는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등급제를 만든다면, 그리고 그 등급제를 만들어 놓고 나중에 책임져야 될 때 예를 들면 키코나 동양사태,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그러면 등급을 딱 만들어 놓고는 등급을 정부가, 금융위가 4등급으로 해야 될 것을 3등급으로 해줬다, 그래서 손해를 다 너희들이 져야 된다는 이런 우려도 있을 텐데 이런 것을 여기다 넣는 것이 앞으로 손해배상책임이 높아질 경우 시스템

을 완전히 무력화시켜 버릴 수도 있다, 저는 아주 굉장히 우려를 합니다.

상품의 신용도를 금융위원회에서 1·2·3·4·5등급 해 놨다, 그러면 ‘5등급 가야 될 것을 3등급 해 놨으니까 책임져라’, 어떻게 할 것이예요, 정부에서? 이거 정부가 책임져야 된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30초만……

저는 아까 말했지만 키코나 동양사태, 키코는 또 다른 것인데, 키코도 지금 결정을 못 내립니다, 누가 옳고 그른지 이것이 뭐 한지. 일부는 승소, 일부는 패소해 가지고 이렇게 되는 입장에서 동양 사태나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정말 불완전판매의 대표적인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집단적이고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개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까지 온 이런 상황을 제외하고는 여러분들 자체가 불완전판매에 대해서 확실히 해 준다면 뭘 논의할 일 없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 같은 경우 그러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그것 만일 정부에서 ‘이것은 한 3등급 정도 된다’ 딱 해 놓고 나면 나중에 온 국민들이 ‘그것 5등급이었는데 왜 3등급으로 해 놨어? 손해 책임져’ 해 버리면……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한번 해 보면서요.

이창원 부행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불완전판매 관련해서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방어할 수 있고, 그다음에 윤석현 교수님께서도 그런 트렌드로 가야 된다는 제 말씀에 대해서 수궁하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윤석현** 등급제를 한다 그래서 그 등급을 정부가 결정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보고요. 나름대로 그것은 시스템을 저희가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금융소비자 보호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일반 소비자들, 전문성이 없는 일반 소비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프로텍트(protect)할 것이냐라는 그런 부분이 중요한데,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런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또는 신호를 전달, 이것 위험하다라는 것을 알려 주기 위해, 그리고 나서도 그 사람들이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그 후의 사인 간의 선택이니까 할 수 없지만 일단 정보가 별로 없고 전문성이 없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정보의 비대칭성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도의 장치는 마련을 해서 경중을 올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정도의 범위 내에서 해 주고, 그리고는 대부분의 사전적인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무슨 중도상환수수료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민간 금융기관과 개인들한테 맡기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찬성인데, 예를 들면 5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금리가 갑자기 급격하게 내려가면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은 법이나 제도로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은 민간에 주는 것이 맞는 것 같고, 그렇지만 소매 고객들 보호하는 것, 그러니까 정보나 이런 것이 충분하지 못한 그런 부분은 우리가 확실하게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신학용 위원** 이창원 교수님, 왜 반대를 하시지요? 여러분들이 불완전판매에 대한 완벽한 방안을 만들면 그런 것 필요 없지 않습니까?

○**진술인 이창원**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불완전판매 방지, 그다음에 금융소비자 보호 이 부분은 은행권에서는 어느 은행……

○**위원장대리 김기식** 짧게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시간이 많이 가고 있으니깐요.

○**진술인 이창원** 매우 강조하고 있는 분야이고 철저하게 사전·사후 조치를 취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 판매 자체가 개인 은행원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어떤 일탈행동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불완전판매가 은행권에서는, 저희 은행을 놓고 보면 거의 발생하지 않는 그런 것이고요. 발생한다 하더라도 1년에 한두 건 정도,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들어가서……

○**위원장대리 김기식** 요지만 짧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이창원** 내용을 보면 어떻게 보면 일종의 블랙컨슈머(black consumer)에 의한 억지 주장 이런 경우가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라도 은행이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방지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하면 결국은 모든 고

객상담 내용을 녹음해서 보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인지……

○**위원장대리 김기식** 알겠습니다. 그 말씀은 아까도 하셨으니깐요.

다음은 이어서 신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우 위원** 신동우 위원입니다.

윤석현 교수님께, 방금 질의하신 우리 신학용 위원님과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발의된 안을 보면 의원님 안에 따라서는 금융감독 당국이 금융상품을 판매 전에 위험도에 따라 등급 분류하자라는 안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답변하신 것 같기는 한데……

글쎄, 얼핏 보면 소비자보호에 좀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지만 사전계약에 사전에 정부가 개입하는 꼴이 돼서 이것이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의견을 주시겠습니까?

○**진술인 윤석현** 등급분류라는 것도 사실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키코라든지 ELS 상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전문가가 봐도 굉장한 위험을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고, 최소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원이든 누군가가 나서서 '이것은 위험한 상품이니까 당신이 충분히 이 상품에 대해서 알고,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자제하는 것이 좋다'라는 그런 시그널을 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입니다.

○**신동우 위원** 그렇게 된다면 금융 당국에서 개개 금융상품을 만들고 판매하는 행위 하나하나에 사전에 개입을 해야 한다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진술인 윤석현** 아니, 사전에 꼭 개입하는 것은 아니고요.

○**신동우 위원** 아니, 사전 등급을 한다는 얘기는 이것을 예를 들어서……

○**진술인 윤석현** 판매하기 전에……

○**신동우 위원** 판매하기 전에……

이것은 등급을 매겨 놨을 경우에 이제는 손해배상청구소송 대상자가 바뀔 수도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키코에 대한 위험성을 볼 때 어떤 사람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것은 명백하니까 쉽지만 사실 어마무사한 것이 꽤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3등급 정도로 본다, 아니다 2등급이다 할 수 있을 경우에 이것이 법적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지요. '왜 이것을 더 위험하다고 안 해 줬느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투자했다'라고 우리나라 정서에서는 당국을 붙들고 늘어지려고 하지 않겠어요?

○**진술인 윤석현** 그래서 저는 등급을 세분화하는 것보다는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 법체계가 자본시장법에서 예금성·저축성·투자성 상품에 대해서 두 가지로 뭔가 나누고 있는데 그 투자성 상품 중에서 여러 가지 복합상품, 파생상품이 들어와서 복잡해진다든지, 키코가 대표적인 예가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경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신동우 위원** 당국의 관여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진술인 윤석현**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신동우 위원** 알겠습니다.

○**진술인 윤석현** 왜냐하면 앞으로 계속 이런 상품들이 더 많아질 것이거든요.

○**신동우 위원** 예, 제가 시간이 좀 모자라서 그래요.

이은영 사무총장님께, 이제 봐서 분위기를 아시겠습니까라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입법조치를 하려는 것 느끼시지 않습니까?

분명히 도움이 되는 것은 쉬운데 이것이 장단점이 있을 때 항상 문제입니다. 지금 투자성 상품 판매장소 제한 문제, 이 문제를 업계에서는 한편 요구하기도 하고 또 왜 다른 모든 상품처럼 편하게 앉아서 서비스를 받아가면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느냐 이런 주장도 있어요.

그러나 또 한편에는 오히려 찾아가서 할 경우에 불완전판매가 더 조장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걱정이 되는데,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주십시오.

○**진술인 이은영** 저는 사실은 소비자보호법에서 중요한 것은 금융과 관련된 지식이 많지 않은 보호해야 될 소비자를 기본으로 두고 법을 제정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나름대로 투자도 잘하고 장소도 잘 찾아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내가 흔히 접할 수 있는 곳에 있기 때문에……

○**신동우 위원** 투자성 상품이라는 것은 돈을 가

지고 자기가 이문이 많이 나는 데를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약자라고 할 수만은 없단 말이지요. 장단점도 있지만……

○**진술인 이은영** 그런데 그 투자성을 반드시, 약자가 아닌 사람은 투자를 못 하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노후대책이라든지 뭘 위해서 내가 있는 조그마한 금액 가지고도 투자를 하는 사람, 투자성 상품에 내가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신동우 위원** 그러면 판매장소는 영업소에 한정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하세요?

○**진술인 이은영** 판매장소는 지금 현재로서는 영업소에 한정하는 것이 저는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신동우 위원** 알겠습니다.

한충섭 부사장님, 지금 고의·과실 입증책임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거의 다 나왔어요. 그렇지요?

○**진술인 한충섭** 예.

○**신동우 위원** 이제 분명히 녹음도 해야 되고 이런 문제도 나오기는 하는데, 어떠세요? 이것을 법규화할 때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니까 현장 경험이 많으신 것 같아서, 의견 좀 주십시오.

○**진술인 한충섭** 저희 보험 같은 경우는 사실 주로 직접 설계사들이 고객을 찾아가서 계약을 체결하는 판매방식이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것을 다 녹취를 한다거나 나중에 어떤 귀책사유에 대해서 책임 규명을 할 때 입증할 수 있는 자료에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다만 앞서 우리 제정안에도 금융회사 자료 보관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을 감안해 보면 금융기관 쪽에서 이런 부분들을 입증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더 여러 가지 면에서 맞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신동우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식** 고맙습니다.

다음은 유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동 위원** 말씀 잘 들었고,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야기들을 많이 해 주셔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두 가지를 여쭙 볼 텐데, 한 분

한 분께 제가 여쭙 보려고 해요.

이창원 진술인, 지금 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취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술인 이창원 저는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의동 위원 그러면 그 금융소비자법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지금 주신 의견을 보면 거의 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계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취지에는 공감하는데 주요 사안들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시는 것은 좀 모순된 것 아닌가요?

○진술인 이창원 일단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금융상품이라는 게 투자성 상품, 보장성 상품부터 해 가지고 대출, 예금형 상품 여러 개 있는데 그 상품 간의 차이에 따른 어떤 차별적 취급 이 부분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적절하게 안 된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실은 소비자보호가 중요하지만 금융기관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또 소비자를 과도하게 보호하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의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술인 이창원 그 부분에 대한 밸런스를 찾아내자라는……

○유의동 위원 그러면 진술인께서 생각하시기에 는 역대의, 대한민국의 금융이 지금 현재에 오는 과정에서 소비자가 보호를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 업계가 보호를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진술인 이창원 현재 상태에서는 굉장히 소비자보호 쪽으로 지금 다 가고 있고요.

○유의동 위원 아니, 현재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진술인 이창원 계속적으로 소비자보호가 강화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의동 위원 아니, 제 말씀은 지금 대한민국 건국 이래 은행업이 들어와서 여태까지, 금융업들을 영위하는 동안에 평균적으로 봤을 때 여태까지의 무게 중심이 그 업계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는 이런 반동이 나온 것 아니겠어요? 그런 생각 안 하시나요?

○진술인 이창원 금융소비자 보호는 지금 한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글로벌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유럽도 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유의동 위원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업계가 피해자라고 말씀, 업계의 그 규제가 과중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조금 과한 부분 아닌가요? 어떠신가요?

○진술인 이창원 아니, 제 취지는 적절한 규제는 필요하고요, 적절한 보호가 필요한 거고. 우리가 과도한 규제나 과도한 보호는……

○유의동 위원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왜 여쭙 봤냐면 전반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들을 하시는데 각론에 대해서는 각 업계가 다 반대를 하세요.

그런데 이은영 진술인 나와 계시지만 지금 우리가 이 공청회를 하는 과정에서 업계를 대표해서 나오신 진술인들은 아주 조목조목 현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은영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포괄적으로, 각론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하시는 이유가 이 금융 현안에 대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전문성도 없을 뿐더러 구체적인 지식을 갖고 계시지 못하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는 거고.

업계들은 그 현장 안에서 일종의 폭넓은 의미의 과점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소비자들이 그러한 것을 구체적으로 뭘 딱 지목을 하지는 못하지만 막연하게나마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거고, 그런 생각들이 모여서 오늘 이 공청회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업계에서도 안 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소비자들의 그 요구를 어떤 방식으로 해소해 주실까에 대한 고민들은 차제에 근본적으로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술인 이창원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유의동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보시면 은행도 그렇고 보험업도 그렇고 ‘이것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저것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진짜로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는 업계에 치명적인 건지, 아니면 이걸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위원장대리 김기식 예.

○유의동 위원 이걸로 인해서 다른 나비효과가 일어날 것까지를 미리 염두에 두어서 지레 이런 것들의 방어선을 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식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상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직 위원 진술인들, 이 자리를 빛내 줘서 고맙습니다.

사고를 전환하면 간단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이스크림 하나 생산하면 국민 건강을 생각해서 온갖 규제와 의견을 다 들어 보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금융상품을 보면 보험회사가 상품설계를 해도 보험회사에 굉장히 유리하게 되고, 금융위원회는 산업발전을 위해서 허가를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소비자보호를 위해서 설립한 그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보호에 취약했지요.

그리고 키코, 저축은행 사태, LIG·동양증권 CP 사태, 우리은행 파이시티 개발 사건이 다 불완전판매라고 하지만 거기에는 또 사기성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일례를 들어 드릴게요, 키코는 제가 직접 경험한 거니까. 1100원, 1000원 보면서 900원 간다고 다 키코 상품 가입 권유를 했어요, 1300원 간다는 이야기는 안 하고. 그 손실이 커졌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거 헤지상품인데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우리는 이익을 내려고 스펙(SPAC) 투자를 하는 게 아닌데 왜 얘기했냐?’, 회사 CEO가 ‘아, 그렇게 도저히 900원만 가지고 위로 간다는 말을 안 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가입비가 얼마나, 헤지 비용이?’, 매출의 1%라고 그래요. ‘아니, 그러면 제조회사에서 매출의 1%면 원가에 넣으면 되는 거지. 큰 금액도 아닌데 해라’, 가입을 권유했어요.

그때 은행 판매에서 뭐라고 그런지 알아요? 계산이 복잡하다 이거예요. 또 한 달이 지났어요. 또 가입해라 했더니, 그때는 1%가 아니고 변동성이 커져 가지고 리스크가 사회문제가 되니까 3%다 이야기해요. 그거 가입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 키코라는 것은 수출하는 업체한테 파는 거예요.

그러면 가입을 안 하니까 수입할 때 달러를 원화로 환전 안 하고 갖고 있다가 그냥 결제하면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헤지되는데 와서 부추겨 가지고, 쭈셔 가지고 그 분란을

일으켜 가지고 태산엘시디부터 해서 수출하는 국가 대표 기업들은 다 죽어 났잖아요. 이게 불완전판매 앤드 사기성인 거지요.

제가 직접 당했지만 집단소송제나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없기 때문에, 큰 금액이지만 그 소송하고 하는 시간이 너무 아깝고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례를 볼 때 사전적으로 해결을 해 줘야지,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집단소송제 이거 사후적으로 하려면 복잡합니다.

그리고 지금 크라우드펀딩을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저는 찬성합니다. 왜냐? 은행에 넣어 놓으면 1% 금리뿐이 안 되는데, 대출형 같은 것은 8%를 주는데 거기 가입해야지요. 투자형은 내가 주식으로 갖고 있는 담보가 있는데, 기부형은 내가 특허를 주고 주식을 가질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투자한도로 제한하는 게 소비자를 보호하는 게 아니고 소득공제 제도를 활용하든지, 두 번째는 집단소송제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로 해 줘야 크라우드펀딩이 살아요. 그 중개하는 회사들의 건전성 감독과 이런 걸…… 그러니까 굉장히 이기적이지 않아요? 찬성하는 분은 괜찮는데, 아닌 사람은 유리한 것만 해 달라고 그리고.

규제를 풀어 주되 이런 것들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이 집단소송제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입니다. 이창원 진술인은 제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술인 이창원 자꾸 키코 말씀을 여러 위원분들께서 하셔 가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직 위원 짧게 해 주세요, 짧게.

○진술인 이창원 예, 키코 상품 판매와 관련해서는 현행법상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이 부분이 다 적용이 됩니다.

○이상직 위원 아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이야기 해 주세요, 키코에 대해 말하지 마시고. 그것은 내가 직접 겪은 사례를 말한 거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너무 이기적이지 않냐 그 질문했잖아요.

○진술인 이창원 키코와 관련해서 집단적 손해배상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직 위원 키코 말씀하지 마시고.

○진술인 이창원 아니요, 왜냐하면 같이 집단적 손해배상 소송제도에 대해서……



○**이상직 위원**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이예요, 긍정……

○**진술인 이창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드리려고요.

○**이상직 위원** 그러면 끝나고 말씀하세요.

윤석현 교수님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진술인 윤석현** 지금 저희는 금융산업의 신뢰를 높여야 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금융기관도 지금 어렵습니다. 수익성도 내려가고 그런 문제는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소비자들에게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집단소송도 저는 찬성이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하는 것도 찬성이고, 그런 방향으로 감으로써,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꼭 그 금융기관을 벌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찬성입니다.

○**이상직 위원** 그러면 그 전에, 이종걸 의원님도 내고 했는데 이게 바로 가기 전에 피해보상계획 제출이나 손해배상명령제도 같은 그런 범퍼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기에서 그게 시행이 안 되면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으로 간다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술인 윤석현** 그게 영국에서 들어온, 영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도이고요. 그것은 금융소비자보호원이나 이런 감독기구에서 할 일이겠지만 금융기관들한테 어떤 시정명령 같은 것을, 그러니까 교정명령을 자기네들이 만들어 내게 함으로써 그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그 사람들의 정보를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것은 그런 식으로 해서 거르는 것이 맞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문제가 사후적으로 터졌다 그러면 집단소송이라든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라든지 그런 식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장치를 갖추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상직 위원** 이창원 진술인한테 발언 기회를 드리겠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하도급법에 있는 납품단가 후려치면, 본인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입법 발의한 사람입니다, 국회에 오자마자. 그것 때문에 국회에 들어온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키코 같은 것은 제가 직접 당한 거예요. 그렇지만 소송을 안 한 사람의 입장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나 집단소송제가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 그러면 사전적 예방이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경험한 걸 사례로 들은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피해보상계획, 손해배상명령제도를 범퍼로 두는 것에 대해서 곁들여 가지고 한번 말씀 주십시오.

○**진술인 이창원** 사실 키코는 환헤지 상품인데요. 거기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상의 적합성, 적정성, 설명의무가 다 적용되는 그런 상품이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사실은 기업들이 피해를 많이 봤는데, 많은 소송이 또 제기가 됐고요. 그런데 법원에서도 판단의 주요 쟁점은 적합성·적정성 원칙, 그러니까 설명의무에 관한 사항이었는데 전체적으로 키코 소송에서 기업들이 승소한 케이스는 약 10% 정도가 되고요. 그 10% 중에서도 실제 과실상계나 이런 것에 의해 가지고 손해를 회복한 비율은 10%에서 30% 남짓입니다. 그래서 전체 키코 사건에서 기업들이 이긴, 회복한 손해금액은 사실 1~2% 내외거든요.

이게 사실은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되기는 했지만 금융기관의 설명의무 위반이라든가 적정성·적합성 원칙 위반 사례는 극히 일부에 불과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키코 때문에 소비자보호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잘못 알려진 측면이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김기식 간사, 정우택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집단소송과 관련해서 생각을 해 보면 사실은 개별 키코 거래마다 적합성·적정성 그다음에 설명의무 부분은 그때그때 고객들을 상대로 판단을 해야 되고 그 결론이 사건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집단소송으로 해결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거고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나 집단소송제도가 소비자보호 측면에서는 효과가 있을 거다라는 것은 분명히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제도 시행과정에서의 어떤 부작용 그다음에 그 실효성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정우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새누리당의 이운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운룡 위원** 이운룡 위원입니다.

진술인들께서 진술해 주신 그러한 내용 잘 들

있고요. 또 위원님들과의 답변과정에서 여러 가지, 한 십여 가지 쟁점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것은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충 정리를 해 보면, 금융산업계 쪽에서는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거나 좀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계신 것 같고,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할 수도 있다. 실익이 별로다. 또 남소 등 부작용이 있다.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약간 반대 내지 신중한 입장인 것 같고요. 우리 학계하고 소비자단체에서는 소비자보호 측면에 더 중점을 뒀서 업계하고는 많은 부분에서 입장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저는 개별적인 그러한 사안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하는 게 아니고, 하여튼 이 입법의 필요성 부분에 중점을 뒀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보고자 합니다.

진술인들께서 모두 알고 있듯이 금융소비자보호법 논의가 시작된 게 2008년 키코 사태하고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등으로부터 논의가 있어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8대 말에 정부가 법안을 제출하고 또 18대에서는 처리를 못 해서 지금 19대에서 여러 의원님들도 내고 정부안도 있습니다마는 임기 1년을 앞두고 이제야 공청회를 하게 되는, 어찌 보면 정치권하고 정부의 책임이랄 수 있는 부분이 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런 법률 제정이 담보상태에 빠진 이유는, 오늘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해서만 진술을 하셨습니다마는 관련해서 또 논의되는 법 중의 하나는 금융위 설치법에 의해서 금소위 설치하는 문제가 있어요. 이 부분의 논쟁은 그 관할권을 어디에다가, 어느 기구체에 둘 것이냐 또 그 주도권을 누가 가질 것이냐라는 거버넌스 논쟁 때문에 지금 많이 진전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이 2개 법안의 논의가 병행이 되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 금소위 설립이라는 부분은 이게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아니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진술인들께서도 다들 공감을 하시리라 보고 봅니다.

오늘 여러 가지 쟁점사항들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금융상품의 등급분류 주체를 지정하는 문제라든가 집단소송제, 입증책임 전환 문제, 뭐 여러 가지 많이 입장 차가 있으니까 조율

이 필요하겠지요. 그렇지만 가장 시급한 것은 분쟁조정 과정에서 국민편익을 극대화하고 또 금융회사들의 소비자보호 강화라는 인식을 좀 제고시켜야 된다는 이러한 측면에서 아주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차원에서 지금 우리 소비자단체의 이은영 총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으로는 안 주셨지만 자료에는 많이 언급을 하셨어요, 맨 말미에 보니까요. 그래서 이은영 총장님의 입장을 제가 알겠고요.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 금융업계를 대표하고 계신 금투협회의 정은운 본부장님하고 학계를 대표하신 윤석현 교수님께서, 이 거버넌스 논쟁은 좀 나중 문제로 치고 필요한 기본법들부터, 먼저 제정할 수 있는 부분은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저는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두 분께서만 대표로 쥐 보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정은운** 저희들은 금융투자업계의 의견을 취합해서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지금 현재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증책임 전환이라든가 손해의 규정,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집단소송, 집단분쟁조정 이런 제도가 상당히…… 물론 소비자보호를 하기 위한 강력한 어떤 의지의 표현일 수 있으나 정상적인 어떤 민법이라든가 상법이라든가 이 체계 내에서 보면 업계에 굉장히 과도한 부담을 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금소법이 제정되면서, 지금 현재 있는 그런 기본적인 법체계의 틀 안에서 소비자보호법이 출범을 하고 그다음에 시간이 흐르면서 소비자보호를 강화할 필요성이 발생할 경우 그때 전체적으로 한 번씩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이 좀 듭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운룡 위원** 계속 보완해 나가는 방법이 타당하다고 보시고, 우리 교수님께서서는……

**○진술인 윤석현**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금융소비자 보호가 잘 작동하지 않았던 건 최소한도 여태까지는, 사실 우리나라의 위험을 따지고 보면 정부가 어떤 정책을 폈는데 결과물로 그 부담을 소비자들이 다 떠안는 그런 일들이 많았거든요. 카드 사태도 그랬고 그다음에 저축은행 사태도 그랬고 등등 그

런 경험들이 많아서 좀 독립적으로 감독 역할을 중간에서 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한쪽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감독체계의 문제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두 개가 같이 가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일 거고, 그렇게 해야 소비자보호가 제대로 작동을 할 거고, 그렇게 해야 금융산업이 발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운룡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우택 이운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경기 군포의 이학영 위원입니다.

오늘 죽 보면서 우리 업계에서는 전체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큰 방향에 대해서는 아직도 마음이 열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 느낌에. 그러나 현재 금융상황으로 봤을 때 그동안에는 공급자 위주의 금융환경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소비자 위주로 바뀔 때가 되었고 바뀌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실은 무조건 상품을 내놓으면 팔리는 시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소비자를 위해서가 아니고 금융업계를 위해서도 이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측면으로 가고 안전을 보호하는 측면으로 가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손해배상 관련 입증책임 전환의 문제 또 징벌적 손해배상제 문제, 집단소송제 문제도 전향적으로 이제 국회가 고려할 때가 되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다고 보고요. 업계에서도 가능하면 이번에 상당히 발전적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제정될 수 있도록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세세한 것 이창원 진술인에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대출상품에 대해서는 굳이 청약철회권을 줄 필요가 있느냐, 충분히 생각하고 대출을 받은 건데, 그런 이야기이신 거지요?

○진술인 이창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이게 시행이 되면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 실행을 청약철회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소비자 입장에서 는……

○이학영 위원 그러니까 7일 넘어서 현금을 준다는 이야기지요?

○진술인 이창원 예.

○이학영 위원 그러면 금융 당국으로부터 제재 같은 것은 없나요?

○진술인 이창원 그런 것은 제재사유는 아니지요.

○이학영 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소비자에게도 피해가 갈 거다, 돈이 급한 소비자에게?

○진술인 이창원 예, 그리고 실제 청약을 그렇게 철회하는 케이스도 거의 없고요.

○이학영 위원 물론 철회할 건수가 별로 없을 거라고 봅니다. 대출을 받는 사람이 충분히 기관도 선택하고 고려해 보고 비교해 보고 했을 텐데, 뭐 그런 것 없을 텐데 유일하게 걱정이 된다면 단 며칠이라도 막대한 금액을 빌려서 이용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좀 있으신 거지요?

○진술인 이창원 예.

○이학영 위원 그럴 경우에 여러 가지 그런 장치를 만들 수는 있는 거지요. 페널티를 준다랄지 그 며칠분에 대한 이자를 받는다랄지 그래서 그런 것은 충분히 금융권에서 방어막을 칠 수 있다고 보는데, 뭐 그런 정도로 하고, 그러나 열어 놓는 것은 어떤지 그런 제 개인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중도상환수수료 문제 오늘 이야기가 많이 되었는데요. 제가 자료조사를 해 보니까 지난해에도 7개 은행이 중도상환수수료 2825억 원을 거뒀어요. 금융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얼마든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바꾸고 싶은 사람이 바꾸는 과정에서 생긴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소비자 입장에서 이것은 상당히 막대한 지출이지요.

그리고 예를 들면 금융권에서도 이걸 중도에서 받으면 그 돈을 그냥 잠가 두는 게 아니고 또다시 대출을 할 수 있어서 수익을 얻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도상환수수료도 아까 전향적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지만 선택적으로 한다랄지, 이것도 소비자 피해 입장에서…… 사실은 금융환경이 변하면 소비자는 좋은 상품으로 갈아타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데 중도상환수수료 때문에 그걸 막는 것도 소비자로서는 부당하게 생각하는 측면이 있다 해서 이제는 전향적으로 이것도 개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불완전판매 계약 변경 이야기인데요. 이것 민법상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또 다른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느냐 이런 이야기인데, 동양 사태나 우리은행 파시티 건을 우리

가 봤잖아요. 그때 거의 예금처럼 설명을 해요. 그리고 그것이 투자상품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랬을 경우에 억울하단 말입니다. 나중에 이걸 민법으로 해서 네가 손해배상 청구해서 가져가라 하면 이것은 정말 개개인의 소비자 입장에서는 까마득한 일이지요. 소송을 통해서 이걸……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확실하게 녹음이 되어 있고 하면, 그런 분들은 구제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배현기 진술인께서 원금보장형은 굳이 등급제가 필요하나, 원금 주면 되는 건데? 그런데 뒤집어서 은행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확실히 좋은 상품이다 하고 그런 등급제로 해 놓으면 오히려 판매 확장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려하면 될 텐데, 이창원 진술인과 배현기 진술인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 번 이야기를 좀 해 주시지요.

**○진술인 배현기**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리스크 성향이, 그러니까 금융교육이 일차적으로 전제되기는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고수익은 고위험을 동반하고 그다음에 수익이 낮을수록 위험도 낮아지고, 그게 사실은 스펙트럼으로 죽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금융소비자의 성향, 수요에 따라서, 니드(need)에 따라서 달리 적용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일률적으로 내가 판단해서, 물론 당연히 적합성·적정성을 따져야 되겠지만 일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금융소비자의 니드(need) 그다음에 투자성향, 위험에 대한 회피 정도 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시장의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당국이 나서거나 법으로 사전적으로 제한하거나 하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을 상당히 침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진술인 이창원** 지금 투자성 상품에 대한 투자등급 이 부분은 금융투자협회에서 자율적으로 다 등급을 매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감독 당국에서 신청을 받아서 신상품 출시 전에 등급을 매기는 그런 제도가 시행된다면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심의절차가 상당히 지연되면서 상품 출시나 이런 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감독 당국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정한 투자등급 이게 나중에 철폐를 받게 되면 책임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신속하게 이 투자등급을 결정해 주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다 금융업에 어떤 지장이 초래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래서 저는 현재처럼 권고사항으로 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정우택** 이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도론을 마쳤습니다.

우리 이상직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이상직 위원** 예.

**○위원장 정우택** 간단하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직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직 위원** 전주 완산율의 이상직입니다.

두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는 불공정 영업행위로 금지하는 법을 냈는데요.

이창원 진술인에게 묻겠습니다.

이 조항이 법제화되면 여신 심사기준을 강화하거나 신용이 낮은 차주의 대출 위축이 우려된다고 하셨지요?

**○진술인 이창원** 예.

**○이상직 위원** 선진 금융회사에도 이렇게 연대보증제도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진술인 이창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사를 한 바는 없어서 잘 모르겠고요. 연대보증제도는 기본적으로 개인 차주에 대해서는 이미 철폐가 되었고 기업에 대해서만 남아 있고요.

**○이상직 위원** 자, 그러면 그 사례를 법안심사 소위 할 때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요. 연대보증요구를 금지할 경우에 경영자 또는 사주의 도덕적 해이를 우려했잖아요?

**○진술인 이창원** 예.

**○이상직 위원** 그런데 이 문제는 형법상 횡령·배임으로 처벌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선진금융으로 가려면 신용정보를 활용한 신용의 건전화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리스크를 너무 제로화하고 리턴(return)은 최대화하려는 좀 이기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한층셋 진술인에게 묻겠습니다.

소액분쟁 사건이 되게 되면 분쟁조정 종료 전까지 소송 제기를 금지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특히 보험사가 심합니다. 뭐냐 하면 보험금을 주지 않거나 적게 주려고요.

공연 중 미끄러져서 허리를 다쳤는데 경찰에 사기 미수로 수사 의뢰했고, KBS요. 장애보험금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하게 해서, 둔갑을 했어요. 그리고 암이 아니라 경계성 종양이라고 소송을 했어요. 그리고 식당에서 화재가 났는데 방화라며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고, 다 이거 패소한 겁니다.

보험 사기를 막는 게 아니고 보험소송이 힘든 금융소비자한테 역으로 힘들게 해 가지고 보험금을 적게 하려는 것 같은데 견해는 어떻습니까?

○**진술인 한충섭** 아, 견해요?

○**이상직 위원** 예, 견해요. 이런 사례도, 그러니까 악용되고 있는데 소액분쟁 사건의 특례를 두어야 된다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요.

○**진술인 한충섭** 그런 소송에 대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관행이 맞고요. 다만 보험사들이 소송하는 경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시다만 보험금 지급 사례가 다른 계약자들의 어떤 보험금 지급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상직 위원** 그런 측면에서 원래 취지는 그런데 지금 너무 악용돼 가지고……

○**진술인 한충섭**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못된 관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직 위원** 그렇지요?

○**진술인 한충섭** 예.

○**이상직 위원** 배현기 진술인에게 묻겠습니다.

앞서 봤던 분쟁이 가장 많은 보험금 분쟁이고, 일반적으로 금액이 500만 원 이내로 한정할 경우에 좀 실효성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은행 파이스티개발 PF 같은 경우는 1인당 한 1억 3000만 원 불공정판매를 당한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는 사기라고 말하는데, 금액이 한 2000만 원 정도 이하는 윤석현 교수님도 말하고 의원님들이 발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진술인 배현기** 금액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제가 조사해 보지 않아서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한데요.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케이스별로 따져서, 저는 500이다 1000이다 2000이다 해서 특정한 견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 적정성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상직 위원** 윤석현 교수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진술인 윤석현** 어느 정도는 금액이 돼야 그것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서, 보니까 그거보다 더 큰 금액을 말씀하시는 위원님도 있었고 500 말씀하신 위원님도 있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간 정도가 적절하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상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택** 이상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상으로 모든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공청회를 통해서 여섯 분의 진술인들로부터 좋은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진술인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들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관련 법률안을 심사하는 데 많은 참고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여섯 분의 진술인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우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회의에서는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한 후 소관기관의 업무현황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 의사일정 상정의 건

○**위원장 정우택** 상정에 앞서 의사일정 제17항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지 15일이 경과되지 않았으나 국회법에 따라 교섭단체 간사 위원과의 협의를 거쳐 오늘 상정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

의원 대표발의)(신학용·이찬열·이상직·김기준·장하나·박민수·이개호·정성호·이에리사·이춘석 의원 발의)

- 3.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정호준 의원 대표발의)(정호준·장병완·강기정·김영환·김영록·추미애·이원욱·배재정·김윤덕·이개호 의원 발의)
- 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김상훈·강석호·박명재·이우현·이종진·이완영·정희수·손인춘·전하진·주호영 의원 발의)
- 5.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김상훈·강석호·박명재·이우현·이종진·이완영·정희수·손인춘·전하진·주호영·홍지만 의원 발의)
- 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김상훈·강석호·박명재·이우현·이종진·이완영·정희수·손인춘·전하진·주호영·홍지만 의원 발의)
- 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 의원 대표발의)(강기정·신기남·주승용·이상직·진선미·정호준·김기식·김영주·민병두·김현·한명숙 의원 발의)
- 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준 의원 대표발의)(김기준·김현미·이개호·한명숙·이학영·이해찬·민병두·전순옥·이원욱·박민수·박영선·송호창 의원 발의)
- 9.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 의원 대표발의)(박민수·이개호·진성준·김우남·부좌현·박남춘·유대운·홍문표·이춘석·민홍철 의원 발의)
- 10.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환 의원 대표발의)(김태환·정희수·강석호·심학봉·김태원·정수성·이철우·김명연·김경협·박대동·김재경·이운룡 의원 발의)
- 1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 의원 대표발의)(박민수·이개호·진성준·김우남·부좌현·박남춘·유대운·홍문표·이춘석·민홍철 의원 발의)
- 12.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 의원 대표발의)(박민수·이개호·진성

- 준·김우남·부좌현·박남춘·유대운·김기준·홍문표·이춘석 의원 발의)
- 13.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 의원 대표발의)(부좌현·이개호·이상직·박남춘·박민수·이원욱·김관영·이찬열·김광진·노영민 의원 발의)
- 1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이명수·황인자·김희선·권성동·홍철호·홍지만·이철우·이재영·문대성 의원 발의)
- 15.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 의원 대표발의)(박민수·이개호·김우남·강창일·신경민·부좌현·박남춘·이춘석·이종배·양승조 의원 발의)
- 16.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이상직·이개호·장병완·김우남·박민수·박남춘·정성호·조정식·김승남·임수경 의원 발의)
- 17.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명숙 의원 대표발의)(한명숙·배재정·백재현·최민희·신경민·이종걸·이미경·민병두·전순옥·김상희·이개호·진선미·민홍철 의원 발의)
- 18.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이종걸·신정훈·추미애·김영록·장병완·유인태·조정식·강창일·김관영·백재현·김성곤·신경민·문병호 의원 발의)
- 19.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운룡 의원 대표발의)(이운룡·정갑윤·유의동·김태환·홍지만·정문헌·정희수·이주영·이한성·김태원·박대동 의원 발의)
- 2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창식 의원 대표발의)(박창식·이우현·이진복·양창영·김을동·염동열·최봉홍·박성호·정병국·권성동 의원 발의)

○위원장 정우택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20항까지 총 19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발의하신 의원님들의 요청에 따라 단말기 회의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19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 19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감사합니다.

다음은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특별히 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체토론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20항까지 이상 19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안심사를 위해 출석하신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과 임종룡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장내를 정돈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21. 업무현황보고(계속)

### 가. 국무조정실

#### 나. 국무총리비서실

#### 다. 국민권익위원회

#### 라. 국가보훈처

(14시10분)

○**위원장 정우택** 의사일정 제21항 업무현황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기관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입니다. 관련하여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배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보고기관의 인사말씀만 듣고 업무보고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추경호입니다.

존경하는 정우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무조정실의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무조정실은 각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지휘·감독, 정책조정 및 사회위험·갈등 관리, 정부업무평가 및 규제개혁에 관하여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이완구 국무총리 취임 이후 경제활성화, 소통, 공직기강 확립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각 부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주요 정책을 조정·조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의 주요 업무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신할까요, 아니면 간략히 말씀을 좀 드릴까요?

○**위원장 정우택** 그냥 서면으로 대체하고 꼭 하실 말씀만 하시고요, 인사말씀 내용에 있는 것 중에서.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그러면 개략적으로, 간략히 정리한 것이니까 저희들 전체 업무 흐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출범 이후 현재 140개 국정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국무조정실에서는 국민의 시각에서 현장 중심으로 국정과제를 점검·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우리 경제·사회 전반의 체질 개선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경제혁신, 4대 구조개혁, 통일준비 등 24개 핵심 개혁과제를 선정하여 역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정과제와 핵심 개혁과제에 대해서는 현장 중심, 성과 중심으로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개선·보완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정현안 및 갈등관리입니다.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 국가정책조정회의 그리고 각종 위원회 등 국정협의체 등을 통해서 대책을 마련·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복지재정 효율화, 공공기관 개혁,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평창동계올림픽 지원 등과 관련한 대책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 운영을 통해서 정책 협의 및 조정 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수시로 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관계부처와 함께 주요 국정 이슈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갈등현안에 대해서도 이해당사자와 소통을 강화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현장 중심의 갈등 해소에 앞으로 역점을 두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 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투자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건의한 규제기요틴 과제는 금년 상반기 중 개선 완료를 목표로 정비 중에 있으며, 지난 3월 중에는 7개 경제단체와의 규제개혁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발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자리 창출,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나가되 국민의 생명, 안전에 직결된 규제는 강화하거나 합리화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대국민 홍보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잘못된 관행과 적폐를 해소하고 기본이 바로 선 국가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 있어서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ODA 사업이 통일적·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종시가 자족도시로서 도시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지식산업센터 건립 등을 통해 투자 유치 및 도시브랜드 마케팅을 지원하고 무선충전 전기버스 도입을 포함한 대중교통망 확충, 교육환경 개선 등 정주여건의 질적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조세심판업무를 통해 국세와 지방세에 관한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납세자의 권익을 구제하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공직사회의 기강해이, 공직비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고 정책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공직윤리 및 기강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점에서 공직기강 확립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복무 점검을 강화하는 등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성실하게 헌신적으로 일하는 우수 공무원에 대한 우대 등 공직 활력 대책도 마련함으로써 공무원이 복지부동, 소극적 업무 태도를 탈피하고 성과 중심의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과거부터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부정부패 척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공, 민생, 금융·경제 등 3대 분야에서 관련 법 집행기관들이 방산비리 등 우선과제에 대해 집중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부패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과 자정운동도 강화해 나가자 합니다.

다음, 세월호 사고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월호 피해구제 및 지원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배상및보상심의위원회와 피해자지원및희생자추모위원회를 통해 차질 없는 배·보상금 지급과 추모사업을 진행하는 등 정부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광복 70년인 올해를 다양한 기념사업과 남북 공동행사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국민화합과 통일기반 마련의 계기로 만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민관 합동 광복70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현재 각 부처 및 국민 제안 등을 통해 광복 70년 기념사업을 선정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기념사업을 확정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여 광복 70년이 전 국민과 함께하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의 업무를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국무조정실은 국정 운영의 총괄 부처라는 사명감을 갖고 책임 있는 자세로 각 부처를 지원하고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무조정실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성실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국무조정실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윤식 국무1차장입니다.

조정규 국무2차장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총리께서 세월호 피해자 가족대표 면담을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석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양해드립니다.

심오택 국정운영실장입니다.

이철우 정부업무평가실장입니다.

강영철 규제조정실장입니다.

이런주 경제조정실장입니다.

최병환 사회조정실장도 세월호 피해자 가족 면담 배석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배성범 부패척결추진단 부단장입니다.

김효명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장입니다.

김형돈 조세심판원장입니다.

(간부 인사)

감사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민호 국무총리비서실장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비서실장 최민호 국무총리비서실장 최민호입니다.

국무총리비서실장으로 임명받은 후 오늘 처음으로 존경하는 정우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경제활성화와 규제개혁, 공직기강 확립 등 국가적 과제를 시급히 추진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국무총리비서실장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국무총리께서 당면한 국가적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좌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국무총리비서실의 주요 업무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무총리의 정치권 소통을 강화하고 국회 활동을 적극 보좌토록 하겠습니다.

당정협의 활성화, 정책설명 확대 등을 통해 국정 운영에 대한 신뢰와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 주요 법안들이 국회에서 원만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정당 및 국회 협력활동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정책현장은 물론 시민사회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정부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민생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

렴하고 시민사회단체와의 다양한 협력채널을 통해 국무총리의 소통과 화합 행보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국무총리의 국정활동 홍보와 언론계와의 소통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국무총리의 국정활동을 다양한 형식으로 국민들께 알리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홍보 방안을 마련하여 실천하겠습니다. 아울러 언론 등에서 제기하는 주요 현안 이슈 등에 대해서도 이를 적극 검토하여 국무총리의 국정활동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국무총리 비서실의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정우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조언과 고견은 앞으로 업무 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무총리비서실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희락 정무실장입니다.

이태용 민정실장입니다.

박정현 공보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우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보 국민권익위원장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장 이정보 존경하는 정우택 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국민권익 증진과 국가 발전을 위해 연일 국정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바로 권익위원회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수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입니다.

곽진영 부패방지 부위원장입니다.

홍성철 행정심판 부위원장입니다.

이충호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박계옥 권익개선정책국장입니다.

곽형석 부패방지국장입니다.

황해봉 행정심판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 업무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위원회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우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끝으로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입니다.

평소 보훈업무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정우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들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완근 차장은 오늘 오후에 재향군인회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했습니다.

다음 민병원 기획조정관입니다.

이병구 보상정책국장입니다.

이경근 보훈선양국장입니다.

신영교 복지증진국장입니다.

박종왕 제대군인국장입니다.

이성춘 보훈심사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우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마는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지난 3월 3일 날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고서는 우리 위원회가 처음 열리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무위원회에서 1년 6개월 동안 여섯 차례의 법안소위를 비롯해서 공청회, 간담회 등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서 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연고주의 또는 온정주의에 따른 고질적인 부정청탁 또는 금품수수의 관행을 막기 위한 시대를 앞서 가는 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직은 물론 각 부문에 걸쳐서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를 없애고 청렴하고 투명하게 만드는 계기의 첫발을 디딘 것입니다.

우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런 김영란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과 교육·홍보에 힘써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또한 현재 김영란법에 빠져 있는 이해충돌방지조항도 여야 위원님들의 신중한 검토와 합의를 통해서 더 이상 논란이 없는 완성된 법안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의 강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정 위원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KBS에서 과거 공안조작 사건에 가담한 사람들이 정부 훈장을 받았다는 보도가 어제 있었는데 혹시 보고 받으셨습니까?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어제 제가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강기정 위원 지난 2월 임시회 때 제가 80년 국보위 활동 때 보국훈장을 받으신 분, 우리 이완구 총리를 비롯해서 이분들이 97년 대법원 확정판결로 국보위 활동에 문제가 있었다는 게 증명되어서 상훈법에 따라 취소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던 것 기억하시지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강기정 위원 그것 행자부랑 검토를 좀 해 보셨던가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아마 국보위 활동 그 자체에, 아시다시피 이것에 따라서 서훈 문제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에 관해서는 아마 행자부에서 아직 구체적인 확정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서훈 공적에 관해서 문제를 삼을 수 있는지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기정 위원 그러니까 그때 임시회 때 행정자치부의 의견을 구한다고 했어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강기정 위원 그다음에 이완구 총리께서도 반납도 신중히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하셨고, 청문회 때.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강기정 위원 그래서 실장님께서 이것을 행정자치부의 의견도 좀 들어 보시고 조정을 적극적으로 하시고 총리의 입장도 좀 듣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기정 위원** 국가기념일 관련 질의인데요.

5·18이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오는데 최근에 4·3 관련해서, 4·3 기념일 때 늘 불렀던 노래가, ‘잠들지 않는 남도’라는 노래를 늘 그 기념식에서 부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또 노래를 바꿨어요, ‘비목’. 그런데 저도 기억하는데 ‘잠들지 않는 남도’를 오랫동안 불렀는데 ‘비목’으로 바뀌고, 또 5·18 관련해서는 기념식장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다가 그것을 못 부르게 하고 이제 ‘방아타령’을 부르니 어찌니…… 정부 하는 일이 참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잠들지 않는 남도’ 또는 ‘임을 위한 행진곡’이 금지곡입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금지곡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기정 위원** 우리 총리님께서 원내대표로 계실 때, 국회에 계실 때도 적극적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에 대해서 제창하도록 하고 기념곡 지정을 받도록 한다고 그랬고, 또 지난 8일 날 유승민 대표도 5·18을 언급하고 ‘역사의 고비마다 상처를 받은 사람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내밀어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한 달 남은 5·18 때 기념식장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이 제창될 수 있도록 우리 총리님께 다시 한 번 환기시키시고,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위원님 말씀을 총리님께 전하겠습니다.

○**강기정 위원** 세월호 1주년이 내일모레로 다가오는데 시행령 문제 때문에, 지금 ‘시행령이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그러고 있지요? 정부 입장은 뭐니까?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오늘도 그 문제 등을 포함해서 세월호 피해자 대표분들하고 오늘 총리 면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부 지금 문제 제기되는 부분에 관해서 총리께서도 오늘 경청을 하실 거고요. 아마 일정 부분 거기에 대해서 진지한 검토, 고민을 하시고 오늘 말씀이 계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기정 위원** 4월 16일 날 세월호 관련해서 안전다짐대회를 광역자치단체장하고 정부하고 유관기관 관계자가 할 계획입니까?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현재 안전처에서 일부 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강기정 위원** 그러면 세월호 추념식, 뭐 이런

세월호와 관련된 다른 정부의 식은 존재하지 않습니까?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거기를 통해서 일부 소화하는 부분 등을 포함해서 현재 안전처에서 행사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현재 팽목, 진도 그다음에 안산, 인천에서 또 나름대로 추모식이 기획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부분이든지, 현재 정부가 예산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가 어떤 식이든지 추도의 뜻을 표하는 방법을 가지고 같지에 대해서 현재 여러 가지 형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강기정 위원** 내일모레인데 아직도 입장이 없다는 뜻이지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여러 가지 형태로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강기정 위원** 그러니까 추도는 할 생각이 없고 이 안전다짐대회와 같은 형태로 좀 변형을 시켜서 면피를 하겠다는 정부 생각 아닌가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안전의 날 안전 다짐의 행사는 별도로 기획을 하더라도 추모행사에 정부 주요 인사들이 어떤 식으로든지 추모의 뜻을 전하는 방법은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기정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오전에도 언급 관련해서 이근면 처장한테 이야기했는데 정부가 연금을 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야당이 발바닥에 불이 나도록 뛰고 있는데 정부는 헛짓거리만 하고 있고 안 해도 될 이상한 이야기를, 해야 될 이야기를 안 하고 안 해도 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실장께서 총리에게 보고해서요, 이근면 처장을 자르든지 일을 제대로 똑바로 하시라고 그러세요.

제가 뭐 긴 이야기는 안 드릴 건데 정부가 좀 도와줘야 연금개혁을 할 것 아닙니까? 정부가 해야 할 일을 국회에서 하면 국회를 좀 도와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재정추계 허위로 브리핑하고, 오늘 특위 있는데 어제 그냥 쪽 뿌려서 당사자들 자극시키고 야당 물먹이고 뭐 여당도 물먹이고 국회도 물먹이고, 정부가 뭘 하는지…… 저는 정부에 계신 분도 공무원이어서 정부의 고위직 공무원들 포함해서 연금개혁이 안 되도록 하는 의도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구심이 있습니다. 좀 챙겨 보세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연금개혁에 대한 우

리 위원님의 의지나 우려사항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인사처에 얘기를 전하고 무리 없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택 강기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새누리당의 박대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대동 위원 수고들 많으십니다.

울산 북구의 박대동 위원입니다.

총리실에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2015년을 목표로 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박대동 위원 지난 한 3년간 7만 명 이상이 무기계약직 형태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어떻든 그렇게 고용안정을 취해 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하시는 건 좋은데 근로조건을 보니까 현재 임금은 저 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정규직의 한 64% 정도에 불과하고 비정규직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고용의 안정은 이루어 가는데 근로조건 개선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단 말이지요. 이게 계속되면 무기계약직이라는 또 다른 형태의 열악한 직군이 생기는, 사회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부의 재정상황이나 그런 점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건전재정 유지와 사회 양극화 개선의 차원에서 이 두 가지를 잘 조화롭게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렇게 좀 노력하시겠어요?

(정우택 위원장, 김용태 간사와 사회교대)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유념하겠습니다.

○박대동 위원 제가 아까 소개드린 대로 울산인데 지금 지방에 11개의 지방중소기업청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그야말로 우리 경제의 뿌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중요하고 내수시장 진작을 위해서 고용, 일자리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도 굉장히 활성화시켜 가야 할 업종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울산의 경우에는 현재 부산·울산중기청이라고 해 가지고 울산사무소 형태로 한 11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울산에 중소기업이 전체 1571개에 6대 광역시 중에 출하량은 1위,

부가가치는 공동 2위입니다.

그런데 부산은 유통·경공업 중심이고, 울산은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중화학공업 중심이거든요. 말하자면 특성이 좀 다릅니다. 따라서 지역산업의 특성에 맞는 행정서비스 제공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지 않나 하는 지역의 걱정들과 함께 별도의 중소기업청을 울산에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를 아마 국무조정실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기본적으로 제출된 내용은 제가 보고를 아직 못 받고 있습니다.

○박대동 위원 얼마 전에 울산 지방 상공인들이 울산지방중소기업청을 설치해 달라고, 지금 6대 광역시 중에 울산만 없거든요. 따라서 맞춤형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키워 갈 수 있도록 울산 지방중소기업청 설립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좀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기본적으로 지역별 그리고 업종 특성에 맞춰 가지고 맞춤형으로 중소기업 정책을 기안을, 수립을 해야 되고 집행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 해법과 관련해서 울산에 지방중소기업청을 별도로 설치해서 시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에 관해서는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대동 위원 예, 감사합니다.

보훈처장님, 저희 지역에 위탁병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병원이 종합병원으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수가, 진료비로 인한 정부의 부담이 가중되다 보니까…… 그건 현재 규정상 원칙적으로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그렇습니다.

○박대동 위원 그리고 처장이 인정하는 특수한 경우에는 인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엽제라든지 또 상이군경 단체라든지 당장 치료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당장 치료를 못 받으니까 그런 민원이 있어서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거제의 경우에도 옛날에 고연에 있던 병원이 하나 문을 닫고 난 뒤에 계속 18개월 동안 어디 입찰하는 데가 없어서 제대로 못 되다가 나중에 특수하게 종합병원을 위탁해 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그렇습니다.

○**박대동 위원** 만약에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이분들의 보훈치료를 제대로 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함과 동시에 만약에 거기에 적합한 병원이 없을 경우에, 계속 입찰이 안 되든지 이런 경우에는 거제시의 예에 따라서 종합병원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음주부터 위탁병원에 대한 공개모집을 하는데 그 공개모집의 절차를 봐 가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도 충분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대동 위원** 잘 아시는 것처럼 이분들이 지금 다 연세가 드신 분들이예요. 멀리 다니시기도 어렵습니다. 규정은 지키는 것이 옳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편의나 우리가 정말로 그분들에 대한 감사의, 보훈의 차원에서라도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알겠습니다. 참전 유공자분들 진료는 이 병원이 위탁병원으로 지정될 때까지는 이상 없이 치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고, 재지정 문제는 저희들이 절차를 봐 가면서 검토하겠습니다.

○**박대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용태** 수고하셨습니다.

민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두 위원** 어저께 성완중 전 국회의원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습니다. 제 맞은편 자리에서 오랫동안 상임위 활동을 같이 하신 분인데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일을 통해서 우선 성완중 전 국회의원에서 묻고자 한 진실 이것을 우리가 무겁게 받아들이고 파헤쳐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아울러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때 검찰수사 관행, 일종의 청부수사라고 하지요. 하청수사의 무리한 관행은 없는지 또 되짚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차제에 자원외교 비리에 대한 수사가 이 일로 인해서 멈춰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완구 국무총리, 성완중 국회의원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어떤 상황이지요?

비서실장이 답할 수 있나요, 조정실장이 답할 수 있나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지금 특별히 말씀을 하시거나 그러지 않고 국정을 챙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민병두 위원** 오늘 이른바 성완중 리스트라고 하는 것이 공개가 됐습니다. 여권의 3대 비서실장 이름이 다 나오고요, 장관 도지사…… 액수까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완구 국무총리는 액수는 표기되어 있지 않지만 이완구 국무총리의 이름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진실을 공개하지 않고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한 국무총리, 도덕적 권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또 국무총리실도 관계부처 회의를 주재하기 위해서는 진실을 공개해야 합니다.

국무총리가 우선 성완중 국회의원과 과거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 혹은 과거 원내대표 시절에 이런저런 재판과 관련된 어떠한 접촉이 있었는지 등등에 대해서 우선 저는 국무총리가 진상을 모두 공개하고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게끔 그동안의 어떤 통화기록 같은 것도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의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위원님, 저희들도 오후에 이 자리에 참석하기 위해서 국회에 도착하고 난 이후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마는 그 부분에 관해서는 현재 검찰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필요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제가 직접 확인을 하지는 못하겠습니다. 마는 이름 석 자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다른 이야기로 지금 미리 상상력을 우리가 선불리 발휘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 일반인들의 입장에서 조금 신중하게 가야 되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아마 얼마든지……

○**민병두 위원** 그러니까 그런 상상력으로 발전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총리가 필요하다면 ‘나는 이렇다’, ‘나는 과거에 성완중 국회의원과 같은 충청권에 있었지만 어떤 접촉이 있었다, 없었다’ 혹은 ‘원내대표 시절에 이런저런 일과 관련해서 접촉이 있었다, 없었다’를 스스로 먼저 공개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 거기에 거명됐던 사람들은 마치 통으로 2007년 경선 때는 나는 뭐 전혀 몰랐다…… 그런데 2007년 경선과 관련해서 거명된 사람은 둘이지요, 비서실장 둘. 그래서 결국 권력

을 잡은 다음에 초대·2대 비서실장이 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까지 문고리권력에 이어서 금고권력의 실체가 드러난 것이다라고 국민들은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완구 총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실을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의 상상력이 더 발전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또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갖다가 전면에서 지휘하기 위해서는 총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국민한테 자신이 있으면 공개를 해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위원님, 이름 석 자가 단순히 메모지에서 나왔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로 번져서 얘기하는 것은 지금이 시점에서 과연 적절한지 좀 생각을 해야……

**○민병두 위원** 아니, 조정실장은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뭐 총리하고 상의해 보겠다……

지금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시간 좀 더 썩시다.

**○위원장대리 김용태** 예.

**○민병두 위원** 일반인의 상상력이 발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또 제가 지적한 대로 부정부패와의 전쟁은 멈춰져서는 안 되지요. 계속되기 위해서라도 내가 총리를 뽑고 이런저런 건의를 해 보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뭐 그런 식으로 지금 대답하는 게 전혀 진지한 자세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말씀하신 부분에 관해서는 그런 걱정을 하신다 하는 말씀은 제가 전하겠습니다.

**○민병두 위원** 국민권익위원장님, 일반적으로 경선자금과 관련해서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면 공소시효가 7년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뇌물죄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 결과로서 비서실장이 된 거라고 한다면, 뇌물죄라고 한다면 공소시효가 연장이 되지요?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그렇습니다.

**○민병두 위원** 10년이지요? 10년 맞습니까?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금액에 따라서는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민병두 위원** 금액이 만약에 7억 정도면 10년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까?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지금 법전을 보지는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마는.

**○민병두 위원** 예, 알았습니다.

시간 좀 더 안 주냐? 주제가 달라서……

**○위원장대리 김용태** 예, 그러세요. 그러면 1분 더 쓰시지요, 뭐. 추가질의보다는 지금 얘기를 하십시오.

**○민병두 위원** 추가로 다른 것 질의할게요.

**○위원장대리 김용태** 예, 알겠습니다.

다음, 김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환 위원** 김태환 위원입니다.

우리 국무조정실장!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김태환 위원** 지난주 3월 30일인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열어 가지고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확정되었다는데, 맞지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김태환 위원** 그간 정부에서 안전관리를 위해 가지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또 안전처를 출범도 시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그동안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구체적인 게 없었는데 이번에 여러 가지 심사숙고를 해서 좀 늦었지만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저는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마는 그중의 하나, 제가 좀 궁금하고 이것 어떻게 할 건지…… 재난사태 선포권 있지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김태환 위원** 이거 지금은 국민안전처장관이 하게 되어 있는 것을 지자체로 넘긴다, 이것 맞습니까?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국가적 재난에 관해서는 안전처에서 선포를 하고, 물론 더 큰 대형재난인 경우에는 중대본부장을 총리께서 맡기로 그렇게 현행법에 되어 있고요. 국가적 재난은 안전처에서 선포를 합니다.

다만 지방에서 일어난 그런 재난에 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신속한 수습, 대응도 필요하다 하는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 일정 부분, 일정 크기에 관해서 선포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김태환 위원** 검토하는 게 아니라 결정한 것 아닙니까?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현재 검토하고, 최종적으로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김태환 위원** 아니, 제가 보고받기로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그런 방향성은 확정을 했고요.

○**김태환 위원** 국가 재난은……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안전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환 위원** 안전처에서 하지만 좀 적은, 지자체별로 재난이 일어났을 때는 선포권을 지자체장한테도 준다……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그것은 후속 법령 또 이런 작업이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

○**김태환 위원** 원칙은 그렇게……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그런 방향성을 갖고 현재……

○**김태환 위원** 마스터플랜에 그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게 앞으로 하겠다고.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김태환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유가 뭐니까? 그러니까 신속처리하자 그런 겁니까?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 전체가 관심을 갖거나 중앙정부에서 나서야 될 것은 당연히 안전처에서 직접 선포를 하고 나설 겁니다. 그런데 지역적으로 일정 부분 작은 것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책임을 지고, 그다음에 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 그런 것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반영되고 있습니다.

○**김태환 위원** 뭐 그런 장점도 있지만 또 반대로, 초기 재난이 생기면 이것 소방본부가 하는 것 아니에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맞습니다.

○**김태환 위원** 신속하게 안 하느냐, 하느냐는 소방본부가 먼저 하고 또 그 뒤에 국민안전처가 지원하게 되어 있으니까 꼭 신속성이 이렇게 선포권을 준다 해서 나는 된다고도 볼 수 없지 않느냐 싶고, 또 이게 잘못하면 책임성이 있으니까, 빨리 대처 못 했다고 나중에 지자체장이 질타받을 수도 있으니까 좀 쉽게 결정하고 쉽게 해서 낭비 현상이 일어날 우려가 크게 있지 않겠느냐? 굉장히 우려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실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재난선포권을 저희들이 부여하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만들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유념해서 틀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환 위원** 그 마스터플랜을 통해서 안전특별교부세하고 소방안전교부세, 향후 5년간 30조 원을 투입한다고 되어 있지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김태환 위원** 어떻게 재원을 만드시려고 그러니까?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그 재원은 지난번에 국회에서도 마련을 해서 특별재원도 저희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 앞으로도 재난 부분에 관한, 재난 안전과 관련된 예산·인력은 지속적으로 확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환 위원** 아직 예산 확보가 된 것은 아니지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그렇습니다. 그것은 중기적으로 가지고 가는 계획입니다.

○**김태환 위원** 시행령도 아직 못 만들고 있고 이제 앞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김태환 위원** 이제 안전자치 강조하고 있는데 이 30조 원이 정말 확보가 되어야지 이게 확보가 되지 않는다 하면 이 마스터플랜 실행은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재원 확보……

○**김태환 위원** 이런 데 대해서는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좀 예산 확보도 앞으로 시행령과 함께 준비가 되어야 되겠는데, 저는 하여튼 자칫하면 이게 낭용이 된다는가 이런, 장점 보다는 아까 시급성이나 이런 것은 또 지자체 결정권하고는 별개의 문제니까 운영을 잘하지 않으면 낭비 현상도 일어나고 오히려 득보다 실이 좀 많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실장께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만 넣어 봐.

○**위원장대리 김용태** 예, 알겠습니다.

○**김태환 위원** 그런 면에서 단단히 좀 챙기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세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유념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챙겨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태**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식 위원** 질의에 앞서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으로 아까 우리 민병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우리 국무조정실장님 답변, 오늘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되기 위해서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경남기업 성완중 회장 리스트와 관련해서 ‘단지 이름이 나왔다는 이유’ 이런 표현들을 국무조정실장께서 쓰시는 것은 지금 적절치 않습니다. 경남기업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정부 기간 동안에 기업이 워크아웃 들어갔다가 졸업했다가 다시 워크아웃 들어가고, 그 과정에서 금융권의 대출이나 이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차피 6월달에 국회든 아니면 국정감사가 분리 실시될 경우에 저희 정무위 차원에서 다뤄질 사안들이고, 그 과정에서 지금 현직 총리께서 성완중 의원의 바로 옆 지역구였기 때문에 그 메모로 인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번에 발견된 리스트에 갖는 국민적 관심도나 폭발력을 고려할 때 그걸 단순히 ‘메모다’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시면, ‘이름이 나왔을 뿐이다’ 이러면 오늘 회의 진행이 원활치 않으니깐 이 점에 대해서는 조금 잘 주의 깊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위원장대리 김용태 알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저는 김기식 위원님 관점에서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금방 우리 민병두 위원이 질의하셨을 때 ‘제가 전달하는 게 적절한지 판단해 보고 전달을 하겠다’라든지 그런 말로 하셔야지 그 내용을 설명하실 이유는 없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지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태 오늘도 만약에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때 본인이 본인 역할을 하실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말씀하시면 되지 사건에 대한 성격이랄지 이걸 판단할 이유는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식 위원 저도 사건의 성격에 대한 판단과 관련된 이야기를 지금 국무조정실장이 하시는 건 적절치 않으니깐 그 점에 대해서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경제·인문사회이사장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안세영 예.

○김기식 위원 제가 질의에 앞서서, 제가 국회에 들어온 지 3년 됐는데요, 국회 상임위원회를 하는데 상임위 개의 시간에 소속기관장이 지각을

해서 안 온 경우를 올해 이번에 처음 봅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안세영 죄송합니다. 오래전부터 오전에 이사회가 잡혀 있었는데요, 이사회 일정을 도저히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랬고, 이사회가 좀……

죄송합니다, 이사회 때문에.

○김기식 위원 상임위의 일정이, 사정이 있으면 사정설명을 하셔야지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안세영 죄송합니다.

○김기식 위원 지금 이사장님 참석 때문에 질의 순서까지 다 바뀌어 됐지 않습니까?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안세영 죄송하다는 말밖에 하지 못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태 우리 이사장님, 사전에 오늘 늦게 도착한다는 말씀을 우리 행정실에 얘기하지 않았나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안세영 중간에 이야기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태 알겠습니다.

적절치 못했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꼭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안세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용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식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국정감사 때 정보통신연구원 집기 구입 관련해 가지고 제가 문제 지적을 했습니다. 식당 의자를 구입하는데 무려 55만 6000원짜리 식당 의자를 구입하는 등의 문제를 지적했는데요. 그래서 감사를 하라 그랬더니,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국무조정실장님도 잘 들으십시오.

이사장님, 일어나셔서 마이크 들고 계세요.

55만 6000원에 구입한 걸로 돼 있는데 실제 단가는 24만 5000원이었습니다. 31만 원 정도가 부풀려졌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초기에 과일박스를 351개 구매하기로 했다가 이 구매를 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구매계약 당사자가 이 계약을 안하기로 한 것을 누락하고 그냥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사기로 한 물건을 그냥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계약한 업체에서는 제작을 했겠지요. 이 제작한 물건에 대해서 값을 치러 달라고 하니깐 계약 잘못된 것이 나중에 문책받을 것 같으니깐 24만 원짜리 의자



를 55만 원이라고 단가를 조작했습니다. 회계조작을 해 가지고 물품 구입을 한 겁니다. 이게 도대체 국책연구기관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까?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안세영**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국회……

○**김기식 위원** 잘못됐지요.

국무조정실장, 잘 들어 보십시오.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김기식 위원** 감사 결과 2명을 징계하겠다고 했는데 이 감사 결과에 더 심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국책연구원장과 부원장이 1개당 135만 원짜리 소파 10개를 사서, 각 방에 670만 원어치 소파를 구매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감사 결과가 뭐냐 하면 ‘그것은 시중단가보다 10만 원만 비싸게 샀기 때문에 별문제가 아니다’는 겁니다.

국무조정실장님, 국무조정실장님의 방에 있는 5인용 소파의 가격이 얼마입니까? 저희 국회의원실에 있는 소파의 가격이요, 그것의 반도 안 됩니다.

이사장님 어디에 가셨어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안세영** 여기 있습니다.

○**김기식 위원** 잠깐만 스톱시켜 주십시오.

이사장님, 지금 질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국책연구소 원장의 방이 무슨 개인 집의 개인 서재입니까? 670만 원어치 5인용 소파를 사는 게 아무 문제가 없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는 소위 집기 구매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습니까?

식당 의자도요, 부풀려진 게 삼십몇만 원, 31만 원이 부풀려졌지만…… 국무조정실장님, 지금 세종시 공무원들이 이용하는 식당의 식당의자 단가가 얼마입니까? 24만 원짜리가 있습니까?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위원님, 제가 정확한 가격은 알지를 못합니다.

○**김기식 위원** 문제는 24만 원짜리를 56만 원으로 부풀린 것도 문제일 뿐만 아니라 24만 원짜리 식당의자를 사고도, 무려 670만 원어치 소파를 사고도 이게 시중단가하고 큰 차이 없으니 문제 아니더라는 게 더 문제지요.

그래 놓고 예산 모자라니까 10억 20억씩 더 배정해 달라고 작년 예산 심사 때 얘기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감사를 해 놓고 이견 문제가 없답니다.

적절한 구매물품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식당의자는 어느 정도 가격선에서, 소파를 사면 어느 정도 가격선에서 사야 된다는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두 번째로 이거 징계조치를 누구를 했습니까? 징계요구를 누구누구 했습니까?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안세영** 담당자 2명을 3개월 정직처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식 위원** 사무국장과 총무팀장을 3개월 정직처분했습니다. 이런 희대의 회계조작이 발생했는데 국책연구소 연구원장이나 부원장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상의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까. 원장의 답변이 뭐냐? ‘그렇게 하는 걸 몰랐다’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감사 결과입니까, 이사장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안세영** 그 관련 규정이 3개월 정직 다음에는 해임입니다, 관련 직원에 대해서.

○**김기식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정보통신연구원 원장과 부원장에 대해서 무슨 조치를 하셨냐 이거예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안세영**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국회 때 위원님께서 그 질문하실 때 저는 시중가격보다 약간 높게 샀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이상해서요, 협동감사를 시켰습니다. 협동감사는 뭐냐 하면……

○**김기식 위원** 감사 내용이 아니라 그래서 원장과 부원장에 대해서 무슨 조치를 하셨냐는 거예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안세영** 제가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제게 해임권 빼 놓고는 징계조치권이 없습니다. 경제·인문사회이사장이요 산하 국책연구원장에 대해서 임명권과 해임권만 있지 정직 등의 징계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두상으로 강력하게 경고조치하고, 제가 또 전 직원을 교육시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김기식 위원** 1분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김용태** 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식 위원** 국무조정실장님하고 권익위원장님께 묻겠습니다.

회계조작이 이루어졌습니다. 24만 원짜리 사면서 55만 원짜리라고 속이고 회계조작을 했습니다. 이런 부적절한 물품 구입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소속 기관장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규정이 없다고 저렇게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고가의 소파 구입이 시중단가를 반영한 거기 때문에 문제없다라고 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이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이 상태로라면요, 앞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모든 연구원들에 대한 예산 부분에 있어서 통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두 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기본적으로 저는 위원님 문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될 부분에 관해서는 임직원들이 함께 책임을 그 책임의 정도에 따라서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적하신 부분 현실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에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것은 한번 살펴보려고요.

그다음에 그 물품 구입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정부기관들이 구입하는 부분하고 현재 정부출연연구기관, 아마 기타 공공기관으로 돼 있을 것 같은데 그들이 일반 집기 등 사무용품 구입하는 그 기준들이 과연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가 존재할 필요가 있는지 등에 관해서 일정 부분 저희들이 살펴보고 필요하면 가이드라인을 만들든지 그런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예산이 부적절하게 집행이 된 것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화된 것이 아니어서 저희들이 직접 개입하기에는 어떤가는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한번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식 위원** 이따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태** 김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국무조정실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통령께서도 청년들 해외 취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지금 정부에서도 노

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가 국회예산처에 의뢰를 해서 이거 분석을 좀 해 보니까 작년에도 예산을 한 이백몇십억, 거의 300억가량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 실적들이 영 미진해요.

그래서 이 원인이 뭐냐를 보니까 지금 현재 정부의 청년 해외진출 지원 사업을 총괄 조정하는 기능이 미흡합니다. 2012년까지는 각 분야별로 총괄 관리하는 부처가, 그때 당시 국무총리실장이 위원장이 돼서 글로벌리더양성사업정부지원협의회를 구성해서 청년들 해외진출 지원 사업을 총괄했는데 지금은 그런 총괄 기능을 하는 기관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해외진출 지원 사업 관련 청년들이 볼 수 있는 홈페이지 통합정보 제공 기능이 지금 아주 미흡하게 돼 있습니다. 접속을 해 보면 고용노동부나 교육부 사업 위주로 돼 있고, 산업통상부라든지 외교부나 이런 데에는 내용이 좀 부실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통합 홈페이지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고용노동부의 해외취업 성공장려금 사업 성과도 보면 이걸 지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해외취업자 중에 6개월 정도, 중도 귀국 비율이 전년에 비해서 2배 가까이 증가해서 사업 성과가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무조정실장님께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총괄기구도 있어야 될 것 같고 통합 홈페이지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해외취업 성공장려금 성과 분석도 제고를 좀 해야 되겠는데 어떤 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부분 동일한 문제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 중동 순방 이후에 바로 그런 문제인식하에, 우리 청년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진출을 활발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문제인식하에 전체적으로 현재 우리 청년들 해외진출하는 프로그램에 관해서 한번 리뷰를 해 보고 관계부처가 더 협업을 강화해서 실효성 있는 청년 진출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지금은 단순 인턴이나 또 아주 저임의 단기 이런 부분으로 돼 있는데……

**○김정훈 위원** 통합기구로 우리 국무조정실장님이 위원장이 되는 그런 기구를 하나 만드실 생각 없어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그런데 기구를 만드는 문제는 저희들이 늘 신중합니다. 다만 국무조정실의 업무가 늘 이런 부처 간에 함께해야 되는 업무가 정상적으로 추진이 잘 안 되거나 협업 강화가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언제든지 조정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챙기고 역할을 필요하면 할 거고요.

홈페이지에 관한, 홈페이지를 잘 만들어서 정보 제공을 활발히 해야 된다 등등은 동일한 문제인식을 갖고 지금 청년들의 해외진출을 어떻게 더 활발히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관해서 관계부처 TF가 만들어져서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고용부에서 6월까지 전체 부처 간에 협업해서 전체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그리고 또 일제강제동원역사관이 2년 전에 준공이 다 됐어요. 우리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를 하고 또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서 일제강제동원역사관을 건립했는데, 예산도 한 500여억 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거 완공은 했는데 소관 부처가 지금 정해지지 않아 가지고 2년째 관리비만 해도 한 3억여 원 가까이 헛돈을 쓸 정도인데, 이 소관 기관이 행안부입니다. 행자부입니다, 행자부. 예산도 전부 행자부에서 배정을 했고, 이 특별법이나 행정자치부 창조행정담당관실에서 소관 위원회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행자부가 이걸 등기를 하고 그다음에 운영 주체를 정해야 되는데 지금 행자부가 이래저래 하면서 뭉그적거리고 있어요. 이걸 기재부에 질의를 한다 하면서……

그런데 올해가 광복 70주년이잖아요. 8월 15일 날은 이걸 반드시 개관을 해야 되는데 행자부가 이렇게 자기들 꼬리 하나 붙이기 싫어 가지고 말이지 자꾸 이렇게 회피를 하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총리실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위원장대리 김용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이 부분의 진행 상황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엄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왜 걱정하시는 부분이 생기는지. 행자부가 왜 조금, 아마 행자부도 적극적으로……

○**김정훈 위원** 예산 주는 그런 기관 다 꼬리 달

기 싫어 가지고 자꾸 회피하는 것 아니에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그것은 제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올해 8·15 때 꼭 개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총리실에서 조정을 좀 강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최대한 서둘러서 진행될 수 있도록 챙겨 보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보훈처장님, 시간이 남아서 조금 질문드릴게요.

오랜만입니다.

그런데 안중근 열사 여동생 있잖아요, 안성녀 여사.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김정훈 위원** 내가 초선 때부터 국가유공자 왜 안 되냐 했는데, 지금 보니까 유공자 공적심사기준에 반드시 무슨 문건이 있어야 된다 이러는데, 아니 지금 100년이나 돼 가고, 일제시대가 언제 때인데 ‘문건이 있어야 된다. 증언 가지고는 안 된다’ 이러면 그것은……

제관에도 증언이 있잖아요, 다른 문서가 없더라도. 그 기준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알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태** 전임 위원장님이시라 더 하셔도 되는데……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 국무조정실장님!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김영환 위원** 우리 앞에 앉아 있었던 성완중 동료 의원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자원외교에 대한 조사 때문에 시작된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최경환 부총리가 작년에 국회에서 답변하면서 ‘당시 자원외교 총괄은 국무총리실에서 했고 전 세계가 자원 확보 전쟁을 벌이는 상황이었다’며 무관한 일임을 주장했습니다. 그런 기사 본 적 있지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김영환 위원** 자원외교에 대한 총괄을 총리실에서 했다, 맞습니까?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그 총괄의 의미가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국정조사 과정에서 기관보고를 했고 국무조정실의 역할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소상히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영환 위원** 자원외교에 대한 총괄이 국무총리실에 있었다는 최경환 부총리의 발언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거지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외교에 있어서 또는 의사결정을 총괄 조정했다 하는 부분은 조금 낫앙스가 다른 것 같고요, 자원정책외교 협의회를 저희들이 겨냥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환 위원** 박영준 차관이 일주일에 한 번씩 자원외교 총괄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분이 지경 부차관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김영환 위원** 그렇게 해서 자원외교가 진행됐기 때문에 어떻게 총리실에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이 연장선상에서 오늘 충격적인 성완종 리스트 이게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시신에서 여러 가지 메모가 나오고 했는데 이것이 사실임이 밝혀지게 되면, 필적조사라든지 또는 어제 돌아가시기 전에 한 50분에 걸친 경향신문과의 인터뷰 이런 것들이 육성으로 나오게 될 때 이런 정도의 내용을 가지면 검찰수사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지금 제가 제 견해를 말씀드리는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김영환 위원** 왜 적절치 않습니까?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제가 그 내용에 관해서 충분히 알고 있지 못합니다.

○**김영환 위원** 그런 사실이, 육성 또 유필 이런 것들이 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수사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걸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어떤 전제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김영환 위원** 세월호 1주년이 이제 가까워 오고 있지 않습니까? 시행령안이 입법예고돼 있지요, 그렇지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입법예고를 마쳤습니다.

○**김영환 위원** 대통령 시행령하고 진상규명특별법 가운데 뭐가 우선하니까? 우위에 있습니까?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항상 법이 위지요.

○**김영환 위원** 특별법에는 조사위원회의 규칙으로 사무처의 조직과 운영을 결정하게 돼 있지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아시다시피 15조·18조

가 있는데, 15조에서는 위원회의 조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영환 위원** 18조에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지요? 그렇게 돼 있고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18조는 그런데 15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영환 위원** 시행령 4조·5조·6조·7조에도 이것을 또 규정하고 있지요? 이 두 개가 상충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법이 우선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김영환 위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위헌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행령 4조에서 '기조실장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이렇게 결정돼 있고요, 시행령 5조에는 '조사1과장은 4급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이런 내용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진상규명의 핵심이 정부에 얼마나 책임이 있는가, 왜 선상구조를 하지 못했는가, 왜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 정책 책임자들에게 누장보고가 되고 제대로 된 보고를 하지 못했는가 이런 것이 내용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부에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런데 기조실장을 일반공무원으로 하고 해수부 직원으로 하는 그런, 고양이한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것과 같은 그런 조사 결과를, 구성위원회를 어떻게 국민들이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의혹을 키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지금 시행령 입법예고 이후에 여러 문제 제기되는 부분에 관해서 저희들도 잘 경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다 하셔야 되는데 지금 제가 제기하는 이 논거에 대해서 이해가 되시고 또 실제로 이것을 반영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시나 그런 말씀을 묻는 겁니다.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지금 저희 시행령은 기술함에 있어서 정도의 문제는 있지만 법에 근거해서 시행령안을 만들고 있고, 다만 그 실제적인 내용에 관해서 일부 문제 제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을 경청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위원장대리 김용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 보훈처장님!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김영환 위원** 안중근 의사 유해발굴 문제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일본의 외교사료관이 소장한 사형보고서에 의하면, ‘당일 10시 20분 안중근의 시신을 특별히 감옥에서 제작한 침관에 넣고 흰 천으로 덮어 교회당으로 운구한 뒤 우덕순, 조도선, 유동하 등 공범 3명을 끌어내 예배하게 하고 오후 1시에 감옥 묘지에 매장했다’ 이런 기록이지요, 그렇지요?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김영환 위원** 이것 일본에다가 자료 내놓으라고 우리가 주장을 여러 번 했고요, 중국에다가 협조요청 했지요?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김영환 위원** 그래서 GPR입니까, 지면 투과레이더?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김영환 위원** 이것을 해야 그 공동묘지에 묻힌 걸 찾을 수가 있는데 중국 측 답변이 이렇게 왔지요. ‘여순 감옥 일대에 GPR 조사는 곤란하여 매장지에 관한 구체적 자료제출을 요구한다’, 어딘가를 알아서 얘기해 달라 그 얘기 아닙니까?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김영환 위원** 또 ‘안중근 의사 출생지가 황해도 신천이므로 GPR 조사 및 발굴은 남북 간 협의가 우선돼야 된다’, 이게 중국에서 온 거지요?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그렇습니다.

○**김영환 위원** 제가 예측했던 대로입니다. 왜 안 의사의 발굴 문제에 대해서 중국정부가 미온적인가? 이 시신이 발견됐을 때 북한으로 가야 되느냐 남한으로 가야 되느냐는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예민한 남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미온적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보고가 나왔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남북한이 함께 해야 된다 이겁니다.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김영환 위원** 안 의사 발굴을 위해서 남북한이 협조해야 되고 북한에 그 책임을 촉구해야 되고 그리고 러시아의 협조를 받아서 해야 된다 그런 결론이 나온 거지요. 그래서 GPR 검사를 해야 됩니다. 105주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제 견해

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중국 쪽 입장에서 참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중국이 남북한이 공동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2006년도에 안중근 의사 유해발굴을 남북한이 공동으로 조사까지 했는데 실제로 발굴단계에 들어갈 때 북한이 미온적으로 하면서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실패했기 때문에 이런 사정을 중국 측에 다시 한 번 이야기해서, 물론 저희들이 북한 측에 통일부를 통해서 요청도 하고 하지만 북한이 끝까지 응하지 않으면 그렇다고 언제까지 기다릴 수 없으니까 GPR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중국에 다시 한 번 요청하려고 합니다.

○**김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용태**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위원** 안세영 이사장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안세영** 예.

○**박병석 위원** 아까 문제가 됐던 연구원장, 부원장에 강력한 경고를 하셨다 그러셨지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안세영** 예.

○**박병석 위원** 강력한 경고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효과가 있습니까?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안세영**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전 27개 국책 연구기관 회계 담당자를 5월 달에 1박 2일로 특별교육을 시키려고 그러합니다.

○**박병석 위원** 아니,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실효성이 있느냐 이거예요. 가령 경고를 받으면 감봉이 된다든가 무슨 그런 불이익한 조치가 있느냐 이거예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안세영** 제가 법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경영에 자율성이 있어 갖고 저는 원장에 대해서 감봉이나 징계할 법적인 권한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박병석 위원** 됐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국무조정실장하고 이사장님께 요청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사장이 연구원장들에 대한 뭐랄까, 컨트롤이라 그럴까 관리를 하는 실효성이 없다면 징계의 수순에 정식으로 항목으로 넣고 규정을 정해서, 강력한 경고가 있을 경우 또는 징계를 등급별로 해서 이러 이러한 징계를 받으면 어떤 어떤 불이익을 준다 하는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

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안세영** 예, 관계 부처하고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협의하겠습니다.

○**박병석 위원** 우리 조정실장은 어떻습니까?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위원님 지적 일리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허점이 있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병석 위원** 그래서 아까 이사장님의 강력한 경고라는 게 좀 공허하게 들리는 것이 아무 불이익이 없는 경고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따라서 이사장이 관할 어떤 연구에 관한 독자성은 보장하지만 관리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페널티,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그것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만드시는 게 좋겠다 하는 것이고, 지금 국무조정실장도 그렇게 하시겠다니까 잘 검토를 해 보십시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안세영**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병석 위원** 또 하나는 연구기관들이 회계 관념, 나랏돈을 쓴다는 관념이 너무 희박해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안세영** 맞습니다. 도덕적 해이입니다.

○**박병석 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됐든 국무조정실이 됐든 한번 대대적 교육을 본격적으로 시켜야 됩니다. 국회에서도 계속 문제가 되는 것이 이렇게 허술하게 돈을 쓰다가, 이렇게 회계 관념이 없는가, 나랏돈에 대한 개념이 정말 일반인보다도 못 하는가 이런 생각을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다 하실 거니까 한번 대대적 교육을 하고 만약 앞으로 그 교육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있을 때는 정말로 엄벌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 교육을 좀 시켜 주시겠습니까?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안세영** 예.

○**박병석 위원** 그리고 제가 작년 국정감사 때부터 계속 강조했던 연구기관들이 종합적으로 통일이 되면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통일편익에 관한 본격적 협동연구를 하라는 것 진행하고 있습니까?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안세영** 이미 기존에 추진하던 게 있는데 그게 약간 아웃데이트(outdate)돼 갖고요, 제가 통일 관련한 모든 걸 모아서 한 번 대토론회를 구성하는데 이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병석 위원** 제가 몇 번 강조를 했지만 대통

령께서 통일대박론을 말씀하신 건 진일보한 조치고 우리도 환영하고 다행이다 생각하는데, 정말 통일이 대박이 된다면 통일됐을 때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을 수치로써 보여 줘야지, 어떻게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이 통일에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라는 건 있는데 대한민국 정부는 통일이 되면 효과라는 게 얼마라는 게 없어요. 다 공허하게 들리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통일효과의 문제는 어느 한 연구소가 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정부와 우리 연구기관들이 합동으로 권위 있는 것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는 건데, 제가 기획 있을 때마다 점검할 테니까 중간에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안세영** 예, 중간에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병석 위원** 다음에 권익위원장과 조정실장님께 함께 묻는데요, 우선 권익위원장님 답변해 주세요.

공직자에 관한 부패신고가 들어오면 며칠 내에 처리하게 돼 있어요?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기본적으로 60일 내에 하게 돼 있습니다.

○**박병석 위원** 60일 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30일 연장해서 120일 내에 하게 돼 있지요?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90일이 되겠습니다.

○**박병석 위원** 그런데 자원비리와 관련된 SK이노베이션에 관해 성공불용자의 회수금을 덜 받았다 해 가지고 감사원이 검찰에 고발한 조치가 최근에 보도됐습니다. 그 처리기간이 어떻게 되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위원장대리 김용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저희가 그것 정확히 123일 만에 처리를 했습니다.

○**박병석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159일 만에 됐거든요.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그게 민원처리법에 의하면 일수로 정해져 있는 것들은 법정공휴일을 제외하고 그 기간을 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공휴일을 제외하면 약 5개월이지만 123일이 됩니다.

○**박병석 위원** 실기일은 123일이다? 그러니까 위반이 아니다?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아닙니다. 초과를 한 것은 맞습니다.

○**박병석 위원** 초과했지요?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예.

○**박병석 위원** 그런데 그것이 초과하게 된 이유가 뭐지요?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알아보니 우선 신고내용이 상당히 중대하고, 또 관련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 자료 받는 데도 좀 시간이 걸렸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조사를 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늦어졌습니다.

○**박병석 위원** 바로 그래서 그런데 국민권익위가 관계부처의 부패의혹을 조사할 때 자료를 안 내고 협조를 안 하면 이런 사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강제할 수 있는 어떤 규정이 필요할 것 아니냐?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예, 현재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태** 알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패에 관해서는 시간이 지나면 은폐 조작의 가능성이 또 있기 때문에 이 부패혐의에 관해서는 제도적으로 자료를 제공할 수 있게끔 규정을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건데 권익위원장, 어떻습니까?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예,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찍부터 인지를 해서 개정을 시도했었는데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병석 위원** 국무조정실장, 어떻습니까?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제가 깊이 알지 못하는 사안이었습니다마는 국민권익위원회하고 관계기관 전문가들하고 한번 같이 그 부분에 관해서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위원** 그렇지요. 관계부처가 자기의 부패 문제는 신상에 관한 문제니까 협조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 경우에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의무를 할 수 있는 강제적 수단이 필요하다.

그리고요, 시간이 다됐기 때문에 제가 요약해서 하겠습니다.

자원외교에 대한 비리 있잖아요. 누구를 처벌한다 이런 것을 떠나서 다시는,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원외교 앞으로도 필요한 겁니다. 또 자원외교는 성공하면 대박이지만

성공할 확률은 낮은 거지요. 그리고 이번에 처벌은 처벌대로 강력하게 하되 비리의 문제는 우리가 이번에 정말, 감사원에 따르면 총 61조 들어가는데 무슨 교훈을 우리가 얻어야 되고 앞으로 자원외교를 할 때는 과거에 우리가 60조의 사례에서 이러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에 우리가 대비해야 된다,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되고 기업은 뭘 해야 되고 또 때로는 국회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 교훈이 담긴 백서를 한번 만들 필요가 없을까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기본적으로 백서 형태든 어떤 형태든지 간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저희들도 100%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사·감사 다 끝나고 저희들이 이런 일이, 만약에 불미스러운 일이나 혹시 부실 투자 등등 여러 문제가 여러 군데서 노정이 된다면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뭔지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될지에 관해서 한번 종합 정리해 보는 작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병석 위원** 교훈을 얻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용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동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우 위원** 신동우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국무조정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에너지 가격이 떨어지면서 국제경제에 큰 지각 변동이 오고 있는데 그 배경을 보면 미국의 셰일오일, 셰일가스의 생산방법이 굉장히 코스트(cost)가 떨어지는 바람에 지금 하루 미국 오일 생산량이 400만 배럴에서 950만 배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1등을 달리던 사우디하고 비슷한 수준이 되고, 에너지 시장에 큰 변화가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에너지 가격이 떨어지는 원인의 하나가 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이 단순히 에너지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야 될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앞으로 중동의 비중이 어떻게 될지 전망도 바뀌고 정치·외교·군사에 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또 우리 화공제품 생산을 보면 우리는 오일을 베이스로 하는데 미국은 가스로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가스를 비교해 보니까 미국은 2불 60센트짜리를 쓰고 있고 우리는 이것을 수입해

와서 15불짜리를 쓰고 있고, 이렇게 되면 단순히 에너지 지각 변동이 아니고 이제는 제조업에도 영향을 줄 것 같고, 미국은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유리한 위치에 있단 말이지요. 실제 미국에 플랜트 설계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조업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저는 이 큰 변화를 단순히 에너지 차원에서만 볼 일이 아니고 우리가 국가적 차원에서 이것을 분석하고 대응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의식을 갖고 있어요.

우리 국무조정실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정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에너지 가격 하락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에너지 수급 차원에서 공급이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크게 늘어나고 수요는 세계경기 침체 지속으로 인해서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에너지가 곧 경제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또 에너지 자원을 많이 보유한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들 간에 여러 가지 정치·외교적인 지형, 영향력의 변화도 역시 요구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면에서 지금 제가 이 시점에서 단순히 어떤 분야에 어떻게 우리가 대응하고 진단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인식을 갖고 저희들도 지금 이 문제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신동우 위원** 지금 인식을 하고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신동우 위원** 그렇다면 주요 중동 산유국들의 여러 가지 플랜트라든가 건설공사가 우리 경제에 굉장히 영향을 주고 있고, 또 지금 정부에서는 제2 중동 붐을 일으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신동우 위원**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중동 쪽의 수입이 자연스럽게 떨어질 것이고, 그러면 발주물량이 장기적으로는 떨어질 것으로 보는데 제2 중동 붐을 일으키자라는 정부의 이 방향 설정이 옳은 것인지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에너지 가격이 높을 때

도 저희들이 시장 진출 기회가 있지만 또 중동지역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지형변화, 사회변화가 상당한 투자수요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인, 우리의 강점을 살려서 기회로 활용하자 이런 취지로 지금 정부가 구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동우 위원** 알겠습니다.

ODA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제 ODA 사업이 우리 예산의 2조가 넘고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그렇습니다.

**○신동우 위원** 이 문제가 워낙 규모도 크고 여러 부처에서 하다 보니까 이것을 총괄 조정할 필요가 있어서 국제개발협력기본법도 만들고 또 총리실에다가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총리가 위원장이 되지요. 또 이것을 어시스트(assist)하기 위해서 개발협력정책관실도 두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유·무상 사업이나 또는 기타 여러 부처를 총괄 조정하는 이 문제가 잘 되고 있어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늘 정부 정책 또는 행정이 만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2010년·2011년에 이런저런 문제가 제기되었고, 12년에도 급기야 관련 유·무상 부처 간에 일부 비협조적인 그런 행태가 노정이 되고 감사원에서도 일부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정하기 위해서 국무조정실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현재 조정, 협업 메커니즘을 작동시키고 있기 때문에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동우 위원**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형식상의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실제 수출입은행을 관장하는 기재부나 또 코이카를 관장하는 외교부를 직접 컨트롤해야 되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태** 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우 위원** 공무원을 한 내 눈으로는 이것이 과연 되겠는가 걱정된다는 것이지요. 실제 맨파워(manpower)나 이런 것 볼 때, 거기 지금 총리실에 근무한 경력만 있는 국장 한 사람이 하던데 그렇게 해서 실제…… 제가 형식적인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나는 근본적으로 형식적으로 ‘컨트롤타워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이것을 끌어갈 만한 영향력이 있고, 그것은 조직의 상



식 아납니까? 아무것도 없이 어떻게 이것을 컨트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건을 놓고서 두 사람이 각각 움직이고 회의석상에서 싸우고 말이지, 이것이 컨트롤타워가 없어서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것을 그냥 ‘앞으로 잘하겠습니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조직에 문제가 있다 하면 새로 고쳐 버리자고요. 이것을 바꿀 수 있는 생각도 한번 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현실화하든지.

답변해 보세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걱정하신 부분 저희가 잘 귀담아들겠습니다. 그리고 더 잘 조정해야 된다는 문제인식 그리고 분발의 지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하나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우선 국무조정실·국무총리실이 각 부처를 통할하고 또 정책조정을 하게 되어 있는 미션이 부여되어 있고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제가 기획재정부 출신입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외교부 업무조정하는 데 전혀 지금 문제가 없고, 그리고 개발협력관실에 우리 총리실 국장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외교부·기획재정부 과장급 직원들이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한 2년 사이에는 여러 체제도 준비를 했고 실제적으로도 저희들이 사업들을 각 부처 유·무상 조정을 하는 과정 그리고 예산편성 과정에 그 연결고리를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지켜봐 주시고, 저희들이 평가를 나중에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용태** 다음은 신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학용 위원** 이번 이완구 총리가 3월 12일 취임 후 첫 대국민담화에서 부패와의 전쟁 선포했지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신학용 위원** 해외자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많은 자료가 축적되어 있었습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부패척결추진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김용태 간사, 김기식 간사와 사회교대)

○**신학용 위원** 거기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이번에 강력히 밀어붙인 것입니까?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구체적인 개별 자료를 가지고 했다고보다는 그때는 벌써 우리 국회에서도 여러 문제 제기가 있고 언론에서도 상당 부분 문제 제기가 있었던 상황입니다.

○**신학용 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국무총리실 산하 부패척결추진단의 역할이 뭐고, 이것을 상시적으로 하기로 해 놓고 지금 한시적으로 해서 7월에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앞으로는 검찰이나 청와대 민정실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예정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총리께서 이렇게 정부에서 하기로 했으면, 그래도 총리실에 추진단을 만들었으면 정말,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체계적이고 덜 정치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려면 지금과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게끔 계속하는 것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알겠어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부패척결……

○**신학용 위원** 잘못하면, 어차피 청와대·검찰에 다 맡겨 두면 정치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이야기한다는 것을 꼭 총리께 말씀드려 주세요.

제 말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알겠습니다.

○**신학용 위원** 정부업무평가, 전번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잘해 가지고, 잘못된 것 고치고 잘하면 상 주고 그렇게 하라는 것 아납니까? 그렇지요? 맞지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지금 우수기관·미흡기관 이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신학용 위원** 그런데 기준이 자꾸 바뀌어요. 이제는 그 기준의 20%가 홍보야. 홍보를 잘하면 20%는 줘. 그러면 국가정책을 잘한 건 잘한 것, 못 한 건 못 한 것, 상 주고 다시 그것에 대해 질책하고 더 잘하라는 것인데 아무리 정책 잘 못해도 홍보만 잘하면 상을 준단 말이에요. 정부업무평가가 국정홍보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이요? 제가 하는 말 잘 알겠지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무슨 걱정을 하시고 있는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신학용 위원** 그러니까 빨리 다시 만드세요. 원래대로 가시란 말이에요. 국민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평가해 놓으면 누가 잘했고 못 했고, 또 각 부처가 거기에 따라서 잘해요. 잘못하면 고치

고……

그런데 그 평가기준에 홍보를 얼마나 잘했느냐? 평가가 홍보랑 무슨 상관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꼭 주시기 바라구요.

간단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한국 정부와 룬스타 ISD 소송 붙었지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중재재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학용 위원** 대단한 소송이지요? 이미 우려했던 것이 나타났지요. 먹튀, 국부유출 굉장히 많은 것인데 잘못하면 국민감정에 굉장히 어긋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 최대한 준비하고 있습니까? 환기시켜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관계 부처가 중재재판에 잘 대응하고 있습니다.

○**신학용 위원** 국민들에게도요, 이 문제 빨리 반드시 승소해 가지고 나쁜 것에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이길 수 있다는 그런 것을 국민에게 좀 알려 주시기 바라구요.

온실가스 감축하는 이것도 빨리 좀 하세요. 우리 세계 7위로 온실가스 뿜어내면서 세계적인 기구에…… 우리 위상에 맞게끔 행동을 하셔야지요. 현 정부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장께 묻겠습니다.

제가 파파라치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는 그 파파라치의 기준을 여덟 번에서 열 번으로 상향시켰습니다. 왜 그렇게 바뀌었지요?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그런 전문 파파라치꾼들의 폐해 지적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좀……

○**신학용 위원** 많으면 더 줄여야지. 파파라치 적어도 다섯 번, 여섯 번 하고 나면……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그전에는 그런 제한이 없다가 연간 열 번으로 저희가……

○**신학용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오히려 늘리면서…… 내가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내부자 정보,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이런 식으로 되어 가지고 파파라치까지 양산하는 이런 것까지 온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다, 그리고 그 전문적인 파파라치를 없애야 되겠다 하나니까…… 여덟 번으로 하면 여덟 번까지 하고 아홉 번부터는 상금을 안 주니까 없어지는데 열 번으로 해 놓으니까, 수치상으로 파파라치가 없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이러지 않았나 저는 생각하는데, 정책이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

어서 그렇습니다.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그 ‘여덟 번’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신학용 위원** 제가 틀렸으면 뭐 알아서 하십시오.

가장 중요한데 국민신문고, 이것 전번에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우리 국민권익위에서 처리 기관, 포털에 들어오니까 처리 기관을 국민권익위에서 정확히 분류해서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다 보내 줘야 되는데, 그런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엄청 많다는 것 아시지요?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그래서 저희가 대통령께도 보고를 드렸지만, 그것을 저희가 평풍민원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그것을……

○**신학용 위원** 예, 떠넘기기 지금 계속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그래서 세 번째 움직일 때 권익위원회에서 개입을 해서 어느 기관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그렇게 조정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신학용 위원** 세 번씩이나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것이 국민권익위가 해야 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그것이 왜냐하면 일차적인 처분이 없었다든지 하는 민원은 소관기관으로 가서 처리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최소한도 한번 그렇게 움직이는 것은, 일단 그렇게 기본이 시작이 됩니다.

○**신학용 위원** 제가 통계에서 보는 것으로는 우리 부처가 아니라고 그래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상당히 나와요.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예, 그렇게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신학용 위원** 그것을 이야기하면 시스템 운영하는 부분만 우리가 담당하지 분류를 분명히…… 처리 기관 분류가 의무예요.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그래서 종전에는, 세월호 사건이 있기 전에는 기관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 저희가 개입할 여지가 없었는데 저희가 적극 개입하는 그런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학용 위원** 그래서 지금 잘하셨다는 것이예요, 뭐예요?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아닙니다. 과거에 저희가 잘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학용 위원** 30초만 주세요. 보훈처 질의 꼭 하나만 하고 싶어서요.

보훈처 보험기금 여유자금을 들여다보니까 거기 운용자들도 몇 명 안 되고 전문가도 없고, 그리고 그래서 그런지 예상수익률을 다른 데보다 굉장히 낮게 잡아 놔어요. 그 기금에서 많은 유공자들에게 나름대로 좀 혜택을 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굉장히 침체된 보험기금의 육성방안을, 육성방안이 아니고 활용방안을 잘 좀 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알겠습니다. 제가 강구해서……

○**신학용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학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식** 다음은 새누리당의 유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동 위원** 국무조정실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공직복무관리관실에서 공무원들에 대해서 행적조사 한다고 알려졌는데 맞습니까?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언론에도 보도됐지만 일부 특정 공무원의 무단이석 또 허위출장 등의 건이 문제가 돼 가지고 그냥 뒤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일정 부분 샘플링해서 공직복무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유의동 위원** 그게 그냥 몇몇 공무원들만 샘플링한 건가요, 아니면 언론에 나온 대로 전수조사를 한 건가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전수조사는 아닙니다.

○**유의동 위원** 전수조사는 아닌가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유의동 위원** 그런데 이런 일을 하시는 건 마땅하고 당연한 것 같아요. 공직을 수행하시는 과정에 있어서 이렇게 근무지를 이탈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전수조사 같은 느낌 또 3개월간의 행적을 일일이 다 적어 내라는 등 이런 건 고위 공직자들 입장에서는 썩 유쾌한 것은 아닐 것 같아요, 일부 자기 동료들이 그러한 잘못을 했다

고 하더라도. 오히려 이게 저희가 염려하는 또 다른 복지부동 그런 걸로 나타나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되니까 앞으로 이런 일을 하시더라도 언론에 이런 이야기가 오해돼서 나가지 않도록 그런 것을 좀 잘 관리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도 공감하고요,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의동 위원** 그리고 제가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3학년 딸아이를 키우는 아빠인데요. 저뿐만이 아니라 한국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그럴 거예요. 대학수학능력시험 제도가 너무 자주 바뀌니까, 그러니까 무슨 대학을 들어가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고 또 수능 시험을 잘 보려고 공부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현실이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게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신경이 쓰이는 게 당연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지난 9년 동안 여섯 번 바뀌었어요. 이거 좀 심하다는 생각 안 드시나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저희들도 늘 그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의동 위원** 아니, 문제점을 너무 자주 인식하시는 거지요. 9년 동안 여섯 번을 바꿀 정도면 한 번 바꿀 때마다 그러면 신경 안 쓰시고 바꾼 것만이 안 되잖아요.

(김기식 간사, 김용태 간사와 사회교대)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그래서 그러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하에서 가급적 이 정부에서는 좀 일관성 있는 입시정책을 가지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아주 강하게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갈 겁니다.

○**유의동 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수능과 관련된 부분은?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기본적으로 지금 수능과 관련해서 아주 기술적인 부분을 일부 보정하고 개선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큰 원칙에 있어서는 지금도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일관되게 기 발표한 정책을 가져갈 그런 생각입니다.

○**유의동 위원** 아니, 그렇게 형식적인 답변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수능과 관련된 어떠한 합의 기구를 만든다든지 이런 대안이 나와야지, 그냥 매번 정권 바뀔 때마다, 교육부의 수장이 바뀔

때마다,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9년간 여섯 번이 바뀌었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교육을 백년지대계라고 하는데 무슨 백년지대계를 9년간 여섯 번씩 바꿨습니까?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라고 선언적인 구호로 그칠 게 아니라 구체적인 안을 만드는 것을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얼마 전에 수능개선위원회가 국무조정실 산하 경인사에 있는 평가원 이걸 교육부 소속으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겠다고 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아직 결론 난 부분은 없고요, 그런 부분이 도움이 되면 얼마든지 저희들이 그런 변환이야 이를 수 있습니다마는 전체 관리체계와의 충돌 문제가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대로 우리 수능제도가 중장기적으로 얼마나 일관성 있게 그리고 우리 교육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늘 고민하는 부분이고요. 교육부에서 4월부터 중장기 수능제도 개선방안에 관해서 지혜를 모으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걸 한번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유의동 위원** 1분만 주세요.

○**위원장대리 김용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동 위원** 지금 학부모들이 아이들 대학 진학하는 문제 때문에 학원을 다녀야 될 입장이예요. 대학입학 제도가 학부모가 학원을 다녀야 될 정도면 이걸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듣지 마시고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이게 학부모를 행복하게 하고 학생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불편하지 않게 하는 거니까 이것 정도는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좀 유념해 주십시오.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유의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용태** 유의동 위원님,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다음, 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국무조정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다.

지속가능 발전과 관련해서 제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대화로 이 문제를 풀려고 노력했으나 아직까지 진전이 없어서 직접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회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2014년 2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동안 특위로 운영이 됐습니다. 제가 위원장이었습니다.

국무조정실장,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개념과 녹색성장이라는 개념 중에 어느 것이 상위개념이고 어느 것이 포괄개념입니까?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제가 그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속가능 발전 개념이 훨씬 더 포괄적인 개념이다, 폭넓은 개념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한명숙 위원** 상위개념이기도 하지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포괄적인 부분을 상위라고 한다면 또 상위고요. 분명한 것은 훨씬 폭넓은 개념은 맞습니다.

○**한명숙 위원** 지속가능 발전이 상위개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체계 수립을 위한 법안이, 이 체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다시 복원시키기 위해서 환경노동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 지금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제가 법안을 발의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상임위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법안소위 때 법안소위 위원장께서 지속특위에서는 어떻게 종합적으로 결과적으로 의견을 모았는가 하는 종합의견서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해서 특위가 마지막으로 회의를 열어서 그동안에 논의했던 지속가능 발전이 상위개념이고 포괄개념이고 전 세계가 거의 채택하고 있는 국정운영의 규범이고 가치이기 때문에 우리도 8년 동안 운영을 했던 지속가능 발전을 다시 복원시켜서 체계를 수립해야 된다는 여야 만장일치의 의견서를 우리 법안소위 위원장님께 제출한 바 있습니다. 모든 것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총리실에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데, 이완구 총리께서 당시 원내대표일 때 지속가능특위 위원장이었던 저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 법안은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리로 가셔서 제가 소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무조정실장께 묻습니다.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까?

-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보고드렸습니다.
- 한명숙 위원** 어떻게 보고했습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지금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특위의 사항 그리고 저희들이 검토한 부분 등에 관해서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 한명숙 위원** 그러면 녹색성장위원회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양립체제로 가는 것을 보고했습니까?
-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그건 ‘여러 안들이 제시가 되고 있다’ 이렇게……
- 한명숙 위원** 아니, 저한테 보고한 것은 양립체제를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아니, ‘그런 여러 안들이 지금 제안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의 검토의견은 대개 이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 한명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두루뭉수리로 ‘대개 이런 식’ 하지 말고, 녹색성장위원회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양립체제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총리께 보고했습니까?
-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의 실무 검토의견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전에 총리님 오시기 전에……
- 한명숙 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왜 이렇게 빙빙 둘러서 어정쩡하게 말씀하십니까?
- 양립체제로 보고하셨지요?
-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 한명숙 위원**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 지금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세계지방정부, ICLEI라고 합니다. 서울시에서 이 국제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죄송하지만 제가 그건……
- 한명숙 위원** 모르시지요?
-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 한명숙 위원** 이런 건 모르면 안 됩니다.
-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잘 알겠습니다.
- 한명숙 위원** 지금 전 세계의 1000명도 넘는 대표들이 모여 가지고 이클레이 세계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 그런데 여기에 유엔의 유네프 사무총장이라든

지 영국의 웨일스 왕자라든지 와서 강연을 하는데 ‘우리나라에도 저런 지도자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 공무원 중에 누구 하나라도 저런 정도의 이해를 가지고 있는,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제가 너무 부러웠습니다. 어떻게 우리나라 공무원들이나 우리나라 지도자들은 앞으로 미래사회를 위한 지속가능 발전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가 없는지……

한 가정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가장입니다. 그런데 손녀딸하고 손자가 같이 삽니다. 그러면 손녀딸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만 더 주십시오.

- 위원장대리 김용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명숙 위원** ‘나도 우리집의 가장이 되고 싶어요’라고 때를 쓰면 가장의 체계를, 그 아버지도 가장이고 손녀딸도 가장이고 손자도 가장이게 만들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지요.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체계를 바로 세워야 됩니다. 녹색성장은 여러 가지 실천단위 중의, 수많은 실천단위 중의 하나입니다.

녹색성장을 MB정부 때 열심히 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체계를 세워서 바람직하게 하자는 겁니다. 이것은 정부 측에서 우리가 공청회를 할 때도 다 인정을 다 했는데 저는 공무원들이 너무……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그렇게 목 터지게 얘기하는데, 관피아 없어야 된다 그런데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인지 어쩐지 관피아적인 사고방식에 찌들어 가지고 한 발짝도 변화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거 변해야 됩니다. 2월에 국회 통과 못 시켰습니다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무리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용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명숙 위원** 4월에 통과시킬 수 있도록 준비해서 보고해 주시고, 지속가능 발전 체계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세계적인 추세고 세계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지속가능 발전에 속해 있던 수많은 사람들은 동력을 잃고 아무 일을 못 하고 있어요.

이완구 총리께서는 도지사를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지속가능 발전, 지자체, 지방정부에서 얼마나 좋은 일을 하시는지 너무 잘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필요하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더 강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2개가 양립하면 예산도 중복 그리고 방향도 중복, 업무도 중복, 이것은 나라를 맡은 공무원으로서 할 것이 아닙니다.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다시 좀 나라를 위해서 전향적으로 생각해서 4월 국회에서 꼭 통과시킬 수 있도록 총리실에 서 원점부터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운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운룡 위원 총리비서실장님, 우리 상임위장에 처음 출석하신가요?

○국무총리비서실장 최민호 예, 그렇습니다.

○이운룡 위원 반갑습니다. 앞으로 종종 뵙겠습니다.

○국무총리비서실장 최민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운룡 위원 국무조정실장님, 존경하는 신동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만 ODA 문제에 대해서 작년에 감사원 감사를 받으셔서 가지고 거기에서 지적된 사항을 잘 참고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아까 답변하셨지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이운룡 위원 그것은 그대로 좀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이운룡 위원 덧붙여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제공하는 최초의 나라인 게 맞지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이운룡 위원 지금 현재 ODA 규모가 2조 4000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국민총소득 대비해서 그 비율로 따져 보니까 작년도 기준으로 0.13%면 OECD 평균치의 반도 채 안 됩니다. 이게 맞는 거지요, 이 2개가?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이운룡 위원 그런데 정부가 2005년부터 계속 목표치를 설정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0.25%입니다.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이운룡 위원 매년 이거 발표를 했어요, 보니까. 그것도 정상회담에 가서 외국에서도 두 차례,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보니까요 2011년에 유엔 총회 대통령연설에서도 언급을 하셨고, 2012년도에는 리우 정상회의에서 또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국제적으로 약속한 사항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이운룡 위원 지금 ODA 사업규모 증가율은, 규모로서는 17.8%로 OECD 평균보다는 높아요. 상회를 하고 있는데, ODA 사업 강화할 필요성이 있지요,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목표치를 지금 계속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니까. 예산 부분 때문에 이렇게 지체가 되나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ODA를 확대해야 된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최근에 굉장히 많은 증가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OECD 개발원조위원회 회원 국가 중에서 최근 5년간은 매년 우리나라가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당초 조금 의욕적으로 제시했던 그 목표, 경제규모 대비 ODA 규모를……

○이운룡 위원 너무 높게 산정을 해서……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최근 우리 국내 재정상황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운룡 위원 하여튼 국제적인 신인도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좀 경주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작년도 국정감사에서 제가 건강보험 비급여 의료체계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 몇 가지 사항을 말씀을 드렸는데 실장님께서도 거기에 공감을 표시하셨고, 그래서 이 부분 지금 현재의 진행상황을 점검을 해 보니까 아직은 더딘 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하셔서 진행상황을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이것은 서면질의로 할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운룡 위원 보건처장님, 현재 건국훈장이 5개 등급으로 되어 있지요?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이운룡 위원** 유관순 열사가 지금 현재 몇 등급으로 되어 있습니까? 5개 등급 중에 몇 등급으로, 훈격이 지금 어떻게 되느냐 이거지요.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3등급이 되겠습니다.

○**이운룡 위원** 3등급입니다. 건국훈장 3등급 독립장입니다.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이운룡 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그 훈격이 좀 저평가된 것 아닌가 해서 높여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군이 잠수함에 항일독립운동가나 국가 위기시에 위기 극복한 선열들에게 그 이름을 따서 잠수함을 명명하는 게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시지요?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알고 있습니다.

○**이운룡 위원** 3번이 안중근함입니다. 안중근 의사는 1등급 받으셨어요. 김좌진 장군께서 4번함, 윤봉길 의사 5번함, 다 1등급이고, 6번이 바로 유관순함입니다.

1등급을 받으신 세 분 바로 뒤에 6번함으로 3등급 받은 유관순 열사 이름이 명명된 것을 보면 유관순 열사의 공훈이 상당하다는 거지요?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그렇습니다.

○**이운룡 위원** 일제도 유관순 열사를 높은 등급의 범법자로 분류를 해서, 33인을 대표했던 손병희 선생님께서 3년형을 선고받았는데 유관순 열사는 5년형을 받았어요. 일제도 그만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위원장대리 김용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운룡 위원** 독립운동의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아주 좋은 근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한번 이거 검토해 볼 의향이 안 됩니까? 어떤 장애요인이 있나요?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런 문제가 여러 번 제기돼서 저희들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 마땅한 방안을 찾는 데 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운룡 위원** 마땅한 방안이 없다는 게 무슨 말씀, 관련된 규정이 없다는 겁니까? 제가 보훈처로부터 받은 답변으로는 동일 공적에 대한 중복서훈을 금지한 규정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 게 있지요?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물론……

○**이운룡 위원** 그것 때문에 곤란하다는 이야기

일 텐데, ‘시일야방성대곡’을 쓴 장지연 이분도 유관순 열사와 함께 3등급을 받았다가 2011년도에는 이 사람의 친일행적 때문에 공훈이 취소됐잖아요?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이운룡 위원** 그러면 반대적으로 해석을 할 때 잘못 저평가된 공훈을 그만큼 상향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글썄요, 그 공훈이……

○**이운룡 위원** 입법이 미비된 차원이라면 행정 자치부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세요.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이운룡 위원** 유관순 열사의 훈격을 좀 높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다시 한 번 논의하겠습니다.

○**이운룡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태** 수고하셨습니다.

1차 질의 마지막인 이상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직 위원** 전주 완산율의 이상직 위원입니다.

조정실장님, 지난해 7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새만금 한중경제협단지 협력을 발표했지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이상직 위원** 후속조치로 올 2015년 1월 양국 경제장관회의의 공동연구에 합의를 했지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이상직 위원** 내년 1월에 경제장관회의에서 그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지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직 위원** 거기에 이제 새만금을 글로벌 자유무역특구로 조성할 계획도 있고요, 한중 FTA 산단도 만들 거고, 아무튼 한중경제협력단지 특화를 하려는 그런 취지로 지금 추진하고 있지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현재 공동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직 위원** 두 번째 질의합니다.

중국은 지금 동해안에 동해벨트로 베이징, 상해부터 청도가 죽 발달되어 있지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이상직 위원** 국제도시, 상업도시, 교통 인프라가 그쪽으로 집중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이상직 위원** 그런데 우리나라 서해의 인천공항이 화물 1위, 여객 1위의 공항인 것 알고 있습니까, 공히?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이상직 위원** 중국은 동해안시대, 우리는 서해안시대가 왔는데, 그리고 거기 보면 안산시화 평택 당진 서산 이렇게 죽 내려오잖아요. 그 밑에 새만금이 있지 않습니까?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이상직 위원** 그러니까 중국 동해와 한국 서해만 연결하면 인천공항도 있고 또 잘될 걸로 봅니다. 그런데 인프라를 보면, 새만금에는 신항만이 지금 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신항만을 구축하고 있는 것 알고 있지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이상직 위원** 거기가 유일하게 수심이 한 15m, 20m 되어 가지고 조수간만이 있더라도 크루저나 큰 대형 컨테이너가 바로 들어올 수 있어요. 다른 데는 지금 조수간만 때문에 못 들어옵니다. 배를 공해상에 세워 놔야 돼요. 알고 있습니까?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이상직 위원** 그런데 중국하고 한중경협단지를 하려고 하는데, 대통령은 하겠다 하는데 국무총리나 다른 정부부처에서…… 공항이 없어요, 국제공항이. 상식적으로 그냥 뭐……

이거 국가사업 맞지요, 새만금이?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이상직 위원**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한중경협단지, 한중 FTA 산단을 하고 동북아의 경제 중심지로 한다고 하는데 국제공항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개별적으로 공항이 지금 현재 있다, 없다 이런 단편적인 문제로 보기보다는 새만금 전체의 틀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 국제공항이 없으면 인천공항으로 오고 청주공항으로 오고 다른 공항으로 사람이 오고, 사람도 불편하지만 물류가 왔다갔다 바로바로 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정부의 의지가 그렇다고 하는데, 대통령 의지가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면 그게

가장 급한 것 아니에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그래서 그런 우선순위나 조합에 관해서는 전문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해서 설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직 위원** 그것을 왜 말하느냐 하면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이 2015년까지 수요예측을 해서 2016년부터 20년까지 반영이 돼요. 올해 지나면 차 떠납니다.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이상직 위원** 한중 FTA로 인해 가지고 농민이나 산업들이, 축산이 피해가 많은데, 시진핑 주석도 해외 관광객을 많이 유치할 하겠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관광 서비스를 활성화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유일하게 흑자 나는 게 관광이예요.

이런 게 있고, 또 거기가 옛날에 농지가 70%이었는데 지금은 산업단지가 70%입니다. 물류 중심, 물류를 생각을 안 해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 줄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PPT를 한번 보세요.

청주공항이 2009년 1월에 저렇게 텅텅 비었는데, 1년 이용객이 19만 명이예요. 지난해 170만 명이 이용하고 올해는 230만 명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저기 주차장이 꽉 찼어요. 국제공항에 항공노선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120시간 무비자 공항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5000만 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15억, 20억이 올 공항이 한국에 없어요, 지금. 중국 시각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오는 공항이, 공항만 있으면 다 오려고 그래요, 터미널이 북적북적하니까.

그런데 한중경협단지를 하겠다는데 국제공항을 안 합니까? 국제공항으로 승격되면, 돈 얼마 안 들어요. 지방채로 하든 BTO 방식으로 해도 돼요, 예를 들면. 인원 몇 명 안 되지 않습니까? 국제업무만, 출입국 하는 인원 몇 명인데 돈이 얼마 안 든다니까요. 차라리 그러면 BTO 방식으로 해라, 지방정부보고 해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냥 승격만 되면 되는 거예요. 돈 때문만도 아니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완구 총리께서 다행히 그 의지를 갖고 있는데, 서해철도를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인천공항에서 장항선을 연결하면 돈이 얼마 안 듭니다. 그것은 알고 계세요, 계획



을?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위원장대리 김용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직 위원 인천공항에서 장항선까지만 해도, 장항선을 복선화하면 그게 익산까지 가요. 그리고 새만금에 간선만 더 내면 그야말로 한중경협단지가 항만 있지 철도 있지 공항 있지, 이 인프라가 제일 중요해요. 그 의지를 보여 주시고.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려면 이것을 추진할 수 있는, 국무총리실에서 조정을 해 줘야 돼요. 지금 새만금개발청이 국토교통부 외청으로 있다 보니까, 차관이 하다 보니까 장관들이 안 모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이상직 위원 추진단에서는 간사 역할을 해 주셔야 돼요. 기재부에서 한중경협단지를 한다고 하는데 흠어져 있잖아요, 일들이. 그러니까 조정실에서 해 주시고.

제가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냈는데 추진지원단을 설치해 주시고, 그 예로 지금 제주도하고 세종시가 있잖아요. 제주도나 이쪽에 인원이 남아돌잖아요. 설립 근거가 있으면 그 인원을 재배치하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새만금사업을 더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사실은 새만금청을 만들어서 했는데 그것이 차관급 기관이고 그다음에 국토부 산하로 있다 보니까 말씀하신 그런 걱정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총리실이 필요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또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별도의 또 총리실 내의 지원조직이 필요한지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같이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들은 늘 조직 이렇게 자꾸 늘리는 것에 관해서는 조금 신중하게 가면서, 필요하다 하고 하면 또 최종 결론은 그렇게 내리겠습니다마는 조직 신설과 관련해서는 늘 종합적으로 차분히 보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태 정회하지 않고 바로 추가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은 3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식 위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관련해

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지금 쓰고 있는 예산이 5000억이 넘습니다. 우리 정무위로 보면 보훈처를 빼고는 사실은 정부부처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업예산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무위에 금융위 공정위 총리실 등 주요 기관이 있다 보니까 제가 보니까 상대적으로 행정감사에 있어서나 예산 부분에 있어서나 국정감사 때 별로 주목받지 못하다 보니까 정말 예산집행에 심각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올해도 결산심사와 예산심사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 지적했던 것처럼 정보통신연구원장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해임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안세영 예.

○김기식 위원 그래서 해임을 하시거나 해임을 못 하시겠으면 원장에 대해서도 해임 이외의 징계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만드셔서, 소위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이 해임 이외에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겠지요. 그러나 어쨌든 관리·감독의 책임을 지지 않는 기관장은 있을 수 없습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안세영 알겠습니다. 관계 규정……

○김기식 위원 관리·감독에 대해서 징계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만들어서 하시도록 하고요. 이러한 회계조작에 대해서 단지 3개월 정직 처분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국무조정실에서는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김기식 위원 그다음에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연구회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국책연구소들의 물품구입과 관련해서 적절한 가이드라인, 기준을 만들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문제의식을 갖고 보겠습니다.

○김기식 위원 또 연구회가 최근에 ‘전문경력인사’ 이렇게 포장은 했습니다마는 퇴직공무원 전문성 활용프로그램이라고 해 가지고 퇴직한 지 3년 이내의 행정부 공무원들에 대해서 연구회 산하기관들에게 월 300만 원, 최대 3년이니까 한 1억 정도의 급여와 연구조교도 주고 그다음에 1인

1실 연구실을 주는 이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하고 있지요, 이사장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안세영 작년도 예산 국회에서 20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김기식 위원 진행하고 있지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안세영 지금 용역 중입니다, 행정연구원에.

○김기식 위원 5월부터 모집공고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다음 달이면 모집공고에 들어가는데 제가 계획서를 받아 보니까 이 계획서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문경영인력을 선정하고 배치하기 위해서 운영심의위원회를 두는데 이 심의위원회는 연구회 사무총장, 관련부처 공무원, 선임직 이사, 기획평가위원회 위원, 연구회 경영지원실장 등으로 구성합니다. 맞지요? 제출하신 보고서에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안세영 지금 확정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행정연구원에 용역 중인데 4월 말에 오고요, 그건 지금 어떻게 할지 실무적으로 왔다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국회에 보고드리고 결정을.....

○김기식 위원 아니, 지금 국회를 상대로 장난합니까! 의원실에다 정식으로 낸 보고서를, 그러면 아직 확정도 되지 않은 보고서를 냈다는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안세영 우리 실무자들이 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태 잠깐만요.

이사장님, 그러니까 진행 중이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보고서를 내신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하겠다고 보고서를 내신 거예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안세영 아니요, 이게 확정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국회 예산 딸 때 이렇게 예결위 쪽에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국회에서 배정이 된 겁니다, 이 예산은.

○김기식 위원 아니, 도대체 연구회 직원들은 무슨 일을 이렇게 합니까! 5월부터 모집공고하겠다고, 제가 그 문서 다 보여 드려요? 국회를 상대로 우롱하는 거예요! 담당직원은 계획서 내놓고, 이사장은 국회 나와서 ‘그건 검토 중인 보고

서입니다’, 국회의원을 상대로 지금 우롱하는 거예요! 그러면 연구회 이사회에서 내는 보고서 앞으로 어떻게 다 확인합니까? 이사장님한테 일일이 다 확인해요?

○위원장대리 김용태 김기식 위원님.....

이사장님, 그것은 다른 사람이 듣더라도 좀 황당한 상황이에요. 5월 달에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공고하겠다고 하고..... 위원이 그 진행 상황에 대해서 물었을 때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시든지 했어야 되는데.....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안세영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고 관계부처하고 국회하고 협의해야 됩니다.

○위원장대리 김용태 알겠습니다.

○김기식 위원 그러면 이것 이렇게 보고한 직원은 누구입니까?

○위원장대리 김용태 김기식 위원님.....

○김기식 위원 어떻게 이렇게 보고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사장한테 결재도 안 받고 보고해요, 의원한테?

○위원장대리 김용태 김 위원님, 질의시간을 쓰시고, 제가 정리를 할게요.

이사회에서는 오늘 이 시간이 끝난 다음에 김기식 위원을 비롯해서 필요하신 위원들에게 그 사항에 대해서 진행상황과 앞으로의 처리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안세영 예, 알겠습니다.

○김기식 위원 아니, 잠깐만요.

○위원장대리 김용태 그렇게 하고 다른 질문을 하세요.

○김기식 위원 이것 보고한 사무총장 이하 직원들 다 저희 방으로 와서 보고하세요.

○위원장대리 김용태 됐습니다. 빨리 추가질의 하세요.

○김기식 위원 재차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태 알겠습니다.

○김기식 위원 지금 이것 허위보고 때문에 질의시간만 다 없어진 것 아니에요!

.....

○위원장대리 김용태 김기식 위원님, 지금 다른 위원 질의하셔야 되니까.....

다음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 국민권익위원회가 강화된 공무원

행동강령을 발표했습니까?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예.

○김영환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외부 강의, 회의 등 신고위반 행위 같은 것 보완됐지요, 그렇지요?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예.

○김영환 위원 그리고 금품수수행위에 대한 징계기준도 마련했고요, 그렇지요?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예, 강화를 했습니다.

○김영환 위원 이걸 잘하신 것 같은데, 1300여 개 공공기관에도 이러한 지침을 전달해서 청렴문화 확산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예.

○김영환 위원 이걸 대통령령으로 하는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 없습니까?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대통령령으로요?

○김영환 위원 예.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저희들이 행동강령을 주관하는 부처이고 저희들이 강화했다는 것은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는데 그것에 의해서 징계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권익위법에 따라서 소속기관에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김영환 위원 글썄, 그래서 대통령 시행령으로 할 수 없냐 이거지요?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그런데 지금 부정청탁 금지법 시행령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부정청탁금지법을 시행령으로 만들면서 저희가 보니까 그 시행령 이외에도 좀 더 강화해야 될 어떤 여러 가지 공무원들의 윤리규정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강화하는 차원에서 아마 이런 것들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영환 위원 보훈처장님, 아까 얘기가 있었습니다, 안중근 문제.

해방됐을 때 대련이 소련군의 치하로 들어갔지요?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그렇습니다.

○김영환 위원 45년부터 51년까지 그렇게 됐습니까?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김영환 위원 그때 그 문서, 일제 통치기관의 문서 등을 대량으로 러시아로 가져갔다는 기록이 있지요?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환 위원 그걸 왜 이제까지 조사를 안 했습니까?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지금 그런 내용이 입수가 돼 가지고 저희들이 현지에 있는 전문가들을 통해서 러시아 측하고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환 위원 그래서 러시아의 그런 문서를 검토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일본에 대해서는 어디에다가 매장을 했는지, 시신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을, 책임을 지고 촉구해야 되고요. 위안부 문제와 같이 이것도 해야 될 문제고요.

그다음에 남북한이 공동으로 대처해야 된다 이겁니다. ‘북한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아니라 보훈처가 북한에 제안을 해서 남북한이 같이 지표조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하여튼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알겠습니다.

○김영환 위원 국무조정실요, 세월호 선체 인양은 언제 누가 결정합니까?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최종적인 것은 아마, 일차 판단은 기술검토TF가 보고서를 내게 되면 관련 절차를 거치고 해수부의 판단하에서 아마 중대본에서 최종 결정하게 되지 않을까, 절차는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환 위원 어차피 이것 지금 인양하는 쪽으로 대통령도 말씀이 있었고 또 여당 대표연설도 있었고 한 것이니까요, 결정이 된다면 4월 16일 1주년 되기 전에 결정해서 이걸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것 건의할 용의가 있습니까?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김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용태 신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우 위원 신동우 위원입니다.

국무조정실장님, 아까 ODA 관계 조금 더 얘기합시다.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신동우 위원 아까 의지를 표명하시고 앞으로 잘하겠다고 그래서 지켜보겠습니다마는 이번에 몇 가지 불거진 이유를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기재부 직원들의 인식 속에는 ‘이것 우리가 직접 해도 됩니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요. 왜 그런가

보니까 이제 국제개발협력위원회라고 뒤서 장관들이 모여서 조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기재부가 주관하는 대외경제장관회의가 별도로 있잖아요. 여기에 똑같이 기재부장관, 외교부장관, 국무조정실장이 들어가요, 저쪽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기서 다 조정이 됩니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고, 또 하나 외교부에서 관장한다 하더라도 무상원조 사업도 근본적으로 예산 과정을 통과하다 보면 기재부가 컨트롤하게 돼 있던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걸 그렇다면 총괄 기능을 기재부로 넘기면 어떤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기재부는 아시다시피 역사가 오래되지 않습니까? 유상·무상에 관한 논쟁……

○**신동우 위원** 좀 짧게 대답해 주세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어느 기관이 적절한지에 관한 많은 논쟁이 있었는데 그 최종 결과는 역시 총리실에서 국제개발협력위원회라는 나름대로의 독립적이고 종합판단을 할 수 있는 곳에서 총괄 조정을 하는 게 좋다 그렇게……

○**신동우 위원** 그러면 그렇게, 기재부 차관도 하셨으니까 이것 분명히 직원들 인식을 바꿔 주셔야 돼요. 나 이것 지켜봅니다.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제가 그건 확실히 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신동우 위원** 그리고 최근에 너무 빨리 규모가 늘고 있다는 인상이 들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 조직이 감당 못 하고 있을 정도로 올라가다 보니까 내 느낌은 이게 그럴 경우에는 꼼꼼히 진짜 필요한 것 위주로 하지 않고 사업, 돈은 늘어나니까 규모를 먼저 늘려놓고 한단 말이지요. 좀 막 쓰는 경향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도 컨트롤 좀 해 주세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저희들이 종합조정 잘하겠습니다.

○**신동우 위원** 하나, 이것 통계를 놓고 국무조정을 해야 되니까……

OECD 국가 중에서 말이지요, 2살 미만 애들을 어린이집에 맡기는 비율을 봤어요. 이게 높은 나라가 덴마크 65.7%, 네덜란드 60%예요. 그런데 이 나라들은 영아 엄마의 취업률이 70%예요. 맡기는 게 일리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나라는 말이지요, 0세 이하 우리 엄마들의 취

업률은 30% 갓 넘는데 최근에 보육시설에 맡기는 비율이 36%에서 66%로 경총 뛰었어요. 내가 왜 이런 얘기하는지 아시지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신동우 위원** 이것은 정책미스로 저는 봅니다. 지금 전문가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2살 미만 짜리들은 자기를 돌봐 주는 사람이 자꾸 바뀌면 그걸 감내할 수 있는, 스트레스 받아서 못 견디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 엄마가, 아니면 누가 봐 주더라도 일관되게 한두 사람이 해야 되는 건데 매일 바뀔 경우 문제가 온다는 겁니다.

바람직한 건 사실 엄마가 해 주는 게 좋은 거지요. 우리 통계를 보면 엄마들이 일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에 맡긴다는 게 통계로 나오지 않습니까?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신동우 위원** 마무리할게요.

○**위원장대리 김용태** 예, 마무리해 주십시오.

○**신동우 위원** 엄마가 기르면 양육수당 20만 원 밖에 안 주고 어린이집에 맡기면 77만 8000원을 주니까 손해 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양육수당을 대폭 올리시자고요, 올려서 엄마들이 하도록.

내가 시중에 학부모들 얘기 들어 보면 한 40만 원만 주면 기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한 애당 37만 원의 재정을 득 보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돈보다도 말이지요, 엄마가 기르는 게 맞는 거지요.

조정 좀 해 주실래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문제인식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있고, 애초에……

○**신동우 위원** 고칠 것 같아요, 이번에?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신동우 위원** 고칠 수 있어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아마 또 견해를 달리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집에서 애들을 키우는 것보다는 밖에 어린이집에 가는 것이 훨씬 더 인센티브를 많이 갖게 되는 이런 구조로 있기 때문에 아마 안에 두고 있을 요인보다 밖으로 밀어내는 요인이 더 크다는 그 부분이 있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또 여러 이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태** 이상직 위원님, 질의해 주

시기 바랍니다.

○**이상직 위원** 실장님, 일 잘하시는 실장님과 일 잘하시는 총리님이 있어서 좀 안심이 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좀 알고 계신가 한번 질문드릴게요.

수자원공사가 용담댐, 진안·장계 댐 상수원에서 원격감시장치를 조작해 가지고 진안하수처리장은 총 60회, 장계하수처리장은 총 142회 오폐수가 제대로 처리 안 되고 유입됐어요. 전라북도 뿐만 아니라 충청도 분 한 110만 명이 그 오염된 식수를 사용하고 있고, 이유를 보니까 국가공공기관이 경비절감을 위해서 오폐수를 조작을 한 거예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직 위원** 팩터값을 조작했는데, 공직복무관리실도 참여했나요? 여기 지금 하고 있어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현재 환경부에서 감사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이상직 위원** 그 사태파악을 하시고요. 이게 지금 용담댐만의 문제가 아닌, 가서 현장조사 안 하고 원격으로 하고 그냥 수치가 부적절하게 나오면 팩터값을 조작해서 하는 거니까 전국이 마찬가지로 봅니다, 저는. 그 대책을 세워 주시고요.

국민권익위원장은 국민권익위 차원에서, 한 120만 명 정도 돼요, 이 대책 마련에 대해서 실태파악을 해 가지고 알려 주십시오, 권익위원장님!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조금 전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요?

○**이상직 위원** 예, 지금 모르고 계시지요?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예, 사실은 처음 들었습니다.

○**이상직 위원** 대한민국 국민이 오염된 물을 먹고 있어요, 조작된 수치 때문에. 그것 좀 알려 주시고요.

조정실장님, 규제기요틴 과제로 114건을 했잖아요. 거기에 보면 지방자치체의 건설산업조례, LED조명조례, 로컬푸드조례 이게 들어가 있어요. 거기 보면 로컬푸드 같은 경우는 박근혜 대통령조차도 농업 창조경제·사회적경제 모델이라고 칭찬한 겁니다. 창조경제 아시지요, 지금?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이상직 위원** 창조모델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농민들이 직접 제작한 걸 유통과정 없이 바로 납품하는 거예요. 이건 농협하나로마트를, 대기업을 살려 주는 규제예요. 이게 없으면 유통마진이 없기 때문에 품질 좋은 걸, 농민은 소득이 증가하고 소비자는 질 좋은 걸 살 수 있는데, 농협하나로마트는 50%가 중국산입니다. 이것은 지자체별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 했다는…… 지자체별로 담합을 못 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느 특정단체하고 수의계약을 못 하게 하면. 이게 좋은 모델인데 이렇게 하고 있고요.

건설산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잘못되어 있어요. 뭐냐면 지역에서 지금 80억 이상 되는 대형 건설공사는 경쟁 차원 때문에 외지업체가, 대형업체가 다 가져가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지금 새만금 지역만 보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태** 예,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상직 위원** 새만금 지역은 건설사 중에 10억 미만의 실적 신고한 업체가 3년 연속 80% 수준이고 외지 대형업체가 독식을 다 해요.

그런데 이게 경쟁 제한성의 잣대는 아닌 것 같아요. 뭐냐면 새만금특별법 제53조에 보면 지역기업 우대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전라북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또 현행 국가계약법 제25조에는 “기재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의 경우 의무적으로 지역 공동도급을 규정할 수 있다.”, 오히려 고시를 해 가지고 지역경제를 살려야 될 텐데…… 헌법 제123조제2항의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와도 위배되는, 헌법에 위배돼요. 또 제123조3항에 국가는 중소기업 보호·육성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경쟁 차원이 아니고 지자체끼리 담합만 못 하게 하고 수의계약 못 하게 하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은 오히려 잘 보호를 해 줘야 할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기본적으로 문제인식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일정 부분 이해를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규제개선, 규제개혁을 함에 있어서 다수 국민한테, 소비자한테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이냐, 그리고 우리 국가경제에 총체적으로는 어떻게 더 플러스일 것이냐 이런 관점에서 그래도 기본적으로 경쟁제한보다는 경쟁촉진이 좋다, 이런 관점에서 죽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안에 관해서 특수사항이 있는지 그것은 또 그대로 검토를 하니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규제개혁을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직 위원 추가질의 때 할까요? 추가질의할까요, 마무리할까요?

○위원장대리 김용태 마무리하십시오.

○이상직 위원 규제완화, 경쟁제한에 대해서 제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창조적인 로컬푸드 모델을 경쟁을 제한하면, 공정거래위에 질의를 하니깐 각 시도 간의 진입을 막는다 이거예요. 각 지자체별로 창조 모델로 잘하고 있는데 왜 남의 동네가 합니까? 그것은 지자체에서의 공정한 경쟁만 하면 되는 거고,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 중소기업들은 정부가 보호해야 할 헌법정신입니다. 이것은 하급법 가지고 할 것은 아니고요, 그것을 해 주시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한중경협단지 말로만 하지 마시고요. 국제공항 돈 얼마 안 들어갑니다. 승격만 하면 되고요. 철도는 인천공항에서 충청도까지 놓으면 안 되고 장항선을 연결하면 돈 얼마 안 듭니다, BOT 방식으로 하든지. 그러면 장항선이 군산을 통해서 익산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인천공항에서 새만금 한중경협단지 갈 때 용산와 가지고 익산 가 가지고 버스 타고 가면 4시간 걸리는데 그게 어떻게, 1시간이면 가는 길을 놔두고…… 그러니까 동해안 시대에 맞게 한국의 서해안 시대를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이 잘 아실 거예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태 수고하셨습니다.

김을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을동 위원 최근 침탈의 역사를 반성하기는 커녕 제국주의 야욕의 노골화를 일삼던 일본 아베 정부의 망동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한국이 독도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어불성설의 내용을 일본의 모든 중학교교과서에까지 넣어서 앞으로는 일본 중학생 모두가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배우게 됩니다.

여기에 맞서려면 무엇보다도 독도 교육을 강화해야 되는데요. 우리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독도 역사교육의 의무화가 필요한 시점으로 다가왔습니다.

박승춘 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일본의 독도 역사왜곡에 대해서 또 도발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 오셔서 독도학교를 2013년 2월에 열었는데요. 체험교육을 위한 독도 관련 시설물이 지금 현재 거의 전무한 실정인데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알고 있습니다.

○김을동 위원 그 대책은 어떻게 세우지요?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그래서 독도 체험교육을 위해 가지고 작년에 예산을 기재부에 신청했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 돼서 금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하도록 해서 실질적으로 체험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을동 위원 지금 직접 먼저 보고 하는 체험교육이 중요한데요.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그렇습니다.

○김을동 위원 지금 현재 시설물도 없고요, 연간 한 8000명 교육을 단 4명의 직원들이 어렵사리 맡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체험시설이 질적 저하가 되는데 이것 원활한 교육·운동을 위해서 급히 추가예산, 인원배정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맞습니다. 시설도 늘리고 교사도 더 확보하고 할 수 있도록……

○김을동 위원 그것 가능하겠습니까?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을동 위원 지금 가장 필요한 시점입니다.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맞습니다.

○김을동 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학생들에게 독도에 대한 관심과 영토주권의 중요성을 제고시키는 그런 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합니다. 적극 검토해서 확실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독립기념관에 있는 독도학교 활동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고, 또 하나는 독도의용수비대의 활동이 있습니다. 이런 활동도 적극적으로 알려서, 우리 국가유공자분들의 희생과 공헌이 결국 우리 영토를 찾고 수호하기 위한 활동이었기 때문에 보훈 입장에서 이것을 적극적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을동 위원** 조금 시간을 할애해서 쓰겠습니다, 아까 본질의 못 해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기획재정부의 반대가 있어서 독도학교 확대·운영에 차질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독도학교 확대하는 문제……

○**김을동 위원** 이것 예산이 좀 느니까 여기서 반대를 해 가지고 확대·운영에 차질을 빚었다, 이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그것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을동 위원** 그러세요?

이완구 총리님께서 어제 독도 문제로 긴급 기자회견까지 여셨지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어제 일본 역사왜곡 문제 관련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김을동 위원** 국무조정실장으로서 총리님 뜻을 잘 받드셔서 일본의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용태 간사, 신동우 위원과 사회교대)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을동 위원** 그래서 그런 하나의 일환으로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일본의 이 만행을 ‘일제 만행 기록관’ 같은 것을 세워서 우리 독립기념관에 계속 상설전시를 해 놔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일제의 반인륜적 행태를 국제사회에 고발하고 지구촌이 이를 공유하는 주도면밀하고 치밀한 작업이 앞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무슨 도발이 일어날 때마다 말로만 단호한 대응이라고 할 뿐 정말 무능한 외교능력은 아닌지, 실질적인 대응이 잘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근본에서부터 재점검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그 한 가지 제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관련 사료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남기는 일이 그 시작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총리실이 나서서, 보훈처는 외교부와 함께 실제 기록유산이 되도록 힘을 모아 주시고요, 신속하고도 정확한 부처 간의 소통과 조율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한번 그런 제의를 합니다. 그렇게 해 주겠습니까?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을동 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때문에 쫓겨서 말을 못 하겠네요.

○**위원장대리 신동우** 김을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석 위원** 사전에 준비했던 건 아닌데 오늘 ODA 관계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ODA 관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조 4000억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국제사회와 약속한 것에 비해서는 약속을 못 지키고 있고 계속 후퇴가 되고 있어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국제사회와의 약속도 그렇고 또 우리가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유일한 나라가 되었고 또 우리가 OECD DAC에도 가입한 나라고, 그래서 그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늘릴 수 있을 만큼 규모를 최대한 늘려야 된다는 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유상원조는 EDCF, 기재부가 관리하고 무상원조는 외교부, KOICA가 관리한다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지방자치단체 등을 비롯해서 관련 기관이 수십 개가 돼요. 이것 통합시스템을 운영해야 된다, 통합시스템을 운영하되 사전협의제도, 특히 지자체는 협의제도를 갖춰야 됩니다. 같은 나라, 심지어는 같은 지역의 비슷한 사업에 지원해 놓고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는 것이 지자체를 비롯한 각종 기관입니다. 따라서 통합시스템을 하되 사전협의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유상원조, EDCF를 준 뒤에도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만기가 돼도 갚지를 않기 때문에 자꾸 연기를 해주는데, 이 점에 있어서는 정말로 어려운 나라에 관해서는 우리가 먼저 무상원조를 늘리는 방향으

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유상원조가 사실상 의미가 없는 나라가 많기 때문에 같이 주면서도 무상원조가 더 효율적이다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는 유·무상 시스템 연계가 되면 한국 업체가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마련해야지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업체하고의 연계 관계도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중점협력국이라고 그래서 5년마다 많이 지원하는 나라를 선정하는데 대개 저희들이 점검을 해 보면 더 급한 나라 또 외교적으로 우리한테 더 절실한 나라가 배제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5년 계획은 짜되 좀 탄력성 있게 유지함으로써 우리가 원조의 효과를 충분히 살릴 수 있어야 된다, 이 문제는 우리 정부부처도 많이 논의를 했고 또 저 자신도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것인데 정말로 플랜이 나온 것에 대해서 실행을 담보해야 된다, 많은 논의가 있었고 많은 계획과 플랜이 나왔지만 제대로 시행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누가 의지를 가지고…… 2조 4000억이면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계속 커져야 되는 것이고, 의지를 가지고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갖는데 우리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신동우 위원, 김용태 간사와 사회교대)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존경하는 박병석 위원님, 누구보다도 이 문제에 관해서 꿰뚫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소에 가지고 있는 문제인식 또 앞으로 개선해야 될 방향성에 관해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인식을 갖고 한 치의 오차도 없도록 잘 챙겨서 효과성이 극대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태** 수고하셨습니다.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경기 군포의 이학영입니다.

우선 국무조정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무조정실장님, 론스타가 현재 외환은행 매각 승인에 관해서 보상하라고 하면서 약 5조 원 규모의 ISD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영 위원** 그래서 지금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TF팀이 만들어지고 있지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이학영 위원** 그런데 이 TF팀이 과연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근본 원인인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다 관계가 있는 분들께서 지금 대부분 TF팀에 계세요. 우리 실장님께서도 은행제도과장이었을 당시에 은행 대주주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결국 론스타에 외환은행이 매각됐고 10년 뒤에 론스타는 어떤 책임도 없이 이렇게 또 다시 팔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항간에서는 실장님도 여기에 무관할 수 없고 도와준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또한 금융정책과장이었던 임종룡 현 금융위원장께서도 관련이 있고, 기획재정부를 대표해 TF에 참여하고 있는 주형환 차관께서도 관련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실무자로서 관련된 분들이 대부분 TF팀에 있어서 제대로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 도의적으로라도 TF팀에서 다 사퇴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실제로 더 무관한 분들이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입장은 이따 끝나고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나라 자살 현황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현재 사망자가 해마다 26만 6000여 명인데 그중에 1만 4000여 명, 한 1만 5000명이 자살자입니다. 심각하지요. OECD에서 10년 넘게 우리나라가 1위입니다. 국가의 기본 책무가 국민 안보입니다. 그런데 국민 스스로 절망해서 죽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심각한 일입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번개탄·연탄의 사용을 금지하자랄지 이렇게 정말 대중적으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탁상공론에 그치고 있습니다. 핀란드 같은 나라는 실제로 자살대책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대비를 해서 줄인 사례도 있습니다.

내가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국무조정실 산하에 대책위가 있지요? 2013년 이후에 거의 열리지 않았어요. 이제라도 정말 국민을 지키는 일에, 세대별로 근본적 원인을 다 세우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위원장대리 김용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청년층·노인층 또 여성층에 대한 자살의 원인이 다 따로 또 심각하게 다 다름



니다. 그에 대해서 사회적인 대안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향후 종합대책을 수립 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고 빨리 조정실에서 종합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두 번째 말씀해 주신 자살과 관련된 문제 인식에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OECD 최고의 자살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오명을 벗기 위해서도 여기에 대한 범정부적인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요.

현재 제3차 자살예방 종합대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완료할 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해지면 저희들이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론스타 쟁송, ISD 소송과 관련해서는, 2003년 매각 건과 관련해서는 수없이 국내의 여러 법절차를 거쳐서 확정된 부분이고 그 이상에 관해서는 제가 개별적으로 드릴 말씀은 많습시다. 마는 이것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국익과 관련된 부분이라 필요하다면 비공식적으로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개적인 말씀은 혹시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삼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태**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 서울시 강동을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영입니다.

권익위원장님, 3년간 전체 접수 민원을 보니까요, 꽤 많습니다. 아주 많고, 그것 처리하시는 데 굉장히 많은 노고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장방문 건수가 9.2%밖에 안 돼요. 좀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동신문고도 하신 것 같은데, 보니까 3개월 동안 6개 지역을 다니셨더라고요.

그때 접수된 민원 건수가 310건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매달 민원의 날을 지역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6개 지역에 3개월 동안 310건, 굉장히 숫자가 적습니다. 좀 이걸 적극적으로 하지 않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저희들이 가기 전에 미리 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해서 민원인들한테 홍보를 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적은 숫자로 평가됐다면 저희가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걸 확실히 적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기준치가 있거든요. 좀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훈처장님!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이재영 위원**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아요.

이것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태극기 찾기가 참 힘듭니다. 태극기 보급 좀 많이 하는 데 신경 쓰셔야지요.

그리고 무궁화 찾기는 왜 이렇게 더 힘듭니까? 제 기억에 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무궁화 굉장히 많았거든요. 요즘에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저는 이게 보훈처장님께서 하셔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우리 보훈처에서 아시다시피 제가 처장 부임한 이후에 전국적으로 태극기 거리를 만들고 또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전국적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많이 보급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최근에 또 행자부가 태극기 달기 운동을 시작해 가지고 지금 많이 보급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무궁화는요?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무궁화는 아직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무궁화도 하세요.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알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무궁화 삼천리’, 도대체 무궁화는 어디가 있습니까?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리고 국무실장님, 국정과제 신호등이라는 게 있나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이재영 위원** 이게 뭐니까? 색깔이 뭐 뭐가 있지요? 그냥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이건가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이재영 위원** 청년실업에 대해서 노란색이 나와 있어요. 알고 계세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이재영 위원** 청년실업이 노란색입니까? 빨간색보다 더한 색깔이 있으면 그 색깔을 입혀도 지금 시원치 않은데 노란색이 말이 돼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이제 모든 대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일단은 미흡하다, 미흡하지만……

완전히 이걸 대책으로써 더 이상 우리가 쳐다보기 어렵다 하는 정도가 빨간색으로 가는 거고요. 일단 미진하고 청년실업의 문제가 심각하고 정부의 더 적극적인 노력과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문제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 노란색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것 하여튼 국무조정실에서 보내는 사인이 미약하다라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좀 시정해 주시고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이재영 위원** 그리고 ODA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차관으로 계실 때 제가 ODA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기억하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잘 알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파리 한복판에서 우리 양 부처의 사람들이 주먹질 빼 놓고 말싸움을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창피하고 한심합니다. 그렇지요? 이 사람들 징계 내렸나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그때 뭐 나름대로 소명들 하고 해서 저희들이 이걸 구조적으로 문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해서, 외교부하고 기재부하고 담당 과장들 교체를 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 구조적 개선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요즘에 일본 보면요, 참 한심해 죽겠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시스템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들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뉴 자이카(New JICA)입니다.

그것도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위원장대리 김용태** 이재영 위원님, 추가로 하시겠습니까, 지금 더 하실까요?

○**이재영 위원** 추가 안 하고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태** 예, 알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서 도입해서 우리도 정리를 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평상시에 우리 존경하는 박병석 위원님처럼 무상이 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무상원조·유상원조,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봤을 때 유상원조가 의미가 있다, 그것까지도 받아들이겠어요. 하지만 컨트롤타워는 필요합니다. 그런

데 그것 기재부에서 해서는 안 돼요. 알고 계시지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이재영 위원** 거기 계셨기 때문에 거기에 애착 좀 갖지 마시고요, 이것 정리하는 것 착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지금 국무조정실에서 전체 총괄 조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재영 위원** 실장님 안 계시면 또 조정 안 돼요. 실장님은 잘 아시니까 조정한다고 하시더라도 다음 분이 이 부분에 있어서 관심도 없기 때문에 조정 안 된다고요. 아시잖아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유념해서……

○**이재영 위원** 시스템적으로 좀 고착시키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용태**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보충질의의 마지막 순서인 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사실 안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 주셔서 잠깐 하겠습니다.

세월호와 관련해서 정부에다 요청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도 총리실에서 일을 해 봤기 때문에, 제가 총리실을 질타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어서가 아니라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상당히 진정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슬픔을 당한 국민들이 위로를 받아야 되고 힐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상처를 줄 수가 있고, 그래서 제가 한두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이 만들어졌는데 이 시행령은, 우리가 보통 때 보면 특위가 만들어졌을 때 공무원을 파견하면 대부분은 지원해주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조정하고 종합하고 해서 세월호특조위가 상당히 무력화될 수 있다 하는 문제점이 하나 있고요.

바로 그때 배·보상금 문제가 발표가 됐는데요, 유가족과 야당, 시민사회 등이 시행령 폐기를 요구하고 있을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수 언론들이 앞다퉈서 ‘8억이네’ ‘4억이네’ 1면에 기사를 써 냈는데요. 그 금액을 보면 이미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국민성금으로 조성된 위로지원금까지 포함되

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한명숙 위원 그래서 이런 수령액을 산출할 때 국민들이 보기에는 수역이 모두 국민 세금으로 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여론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가족들이 이제는 슬픔을 넘어서 엄청난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행령의 개정을 요구하는 와중에 이 배·보상금을 국민의 세금으로 전부 지급하는 것과 같은 그런 여론전을 펴고, 가족을 잃은 분들에게 이러한 싸움이 꼭 돈의 프레임에 가두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비치기가 정말 쉬웠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수습비용도 5500억이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아직까지 인양 여부가 확실하게 결정이, 방식을 A로 할지 B로 할지도 결정이 안됐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태 예, 마무리해 주십시오.

○한명숙 위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비용이 상당히 크게 차이가 나는데 결정되지 않은 선체 인양 비용까지 포함시키고요. 또 청해진해운에 구상권을 청구해서 앞으로 확보할 금액까지 포함을 해서 하고, 또 국민들이 낸 세금 1000억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꼭 국민 세금으로 나가는 것같이 발표하는 것은 상당히 국민들에게 아픔을 준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내역을 명확하게 밝히든지 진정성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야 그 사람들도 마음문을 열지 계속 정부가 이렇게 나가면 그 사람들이 마음문을 열지 않습니다. 마음문을 열지 않으면 진상규명도 제대로 안 되고,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초석이 될 텐데 실패하고 만다는 거지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애타게 여러 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4월 17일 날 가서도 ‘한 명까지 구조하겠다’, 또 한 달 이후에 청와대로 불러 가지고도 ‘환을 풀어 주겠다’,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공무원들이 전혀 뒷받침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는 그래서 총리실에서 총괄하시는 분이시니까 이런 걸 할 때 면밀히 살펴 가지고 정말 진정

성이 전달될 수 있도록, 정말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총괄하는 데 세심히 유념해서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태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회의 시작한 지 거의 3시간에 육박합니다. 우리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 많이 힘드실 텐데요. 생리적인 현상도 있을 텐데 그래도 조금 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정회 없이 마무리를 짓는 것이 서로 간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재보충질의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보충질의는 네 분이 신청하셨는데요. 위원님들, 일단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깐요, 재보충질의는 3분으로 할 테니까 각별히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기식 위원 재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식 위원 재보충질의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 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님, 잠깐만 일어나 주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 자료가, 밑에 보이시지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안세영 예.

○김기식 위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공식 문서로 저희 방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따라서 지금 5월 초에 전문 경력 퇴직공무원 모집에 들어가서 5월 중에 선정하고 5월 말까지 탈락자한테는 개별 공지 하겠다, 이게 지금 다 나와 있는 안이거든요. 자료를 이렇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보고자료로, ‘김기식 의원실 보고자료’ 이렇게 제출을 해서 놓고 ‘아무것도 확정된 게 없습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안세영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식 위원 잠깐만요. 작년 예결위 과정에서 없던 예산안을 20억을 편성해서 올해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보고했는데 아직도 확정된 게 없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안세영 그런데 위원님, 오해하신 것 같은데요.

○김기식 위원 제가 질의하려는 게 아니고요.

정말 제가 시간관계상 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업무 보시면요, 이사장님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위원장대리 김용태** 김기식 위원님, 아까 그것 정리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기식 위원** 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사장님이 결재하셔서 저한테 다시 보고를 하시고,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통해서 퇴직공무원은 3년 동안 취업 못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 퇴직공무원들을 각 부처가 관할하는 연구소의 직원으로, 연구원으로 두어서 3년 동안 용돈벌이 시켜 주는 수단으로 쓰려고 하신다면 이번 결산심사에서부터 시작해서 내년 예산에 절대 이 예산은 반영될 수 없다는 점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계획을 만드셔서 저희한테 다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안세영**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태** 빨리 질의 시작하시지요.

○**김기식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국무조정실장님, 지금 방금 언급한 공직자윤리법이 개정이 돼서 이제 강화되었지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김기식 위원** 그에 따라서 시행령을 개정을 했지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김기식 위원** 그런데 원래 그 시행령의 입법예고안에는 취업 제한 대상에서 ‘소속하였던 기관의 업무’라고 되어 있던 것을 굳이 둘로 분류했습니다. 본부·본청에 소속했던 경우와 본부·본청의 소속기관에 소속했던 경우로 나눠 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나면, 쉽게 얘기해서 대검에 있었을 때와는 달리 부산지검에 있었으면 부산지검에 관련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해도 되는 거고,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예를 들어서 광주지역이 아닌 곳에 있는 어떤 법인에 취업하는 것은 예외가 되는…… 그런데 우리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국세청이나 검찰이나 법원이나 이런 데는 다 지역순환보직을 하지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김기식 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마지막 근무지가 어디냐라고 하는 문제는 우리가 취업 제한을 하려고 했던 문제와 연관해서 보면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회가 애써 공

직자윤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놓은 것은…… 이렇게 시행령에서 일종의 구멍을 뚫어 주는 이런 것 하면 안 되지요. 아시고 있었습니까?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차관회의·국무회의 통과했기 때문에 저도 알고 있습니다.

○**김기식 위원** 그러면 이것 취업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이런 편법을 쓰셨습니까?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그것은 아니고요. 아마 검찰 부분에 관해서는 법사위에서도 일부 논란이 있어서 법에서 정확히 적지를 못하고 아마 일정 부분 법원 등 이런 종합 사정을 감안해서 정하라고 시행령으로 위임해 준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 논의 과정에서 법원하고 검찰의 업무 특성을……

○**김기식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국세청이나 검찰 같은 힘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지금 또 힘을 쓴 건데, 제가 작년에도 지적했던 세우회 문제에 대해서 현직 공무원들이 영리단체 만들어서 운영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국무조정실에서 감사해서 조치하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그때도 저희들도 문제인식을 같이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김기식 위원** 저희 방에 보고를 했는데 그 점과 관련해서 국무조정실은 지금 아무 조치를 안 하고 있고요.

권익위원장님, 그 점과 관련해서 권익위원회에서 조사를 하셨지요?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예, 조사했습니다.

○**김기식 위원** 공무원 복무규정을 위반했다라고 판단하시고 제도를 개선하도록 권고하셨지요?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권고는 아직 안 했어요, 권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기식 위원** 그런데 그 권고라는 것은 사실은 거부했을 때 효력이 없지요?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없습니다.

○**김기식 위원** 그래서 제가 국세청에 물어봤더니 그냥 그대로 하겠다고 합니다. 정말 국세청이 힘이 세구나, 참 검찰이나 국세청이 이제 보니까 관료들 사회 안에서도 위에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게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위원장대리 김용태** 1분 내로 정리해 주십시오.

○**김기식 위원**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관피아 척결 문제라든가 공직사회 부패를 척결하거나 공직사회의 청렴성이나 윤리성을 강화하겠다고 하는 것에서 어떻게 이렇게 국세청이나 검찰이나 이런 데는 예외로 계속 가고 있나요?

국무조정실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공직자 유관단체에 관련된 문제 제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큰 틀에서 문제인식을 같이하고 인사처에 그 실태를 파악해서 조사를 하라 이렇게 해서 지금 아마 4월까지 일단, 지금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걸 정상화시키고……

○**김기식 위원** 잠깐만요. 국가기관인 권익위에서 공직자 복무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시정하도록 권고를 내리지 않았습니까? 다만 그 권고의 법적인 강제효과가 없기 때문에, 국가기관이 판단을 했으면 그것을 반영해서 국무조정실에서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그래서 지금 인사처하고 권익위에서도 작업을 했으니 저희들이 같이 어울려 가지고 종합판단을 한번 하겠습니다.

○**김기식 위원**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태** 수고하셨습니다.

김을동 위원님 재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을동 위원** 최민호 국무총리비서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올해가 광복 70주년이자 또 분단 70주년을 맞는 해인데요, 현재 반세기를 넘는 시간 동안 남과 북이 다른 체제, 다른 이념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통일 후 남북이 하나 되는 데에는 과정상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통일비용뿐만 아니라 분단비용을 따져야 할 때고 통일을 향한 발걸음을 과감히 내딛어야 할 그런 시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우리가 통일으로써 얻는 편익과 한반도의 발전가능성에 대한 이득이 훨씬 크겠지만 우선 통일에 소요될 이런 천문학적 비용에 대해서는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현재 대통령 직속으로 통일준비위원회를 설립하고 한반도 통일시대 준비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추진 중인데요, 통일기금 마련에 대한 정부 차원의 무슨 구체적인 계획이나 진행 중인

어떤 사안이 있습니까?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이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을동 위원** 예.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말씀하신 부분, 통일기금과 관련해서는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습니다. 현재 기금 부분이 좋은지 아니면 실제로 그 소요가 발생했을 때 국내외의 여러 재원 소스를 활용해서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에 관해서는 여러 견해를 달리는 논쟁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종합적으로 아마 통준위나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을동 위원** 그래서 늘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디서…… 그것 징수의 개념 아닙니까, 여러 가지 지금 논의가 되는 게?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김을동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적인 합의가 없는 통일재원 마련이라는 게 결국은 분열만 부추길 거다, 그래서 오히려 추가적인 비용이 비효율성 때문에 초래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몇 년 전에도 아이디어를 냈었는데 그 징수의 개념이던 통일세 대신에 우리가 국민의 자발적 참여로 가는 통일복권을 발행하면 어떻겠는가,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비용을 마련하는 그런 제안을 제가 하고자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민의 의지를 하나로 모은다는 점에서 오히려 징수 대신에 그것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선 사전적으로 돈을 확보를 해 놓을 것이냐, 그러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세금 형태나 방금 말씀하신 복권 등을 활용한 재원조달이나 여러 방안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 형태는 저희들이 검토 가능하다고 보고요.

다만 우선 이 기금조성이 이런 방식이 좋을지에 관한 판단이 있을 필요가 있고요. 또 복권기금이라는 것은 복권 매입자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런 부분에 전 국민이 동참하는 것이 좋은지, 복권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하는 것이 좋

은지 등에 관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을동 위원** 여기에서 한번 같이 놓고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용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직 위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안세영 이사장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안세영** 예.

○**이상직 위원** 제가 뭘 하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함께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정실장님이나 비서실장님은 근거가 있으면 같이 함께했으면 하는 소망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IT시대에서 이제 IT를 접목한 BT 또 CT로 가고 있잖아요, 이사장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안세영** 예.

○**이상직 위원** 각 지역별로 스토리텔링으로 가고 CT 문화국가로 가고 있는데, 문화강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삼국시대부터, 신라·고구려·백제부터 해 가지고 죽죽 오는데 안타까운 현상이 뭐냐 하면 해방 후 일제가 의도적으로 한 것으로 인해 가지고 행정명이 다 바뀌었어요.

예를 들면 사람 이름을 창씨개명한 것은 본인이 알기 때문에 아버님들이 자기 아들을 바꿔 줬는데, 또 철탑에 쇠파이프 박고 뭐…… 건물 같은 것은 다 뽑아냈어요, 보이니까.

그런데 지명하고 산 다 바꿨어요, 행정명을. 지금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준비하려고 하고 있는데 해방 후에 아무 생각 없이 일제가 의도적으로 바꾼 것을 바꾸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용두산이면 ‘용 룡(龍)’ 자에다 ‘머리 두(頭)’인데 계두산으로 바꿨고, 계룡산은 ‘용’ 자가 ‘용 룡(龍)’ 자인데 ‘쓸 용(用)’ 자로 바꾸고, 의도적으로 전 국토를 이렇게 바꿨어요.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행정명을 쓰는데, 지금 더 시급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도로명을 또 짝 바꾸게 되어 있잖아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안세영** 예.

○**이상직 위원** 안행위에서 바꾸기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완전히 다 바뀌는 것입니다. 원래 스토리가 있는 그런 지명이나 이것을 땅에 다 묻고 그냥 콘크리트를 두 번 치는 것이예요. 그러면 그 스토리 가지고…… 그 지역이 뭔지를

몰라요, 어르신들이 다 지금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는 도로명을 원 위치 시켜라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런 것을 행정연구원 차원이 아니고 연구회에서 예산을 많이 주고, 또 안행위에서 도로명을 하더라도 원래 명이 있고 원래 터전의 스토리가 있는데 그런 것을 발굴해 가지고 후세에 이어지게끔 이렇게 해야 돼요. 지명 찾거나 스토리, 왜 과거에 이런 지명이 됐나, 다 그 지역에 맞는 친환경적으로 지은 이름들이예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한국행정연구원에 예산이랑 지원하고 있고 의지가 있습니까? 한번 이사장의 말씀 들어 보고 싶습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안세영** 저는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외국 가면 조그마한 마을도 과거 역사에 대한 것이 잘 보존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떤 일제의 잔재가 있고 이런 것이 있지만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이상직 위원** 제가 한 5초만 말씀드린 후에 말씀을……

지자체장들이 바뀌면서 자기 생각대로 또 막 이렇게 해 버려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위원장대리 김용태**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상직 위원** 그러니까 이제 복구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사장님의 거기에 대한 확실한 의지와 총리실에서 행자부에 어떤 조정을 해 줄 것인지 이런 등등을, 국무조정실장이 그런 것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견 한번 해 주십시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안세영** 알겠습니다.

○**이상직 위원** 말씀을 해 주시라고요, 의지를.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지적하신 부분에 관해서 연구회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이상직 위원** 그리고 철도·공항은 2016년부터 바로 반영이 되니까 2015년에 연구용역에 들어가야 돼요. 아까 그 말씀하신 것 있잖아요? 그것을 좀 검토해 주십시오.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국토부에서 검토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함께 말씀 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용태 수고하셨습니다.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학영 위원 본질의 전에 의사진행으로 서면 질의 관련 이야기 좀 먼저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용태 예.
- 이학영 위원 국무총리비서실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님께 요청드리는 서면질의입니다.  
올해 분단 70년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하고 있지만 민간에서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민간단체가 어떻게 통일에 대해서 역할을 할 것인지 또 연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관련해서, 활동 내용 등에 대해서 서면질의를 드릴 테니까 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님하고 비서실장님께서는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안세영 알겠습니다.
- 이학영 위원 본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권익위원장님!
-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예.
- 이학영 위원 얼마 전에 박재영 권익위 전 부위원장께서 퇴직하시고 대형마트의 사외이사로 재취업하셨어요.
-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예, 뉴스로 봤습니다.
- 이학영 위원 그런데 최근 5년간 자료를 제가 요청해서 대형마트 관련해서 보니까 권익위에서 힘쓰는 상당수가 대형마트 입점과 관계된 내용이었습니다. 직무연관성이 없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가셨어요. 법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까?
-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그래서 아마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학영 위원 법상으로는 문제가 없어서 사외이사로 가신 것이지요, 임직원으로서는 가지 않고?
-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예.
- 이학영 위원 김영란법 통과된 취지와 비교하면 이것은 굉장히 어긋나 있는 것이라고 저는 봐집니다.  
앞으로 이런 허점을 이용한 교묘한 관피아의 기업 취업,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지적을 하시니까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학영 위원 보훈처장님!

-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 이학영 위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자가 국가보훈처에서 지급 하던 가계비, 손자녀 경우 말입니다. 지금 조사 중에 지원이 끊겨 있어요.
-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 이학영 위원 그래서 이 조사를 보니까 359명인데, 보상금이 지급된 170여 명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의 손자녀 중에서 180여 명이 보상금과 가계지원비를 모두를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유예되고 있는 것이지요.
-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 이학영 위원 그래서 유족 간 협의가 끝날 때까지라도 지원중지를 유예하거나 또는 다른 방식으로 어려운 유족들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들도 그 문제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데, 문제는 손자녀 중에서 현재 가계지원비를 받고 있는 손자녀가 보상금 지급대상자로 다시 결정이 되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만일 그 손자녀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결정되면 그 다른 결정된 사람은 금년 1월부터 소급해서 지불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만일 가계지원비를 금년에 다시 지급하면 그 지급 받은 손자녀는 지급받은 가계지원비를 환불해야 합니다. 그런데 참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환불하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 이학영 위원 현재 그러면 지체되어서 가계지원비까지도 못 받는 경우를 어떻게 할 것인지, 부탁하지 않습니까?
-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저희들이 문제점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데……
- 이학영 위원 하여튼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고민을 한번 해 보시고 답변을 주십시오.
-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고민하겠습니다.
- 이학영 위원 다음에 국무조정실장님!
-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 이학영 위원 어린이놀이터 관련해서 최근에 개정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전국에 한 6만 4000개 어린이시설 중에서 1740개가 지금 이용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아마 부실해서 그렇겠지요?
-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이학영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태** 예,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학영 위원** 그런데 이 대상들이 상당수 세대 수가 적고 영세한 그런 집단주거지역의 어린이놀이터들입니다. 그래서 공사비용이나 시설 개보수가 아마 현재 상태로 어려운 처지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대로 시설책임자들에게만 맡기고 방치해서는 또 어린이들이 피해를 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국무조정실에서 실태조사를 좀 하시고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예.

○**이학영 위원** 지금 지자체는 어떻게든 대책을 마련하려고 노력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도 조사하시고, 이것 유관부서가 교육부 문화부 여성부 복지부 다 관련되어 있잖아요? 국무조정실에서 TF팀을 꾸리시든가 해서 대안을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특히 요즘 부자 어린이들은 키즈클럽이랄지 이런 데서, 전부 더 호화시설에서 놀고 있습니다. 국가가 어려운 우리 어린이들에게 최소한의 놀이 보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추가 또 서면질의할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우선 취약지역 시설에 대해서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영세한 위험시설 이런 부분에 관해서 우선적으로 지원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안전처로 하여금 검토해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태** 재보충질의의 마지막 순서로 이종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걸 위원** 새정치민주연합의 안양 만안 출신 이종걸 위원입니다.

재보궐선거가 있고 그래서 상임위 시간이 막 엇갈리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도 하기도 그렇고 출석하시기도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권익위원장님께, 상당히 우려도 하고 문제도 많이 제기됐고 또 시간도 많이 걸렸던 김영란법이 일단은 제정이 됐는데요, 권익위에서는 현재 전원재판부 회부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시지요?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저희가 지금 시행준비단을 꾸려서 이 법 시행령 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위헌소송이 제기되어서 위헌소송에 관해서도 특별히 저희가 팀을 만들어서 답변서 작성 등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걸 위원** 금품 경우는 100만 원이고요, 그리고 금품과 관련 없는 것도 청탁의 경우에는 문제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여러 가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지만 경미한 것도 공공기관, 주변 기관에는 아마 아주 큰 파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소위 말해서 성완중 리스트라는 것이 공개가 되면서 저희들은 정말 경악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볼 때 집권층의 상당한 고위층들은 이렇게 자원 비리와 관련된, 말은 무슨 가지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실제 이것이 자원 비리의 줄기는 아니랍니다. 줄기가 아니고 아주 겉가지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거기에서 관련된 분이 현재 의원까지 했던 분, 이 자리에 앉았던 분이지요, 성완중 의원이요. 기억나십니까?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예, 기억합니다.

○**이종걸 위원** 그분이 자살까지 하면서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손에 쥐고 있었던 리스트가 지금 현재 대통령비서실장을 하시는 분, 그다음에 비서실장을 바로 직전에 하셨던 분, 경남지사, 또 누가 있지요? 현직 인천시장, 누구라면 다 아는 분들이 3억……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위원장대리 김용태** 시간 더 드리겠습니다.

○**이종걸 위원** 3억·7억·1억, 억·억·억 이렇게……

죽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서류가 진실과 관계없는 서류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일반 국민들이 볼 때도.

그런데 저희는 또 한편 국회에서 100만 원 금품수수 가지고 수년간을, 영일을 보냈어요. 이것이 현실적인, 우리나라 모든 국민에게 적용이 될 만한, 특히나 공공기관 공적기관의 가장 대표적인 기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김영란법이 과연 무슨 법으로서의 가치가 있겠는가라는 물음을 당장 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잠깐만, 1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태** 예.

○**이종걸 위원** 국민권익위원장님, 30년 이상 판사 하시고요, 죄 있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판결도 하셨고, 지금 국민권익위원장을 하고 계신데, 그리고 김영란법을 주관해서 처리하셨는데



도대체 이런 정말 핵폭탄 같은 사실과…… 우리가 국회에서 한 3년간 막 노력했던 이 법과 법현실의 차이, 과연 이 법이, 100만 원짜리 처벌하는 것이 무슨 쓸모 있는 법인지 이런 것 혹시 아침에 보시고 생각 안 하시고 오셨습니까? 어떻습니까?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제가 둔감해서 그런지 그렇게는 생각을 안 했었고요. 이 법을 우리 정무위원회에서 1차로 심의해서 법안을 통과시켜 주셨기 때문에, 원래 제안된 내용대로 공직사회를 비롯한 우리 전체 사회를 맑게 만드는 그런 어떤 첫걸음이라고 저는 지금도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액수가 얼마가 됐든 간에 저희들이 많은 논의를 거쳐서 100만 원이라는 기준도 정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국민들이 실망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태**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업무보고에서 질의에 보충질의에 재보충질 의까지 다 마쳤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고요.

김기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으로 마무리, 짧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식 위원** 제가 가급적 저만 남았기 때문에 짧게 짧게, 정책적인 문제니까……

권익위원장님, 제가 요즘 감정노동자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요. 지금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으로 정부민원전화가 다 합쳐지게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전부 통합된 것은 아닙니다.

**○김기식 위원** 아니, 하여간에 합쳐지게 되어 있는데, 지금 권익위가 그걸 하는데 악성전화 몇 통이나 걸려오는지 물어보니까 ‘아직 파악해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예, 그렇게 몇 통이라는 통계는 제가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김기식 위원** ‘콜센터 상담사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악성전화 통계나 예로 조사를 단 한 번도 실시한 적이 없다’ 이렇게 권익위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데 박재영 전 권익위 부위원장이 신문 칼럼에서 ‘통합 전에도 매일 7000~8000통이 오는데 상담사들이 성희롱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냥 멘붕에 빠지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안

타깝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권익위원회가 국민의 권익도 중요하지만 권익위원회 직원들의 권익부터 좀 챙겨야 되는 것 아니냐?

서울시 다산콜센터의 경우에 그런 성희롱 발언에 대해서는 한 번 만에 그냥 바로 고발조치하고 다른 폭언이나 이런 경우는 두세 번 반복될 경우에 고발조치 하는 등의 적극적 대처를 하니까 악성 민원전화가 80%, 최근에는 95%까지 줄어든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권익위한테 무슨 조치가 있나 그랬더니 ‘그런 전화 오면 끊어라’ 이거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끊으라고 해 놓고서는 고객들한테, 그러니까 전화하신 분들한테 만족도 조사를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상담사들이 끊을 수가 없는 거지요, 만족도 조사에서 점수 낮게 맞을까 봐.

그렇기 때문에 다산콜센터 사례처럼 성희롱 발언이라든가 폭언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법적조치를 통해서 상담사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방안을 검토해서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까?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제가 대답을 좀 드리기도 되겠습니까?

**○김기식 위원** 예.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제가 며칠 전에도 콜센터를 다녀왔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수준은 아니고요, 나름대로는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욕설을 한다든지 야한 농담을 한다든지 그런 데 대한 대응이 있는데 다시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들이 다산콜센터 것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저희들의 앞으로의 방침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식 위원** 제가 실태 파악은, 다 보고를 받았고요. 제가 질의를 길게 할 수 없어서 그러니까요.

권익위원장님이 직원들 권익 문제와 관련해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될 것 같고……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식 위원** 어쨌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서, 그것은 법적조치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한 근절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법률도 좀 내려고 그러는데……

두 번째로요, 외부강연 관련해서 작년에 제가 국감 때 지적을 해 가지고 특히 장관 관련해서

는, 직무 관련해서는 외부강연 수수를 아예 금지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 중이지요?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기식 위원** 그런데 이게 아직도 왜…… 연말까지도 지금 제정 여부가 불투명하다는데 조기에 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보도를 보셔서…… 저희가 업무보고도 드렸지만 저희들이 장관 행동장령 같은 걸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데 그 내용을 담으려 합니다.

○**김기식 위원** 그러니까 그 점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좀……

○**위원장대리 김용태** 김기식 위원님, 1분 내에 마무리하시고 나머지는 서면질의로 좀 대체해 주십시오, 많은 분들 지금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김기식 위원** 1분이면 되니까요.

○**위원장대리 김용태**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김기식 위원** 한 2분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김용태** 나머지는 서면질의로 대체하겠습니다.

○**김기식 위원** 빨리 제정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도 지적됐던 게 1년에 20회 이상 가거나 한 기관에 열한 번 반복적으로 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금액만 제한하지 마시고 전체 횟수라든가 동일한 기관에 반복적인 것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예, 일차로 저희 권익위 자체 규정을 일단 손을 봤습니다.

○**김기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 부처에 적용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식 위원** 지금 금융위원회 같은 경우에 동일 기관에 열한 번을 나간 분도 있고 1년에 스무번 이상 나간 분도 있으니까……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기식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횟수라든가 동일 기관 반복 여부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을 만드셔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국회의장님께서 ‘임을 위한 행진곡’ 5·18 제창 문제와 관련해서 국회 결의안도 안 지켜져서 지금 직접 나서셔서 ‘이번 5·18 행사에서는 제창될 수 있게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공식

적으로 했습니다. 보훈처장님, 어떤 입장이십니까?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의장님도 말씀하셨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이 문제는 찬성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반대하는 분들도 계시고 찬반논란이 첨예하게 갈라져 있기 때문에 보훈처가 합리적인 답을 찾는 데 지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여튼 금년 5·18 전까지 최대한 노력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김기식 위원** 잠깐, 회의 중단 못 하겠고요.

○**위원장대리 김용태** 아니, 다음번에 얘기하세요.

○**김기식 위원** 잠깐만요, 1분만 더 주세요.

○**위원장대리 김용태** 1분 내로 정말 마무리해 주시고 서면질의하세요.

○**김기식 위원** 국무조정실장님, 국회가 결의를 했고요, 그 결의 할 때 이완구 총리께서도 그 결의안에 찬성하신 것 아시지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김기식 위원** 총리도 찬성했고 국회의장이, 입법부의 수장이 국회의 결의를 존중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담당 부처 처장이라는 분이 못 하겠다라는 뜻 아닙니까? 국무조정실장으로서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정부의 최종 입장을 말씀드릴 상황은 아닙니다마는 지난번에 국회의장님을 뵈러 갔을 때 ‘보훈처로부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고를 받고 그리고 생각을 정리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김기식 위원** (책상을 내리치며)

공직자의 근무기강을 따져 보세요! 총리하고 국회의장이 나섰는데 일개 보훈처장이……

○**위원장대리 김용태** 김기식 위원님, 책상 치지 마세요!

○**김기식 위원** 그거 못 하겠다고 하는 것을 그냥 그대로 넘어가요!

○**위원장대리 김용태** 김기식 위원님, 책상은 치지 마십시오.

○**김기식 위원** 세상에 어느 나라 정부에 이런 정부가 있어요!

○**위원장대리 김용태**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강기정 위원, 김기준 위원, 이운룡 위원,

신학용 위원, 김을동 위원, 이학영 위원께서 서면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고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출석하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산회)

○출석 위원(21인)

강기정	김기식	김기준	김영환
김용태	김을동	김정훈	김태환
민병두	박대동	박병석	신동우
신학용	유의동	이상직	이운룡
이재영	이종걸	이학영	정우택
한명숙			

○청가 위원(1인)

최경환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진정구
전문위원	최시역
전문위원	박창현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국무조정실			
실장	추경호		
국무1차장	홍윤식		
국정운영실장	심오택		
정부업무평가실장	이철우		
규제조정실장	강영철		
정부합동과제추진단 부단장	배성범		
경제조정실장	이런주		
세종특별자치시 지원단장	김효명		
조세심판원장	김형돈		
기획총괄정책관	임찬우		
규제총괄정책관	김성환		
공직복무관리관	이상진		
농림국토해양정책관	최창원		
국무총리비서실			

실장	장	최민호	
정무실장	김희락		
민정실장	이태용		
공보실장	박정현		
정무기획비서관	임충연		
국가보훈처			
처장	박승춘		
기획조정관	민병구		
보상정책국장	이경근		
보훈선양국장	신영교		
복지증진국장	박종왕		
제대군인국장	이성춘		
보훈사업기획과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정재찬		
부위원장	김학영		
사무처장	신규하		
기획조정관	채세덕		
경쟁정책국장	장재신		
소비자정책국장	김재		
기업거래정책국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임종룡		
부위원장	정찬우		
금융정책국장	손병두		
중소서민금융정책관	김정각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이성보		
부위원장겸사무처장	김인수		
부위원장	곽진영		
부위원장	홍성철		
기획조정실장	이충호		
권익개선정책국장	박계옥		
부패방지국장	곽형석		
행정심판국장	황해봉		
고충민원심의관	안준호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안재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안세영		

○출석 진술인

이창원(한국씨티은행 부행장)  
 배현기(하나금융경영연구소 소장)  
 한충섭(신한생명 부사장)  
 윤석현(숭실대학교 금융학부 교수)  
 정은운(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본부장)

이은영(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보고사항】**

○의안 회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 의원 대표발의)

(2015. 4. 8 이학영 · 김현미 · 한정애 · 도중환 ·  
우원식 · 박원석 · 이종걸 · 이개호 · 은수미 ·  
남인순 · 김기준 · 박홍근 의원 발의)

4월 9일 회부됨